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2022. 10.

권성준·허윤영·이형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권 성 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허 윤 영 선임연구원

이 형 민 특수전문직3급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현황	12
1. 소득세 과세체계	12
가. 개요	12
나. 세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14
다. 소득세 과세체계 주요 변천 과정	27
2. 소득세 현황 및 물가 상승률 추이	34
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소득세 현황	34
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42
III. 물가 변동 대응 조세정책에 대한 고찰	45
1. 물가 변동이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45
2. 물가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	47
가. 재량적 방식	48
나. 물가연동 방식	49
3. 물가연동 세제에 대한 세부적 고찰	51
가. 물가연동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	51
나. 물가연동 세제 도입 시의 주요 쟁점 및 고려 요소	53
IV. 주요국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 정책	58
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동향	58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황	58
나.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영 현황	59
2. 미국	62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62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71
3. 영국	78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78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86
4. 프랑스	93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93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05
5. 캐나다	113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113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22
6. 그 외 국가	129
가. 독일	129
나. 뉴질랜드	134
다. 일본	139
라. 호주	141
V. 국제 비교 및 결론	143
1. 국제 비교	143
가.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동향	143
나. 주요 조사대상국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46
다. 기타 국가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59
2. 요약 및 결론	161
참고문헌	165

표 목차

〈표 II-1〉 종합소득 기본세율(2021년 귀속 이후)	17
〈표 II-2〉 소득세 공제제도	19
〈표 II-3〉 주요 소득공제 산정방법	20
〈표 II-4〉 「소득세법」상 주요 세액공제	23
〈표 II-5〉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장려금 지급가능액	25
〈표 II-6〉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25
〈표 II-7〉 1994~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적용구간 변천 과정	28
〈표 II-8〉 2012년 대비 2021년 주요 공제제도 변경 사항 비교	32
〈표 II-9〉 연도별 주요 세목별 소득세수 추이	35
〈표 II-10〉 연도별 근로소득 평균 실효세율	38
〈표 II-11〉 연도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	39
〈표 II-12〉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신고 인원	40
〈표 II-13〉 근로소득자 연도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면세자 비중	42
〈표 II-14〉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44
〈표 III-1〉 물가 상승하의 세후 실질소득 감소 사례 예시	46
〈표 IV-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적용 현황(2022년 7월 기준)	60
〈표 IV-2〉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2022년 7월 기준)	61
〈표 IV-3〉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63

〈표 IV-4〉 미국의 주요 항목별공제 내용	66
〈표 IV-5〉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과 장기 최대자본이득세율(2022년)	67
〈표 IV-6〉 미국의 개인소득세법상 2019~2022년 인적공제, 표준공제 및 세율 구간 ...	74
〈표 IV-7〉 미국의 소득세 주요 물가연동 항목	75
〈표 IV-8〉 영국의 소득세 결정 단계별 흐름	80
〈표 IV-9〉 영국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2021/2022년 기준)	85
〈표 IV-10〉 영국의 항목별 물가연동 적용 여부	89
〈표 IV-11〉 영국의 물가연동에 의한 주요 항목별 추이(2015/16년~2021/22년) ...	90
〈표 IV-12〉 영국의 2021년 물가연동 제한 조치에 따른 예상 세수증대 효과	92
〈표 IV-13〉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94
〈표 IV-14〉 프랑스의 가족단위별 가족계수(parts)(2022년)	99
〈표 IV-15〉 프랑스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2022년)	100
〈표 IV-16〉 프랑스의 가족 단위 part당 소득세 면제 한도(2022년)	101
〈표 IV-17〉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변천 과정	108
〈표 IV-18〉 프랑스의 가족계수 관련 한도의 물가지수 연동 변천 과정	108
〈표 IV-19〉 프랑스의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방식 변천 과정	110
〈표 IV-20〉 프랑스의 소득세 주요 물가연동 항목(2022년 기준)	110
〈표 IV-21〉 캐나다의 연방소득세 결정 단계별 흐름	115
〈표 IV-22〉 캐나다의 연방소득세 세율체계(2022년 기준)	118
〈표 IV-23〉 캐나다의 연방소득세법상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및 최대세액공제 한도액(2022년 기준)	120
〈표 IV-24〉 캐나다의 항목별 물가연동 적용 여부	124
〈표 IV-25〉 캐나다의 적용 세율의 과세표준 구간 변동(2019~2022년)	125
〈표 IV-26〉 캐나다의 주요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변동(2019~2022년)	126
〈표 IV-27〉 독일의 종합소득세율(2022년 기준)	131
〈표 IV-28〉 독일의 소득세율 변천 과정	132

〈표 IV-29〉 뉴질랜드의 가족근로지원 세액공제 물가연동 적용 현황	136
〈표 IV-30〉 호주의 소득세율 변천 과정	142
〈표 V-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실시 현황	144
〈표 V-2〉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요 특징	147
〈표 V-3〉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개요	148
〈표 V-4〉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 방식	149
〈표 V-5〉 조사대상국의 세율 구간 물가연동 방식	151
〈표 V-6〉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관련 주요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 비교 ..	156
〈표 V-7〉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주요 변천 과정	159

그림 목차

[그림 II-1] 종합소득 세액계산 흐름도	15
[그림 II-2]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16
[그림 II-3] 소득세 세율 구조 변천 과정	29
[그림 II-4] 연도별 소득세수 및 소득 원천별 추이	35
[그림 II-5] 연도별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추이	36
[그림 II-6]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2020년 기준)	37
[그림 II-7] 연도별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추이	41
[그림 II-8]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1970. 7.~2022. 7.)	43
[그림 IV-1] OECD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1970. 7.~2022. 7.)	58
[그림 IV-2] OECD 회원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비교(2022. 7.)	59
[그림 IV-3] 미국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71
[그림 IV-4] 영국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87
[그림 IV-5] 프랑스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106
[그림 IV-6] 프랑스의 지난 20년간 담배를 제외한 연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	106
[그림 IV-7] 캐나다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123
[그림 IV-8] 독일의 2022년 소득세율 체계	131

I. 서론

- 최근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¹⁾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여 2008년 8월 5.9%를 기록한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OECD 38개 회원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6.55% 수준을 기록하였음

- 국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명목소득의 증가가 세계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바,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로 이동함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에 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²⁾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과세소득의 과세표준 적용구간이 상위구간으로 이동하여 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평균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2012년 대비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11.6%로 나타났으나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금액인 1,200만원, 4,600만원 및 8,800만원은

1)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할 지수를 말함

2) 이를 '감춰진 증세(hidden tax hike)'라고도 함

2008년 이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동 구간에 대한 세율 역시 2012년 이후로는 변동이 없음³⁾, 4)

- 2012년 이후로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부담 수준,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그 도입에 관해 이견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수준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반영하고 있음⁵⁾
 -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거 법령에 의해 과세표준 세율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2022년 7월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약 60%인 최소 22개국⁶⁾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은 5.3%로, OECD 평균 8.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또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20년 기준 37.2%로, 2014년 48.1% 대비 10.9%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물가 수준의 변동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대응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의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살펴 봄

3) 「소득세법」 제55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구조를 8개 과세표준 구간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2022년 세법 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5)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1990년 신설되었으나 그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물가 수준의 변동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6)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2022년 7월 기준 2023년부터 시행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 중임

- 조사대상 국가는 물가연동제 도입 목적은 유사하나 적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운용 방식을 달리하거나 소득세 과세체계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선정함
 - 미국과 프랑스는 주요 공제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을 혼합하여 운용 중이나 프랑스는 가족 단위 과세제도를 운용 중임
 - 영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물가연동 항목 및 공제 수준 등을 결정하고 있음
 - 캐나다는 주요 공제제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용 중이며, 물가연동 항목이 조사대상국 중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근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독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검토함
-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다루고 있으나 소득세 과세체계상 과세 표준 세율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자본이득 측면에서의 소득세 물가연동에 대한 내용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 I 장의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함
- 제 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하여 개관하고,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소득세 현황 및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를 살펴봄
 - 제 III 장에서는 물가 수준 변동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함
 - 제 IV 장에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체계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용방식 및 주요 변천 과정 등을 살펴봄
 - 또한, 주요국 외에 독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호주가 세계 측면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최근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함
 - 제 V 장에서는 OECD 회원국 및 조사대상 국가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를 국제 비교하고, 이어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함

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과세체계

가. 개요)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Income Source Theory) 및 열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일부 소득은 순자산증가설(Increased Net Asset Theory) 및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⁸⁾
 - 소득원천설(Income Source Theory)은 일정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대상 소득은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것임
 - 순자산증가설(Increased Net Asset Theory)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일지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과세한다는 것임
 -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소득이면 과세한다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발생 원천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7) 안종석·오종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p. 28~31 참조

8) 김재진,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 42

-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종합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됨
 - 종합과세란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 분리과세란 일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과세를 말함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함
 - 양도소득은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퇴직소득은 퇴직금과 공적연금 일시금을 말함
- 「소득세법」에서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⁹⁾는 원칙하에 종합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되, 행정절차의 편의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신고 및 징수하는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연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자, 배당 등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과세됨
 -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로 신고체제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항목도 상이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9)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나. 세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¹⁰⁾

1) 개요

-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근로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총급여)에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 [그림 II-2]와 같음
 -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함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개산공제액을 차감하고,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함
 - 소득유형별로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됨
 - 소득공제는 크게 「소득세법」에 규정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기타 소득공제 등으로 구분됨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이며,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임
 - 이 과세표준에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이라 함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되고,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됨
 - 세액공제는 크게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기타 세액공제로 구분됨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됨
- 한편,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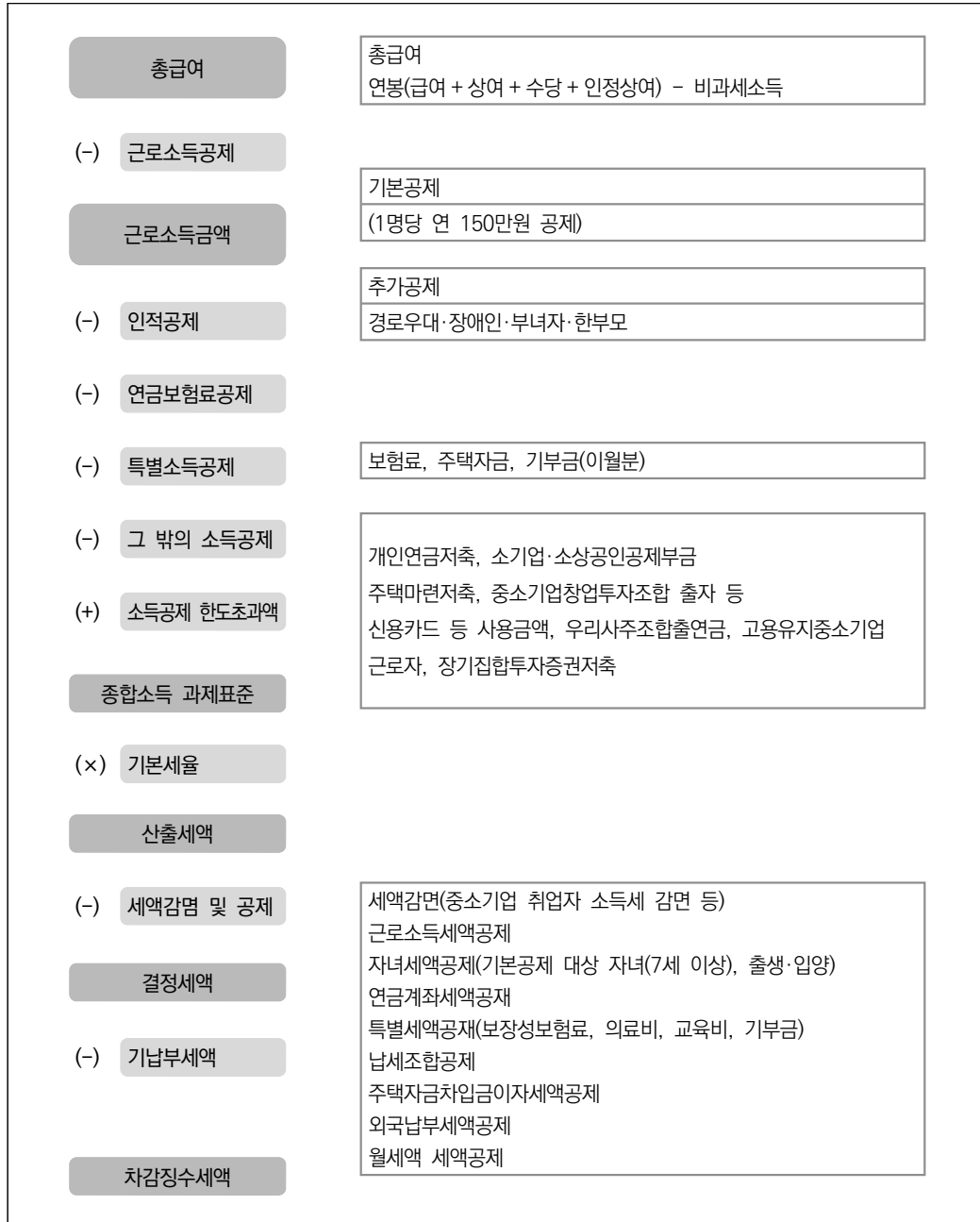
10) 김재진,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p. 42~46.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 종합소득 세액계산 흐름도



자료: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검색일자: 2022. 8. 26.

[그림 11-2]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자료: 국세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2021, p. 15.

□ 이하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 및 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후술하기로 함

2) 과세표준과 세율

□ 2021년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표 II-1>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종합소득¹¹⁾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8 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임

○ 참고로,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이전에는 6~42%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였음

<표 II-1> 종합소득 기본세율(2021년 귀속 이후)

(단위: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6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11) 여기서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한 소득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또는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

- 소득세 공제방식에는 크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금액 × 한계세율’만큼 세금절감 효과 발생
 -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6%면 6만원만큼, 한계세율이 45%면 45만원만큼 세부담이 감소함
 - 즉, 개인이 속한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절감 효과가 달라지므로 동일 금액을 지출했다하더라도 한계세율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함
 - 반면 세액공제는 누진세율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되어 개인의 한계세율과는 관계 없이 세금절감 효과가 결정됨
 -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계세율과는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100만원만큼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세 공제·감면제도는 소득 및 세액공제 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각 공제항목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는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주는 공제제도로, 우리나라는 근로자 및 사업자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각 소득의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값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세액공제·감면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감소시키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세액공제·감면 항목이 존재함
 -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표 II-2>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주요 공제제도를 정리하였음

〈표 II-2〉 소득세 공제제도

종류			관련 규정 ¹⁾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법 47 ①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공제	법 50 ① 1호
			• 배우자공제	법 50 ① 2호
			• 부양가족공제	법 50 ① 3호
		추가공제	• 경로자공제	법 51 ① 1호
			• 장애인공제	법 51 ① 2호
			• 부녀자공제	법 51 ① 3호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퇴직연금	법 51의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법 52 ①
		주택자금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조특법 87 ②
기타의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법 52 ④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공제	법 52 ⑤, ⑥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①	
		• 고용유지증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30의3 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조특법 86의3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91의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조특법 126의2			
• 우리사주조합 출자소득공제 등	조특법 88의4			
세액공제	「소득세법」	배당세액공제	법 56	
		기장세액공제	법 56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58	
		근로소득세액공제	법 59	
		자녀세액공제	법 59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법 59의3, 조특법 86의4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법 59의4 ①~④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법 150	
		표준세액공제	법 59의4 ⑨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2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조감법 92의4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104의8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 122의2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6의3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 92의4			

주: 1) 법: 「소득세법」,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자료: 국가법령정보사이트, 「소득세법」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가) 소득공제

-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있음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개산공제함
 -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2~70%)은 감소하며, 누진적인 방식으로 공제액을 산정함
 - 인적공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제도로,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음
 - 지출 규모와는 관계없이 공제 대상 인원수에 정액(50~200만원)을 곱하여 공제 금액 결정이 이루어짐
 - 특별공제: 특별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주택자금공제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음
 - 해당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표준 양성화 및 저축 지원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함

〈표 11-3〉 주요 소득공제 산정방법

구분	내용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산공제: 총급여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임의산정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1,500만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3,000만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4,500만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0,000만원)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표 II-3〉의 계속

구분		내용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세대주: 5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00만원	
물 적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부담 공적연금 관련 연금보험료 전액	
	특별 공제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공제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무주택근로자 40%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무주택·1주택 근로자 • 단, 한도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 + ① =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 ① + ② = 5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40%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40% 소득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2020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5% 초과 사용분) 10% (2021년 한시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 수준별 연 200~300만원(단,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2020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 100만원 추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사업소득 4천만원/1억원 기준, 500만원/300만원/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전액 - 출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함, 연 400만원(창업·벤처기업은 1,500만원) 한도	

주: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0 조세개요』, 2021;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2022.

□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함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증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나) 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은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됨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감면은 정부 간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국인 급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거주자의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 소득 등이 있음

· 특별세액공제의 항목별 공제¹²⁾는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12) 상용 일반근로자는 항목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선택할 수 있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음¹³⁾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감면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표 II-4〉 「소득세법」상 주요 세액공제

구분		내용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30% ▪ 한도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50만원/66만원/74만원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3천3백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td> <td>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td> </tr> <tr> <td>7천만원 초과</td> <td>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	• 1명: 연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및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특별 세액 공제	의료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한도: 700만원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난임시술비 등: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¹⁾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유치원·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13) 2014년부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역진적 세부담 경감 효과를 완화함

〈표 II-4〉의 계속

구분		내용
특별 세액 공제	기부금공제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범위 내 100%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 10%)
	연금저축·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15%, 단, 소득 규모별 300~400만원 한도 - 종합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거주자는 연금 저축계좌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시 900만원(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 적용)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공제율 15%)
표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 제외)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7만원(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배당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 수입금액 × 11%
기장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 종합소득 \times $\frac{\text{복식부기에 따라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text{종합소득 금액}} \times 20\%$ ▪ 한도: 100만원
재해손실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 자산을 상실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 가산금) × 재해상실비율* ▪ 한도: 재해손실액 범위 내 * 재해상실비율 = $\frac{\text{상실자산가액}}{\text{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
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국외 원천소득의 비중 공제

주: 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2) 1천만원 초과분 30%

자료: 기획재정부, 『2020 조세개요』, 2021;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2022.

-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운용 중임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표 II-5〉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검색일자: 2022. 8. 31.

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 〈표 II-6〉에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정리함

〈표 II-6〉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공제항목	내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표 II-6〉의 계속

공제항목	내용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세액공제 금액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3,300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td> <td>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td> <td>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 (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7,000만원 이하자는 10%								

자료: 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도자료, 2021. 12. 23.

다. 소득세 과세체계 주요 변천 과정¹⁴⁾

1)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199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 세율 구조 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음
 -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여 종합과세가 금융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과세표준 현실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는 동시에 6단계의 과세 구간도 4단계로 단순화함

- 2001년 이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세율 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 2002년부터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씩 9~36%로 인하함
 - 2008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구간을 1천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및 8천 800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개정 배경) 향후 물가 상승 및 근로자의 봉급·소득 수준 상승을 고려할 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8천 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로 인상함
 - (개정 배경)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014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개정 배경)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임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검색일자: 2022. 8. 12.

-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42%를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함
 - (개정 배경)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함임
-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로 인상함
 - (개정 배경)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함임

〈표 II-7〉 1994~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적용구간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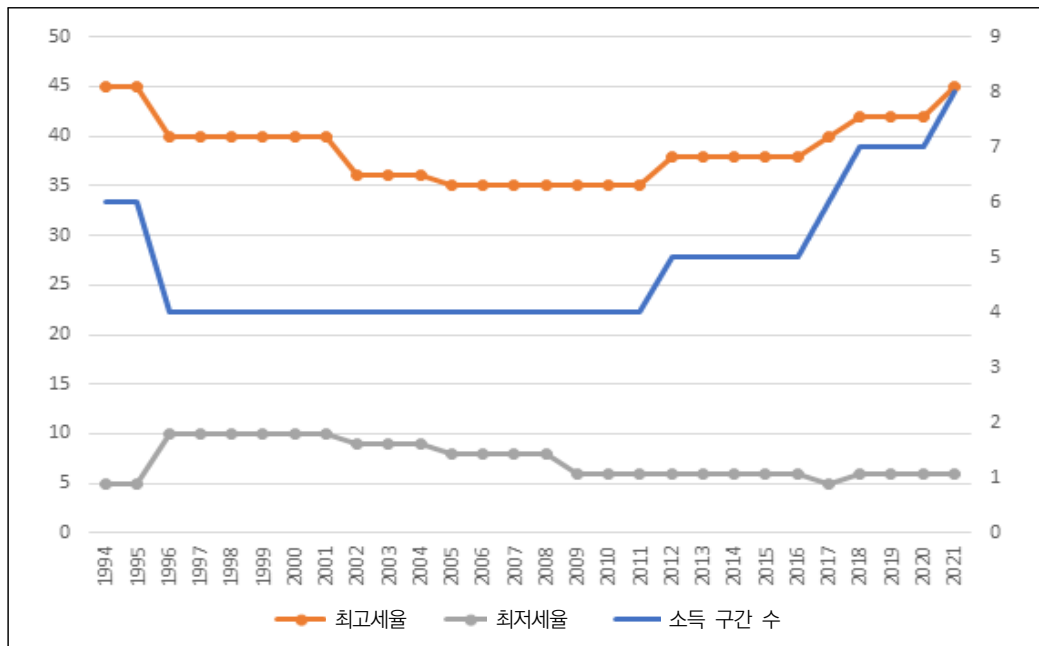
1994년		1996년		2002년		2005년	
6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400만원이하	5	1,000만원이하	10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 이하	8
800만원이하	9	4,000만원이하	20	4,000만원이하	18	4,000만원 이하	17
1,600만원이하	18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이하	26
3,200만원이하	27	8,000만원 초과	40	8,000만원 초과	36	8,000만원 초과	35
6,400만원이하	36						
6,400만원초과	45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4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표 II-7〉의 계속

2014년		2017년		2018년		2021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5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그림 II-3] 소득세 세율 구조 변천 과정



자료: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주요 공제제도¹⁵⁾

- 2001년 이후에는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주요 공제제도의 적용방식,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꾸준히 개정하여 왔음
- 2002년부터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¹⁶⁾
 - (개정 배경)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함
-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임¹⁷⁾
- 2014년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함
 - 특별공제의 하나인 표준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검색일자: 2022. 9. 13.

16)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17)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사업소득 등과는 달리 원천징수되는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990년 신설되었음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으로,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만원으로 인상하며, 5,500만원과 7,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각각 공제한도를 점감하도록 함
- 2015년도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공제금액 등을 인상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¹⁸⁾
 - 기존의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상 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의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세액공제 금액 확대,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추가공제,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를 재신설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
 -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
 - 이 외에도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및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함
- <표 II-8>에서는 2021년 「소득세법」상 주요 공제제도에 대하여 2012년과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인적공제 및 항목별 공제의 경우 공제금액 및 한도 등은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다만, 2014년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한 바 있음

18)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 및 정리함

〈표 II-8〉 2012년 대비 2021년 주요 공제제도 변경 사항 비교

		2012	2021																								
근로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산공제: 총급여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임의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근로소득공제</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 × 80%</td> </tr> <tr> <td>500만~1,500만</td> <td>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td> </tr> <tr> <td>1,500만~3,000만</td> <td>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td> </tr> <tr> <td>3,000만~4,500만</td> <td>1,27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1,2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td> </tr> </tbody> </table>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1,500만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3,000만	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4,500만	1,27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산공제: 총급여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임의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근로소득공제</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 × 70%</td> </tr> <tr> <td>500만~1,500만</td> <td>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td> </tr> <tr> <td>1,500만~3,000만</td> <td>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td> </tr> <tr> <td>3,000만~4,500만</td> <td>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10%</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1,475만원 + (총급여액 - 10,000만원) × 2%</td> </tr> </tbody> </table> <p>(단,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p>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1,500만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3,000만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4,500만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0,000만원) × 2%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1,500만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3,000만	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4,500만	1,27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1,500만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3,000만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4,500만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0,000만원)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용근로자: 1일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인적공제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세대주: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세대주: 5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는 연간 50만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50만원/66만원/74만원임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3천3백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td> <td>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td> </tr> <tr> <td>7천만원 초과</td> <td>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																										

〈표 II-8〉의 계속

		2012	2021
항목별공제 ¹⁾	의료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한도: 700만원 한도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등: 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한도: 700만원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난임시술비 등: 한도 없음 공제율: 15%(난임시술비 20%)
	교육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유치원·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유치원·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공제율: 15%
	기부금공제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범위 내 10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범위 내 10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³⁾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 30%)
	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공제율 12%) - 장애인전용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공제율 15%)

주: 1) 2014년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2) 2020년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는 명칭은 삭제되었으나 기부금의 범위가 동일하고 비교 측면에서 2021년도의 경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그대로 사용함

3)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금액 × 10% + Min [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소득세 현황 및 물가 상승률 추이

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소득세 현황

1) 소득세수

가) 연도별 소득세수 추이

- <표 II-9>와 [그림 II-4]의 우리나라 소득세의 연도별 세수 실적은 2011년 이후로 연평균 10.4%씩 증가하여 2021년 114조 1,123억원으로, 2011년 약 42조 3,000억원 대비 약 169.7%가 증가하였음
- 국세의 세수 실적은 2021년 약 344조 1,000억원으로, 2011년 약 192조 4,000억원 대비 약 78.8%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6.0%임
- 국세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의 경우 2011년 22.0% 대비 11.2%p 증가한 33.2%임
- 국세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5%, 20.7%로 2011년 대비 2.8%p, 6.3%p 감소하였음
- 근로소득세(원천분) 및 종합소득세(신고분)의 경우,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1년 대비 근로소득세(원천분)는 약 174.2%, 종합소득세(신고분)는 약 118.1%의 증가율을 보임

〈표 II-9〉 연도별 주요 세목별 소득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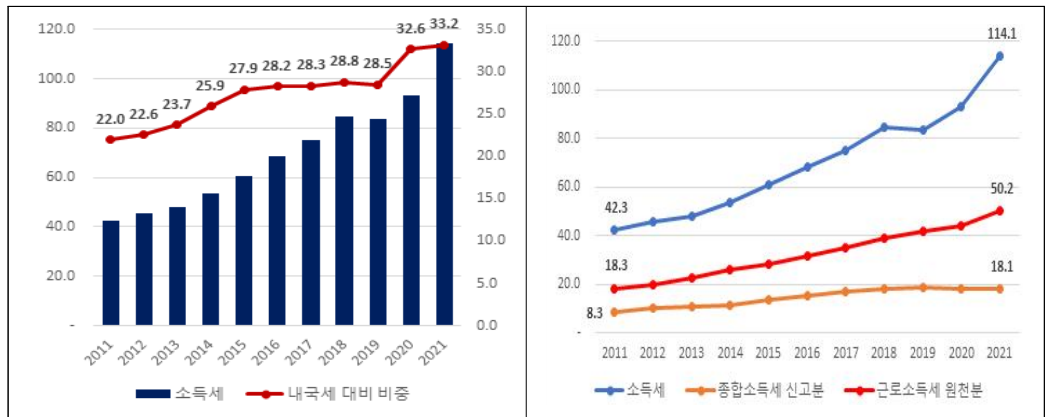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연도	국세 (A)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B)	비중 (B/A)	세수 (B)	비중 (B/A)	세수 (B)	비중 (B/A)
2011	192.4	42.3	22.0	44.9	23.3	51.9	27.0
2012	203.0	45.8	22.6	45.9	22.6	55.7	27.4
2013	201.9	47.8	23.7	43.9	21.7	56.0	27.7
2014	205.5	53.3	25.9	42.7	20.8	57.1	27.8
2015	217.9	60.7	27.9	45.0	20.7	54.2	24.9
2016	242.6	68.5	28.2	52.1	21.5	61.8	25.5
2017	265.4	75.1	28.3	59.2	22.3	67.1	25.3
2018	293.6	84.5	28.8	70.9	24.1	70.0	23.8
2019	293.5	83.6	28.5	72.2	24.6	70.8	24.1
2020	285.5	93.1	32.6	55.5	19.4	64.9	22.7
2021	344.1	114.1	33.2	70.4	20.5	71.2	20.7
연평균 증가율 (2011~2021)	6.0	10.4		4.6		3.2	

주: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를 말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4] 연도별 소득세수 및 소득 원천별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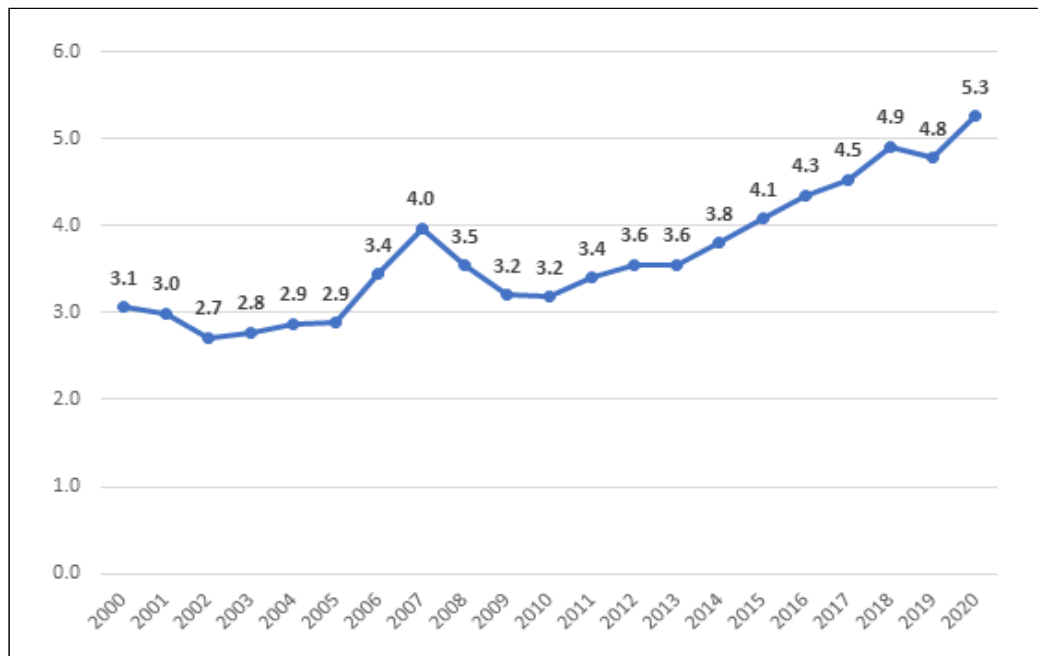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II-5] 연도별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는 2019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은 2010년 3.2% 대비 2.1%p 증가한 5.3%로 나타나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II-5] 연도별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OECD, "Tax on personal incom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 검색일자: 2022. 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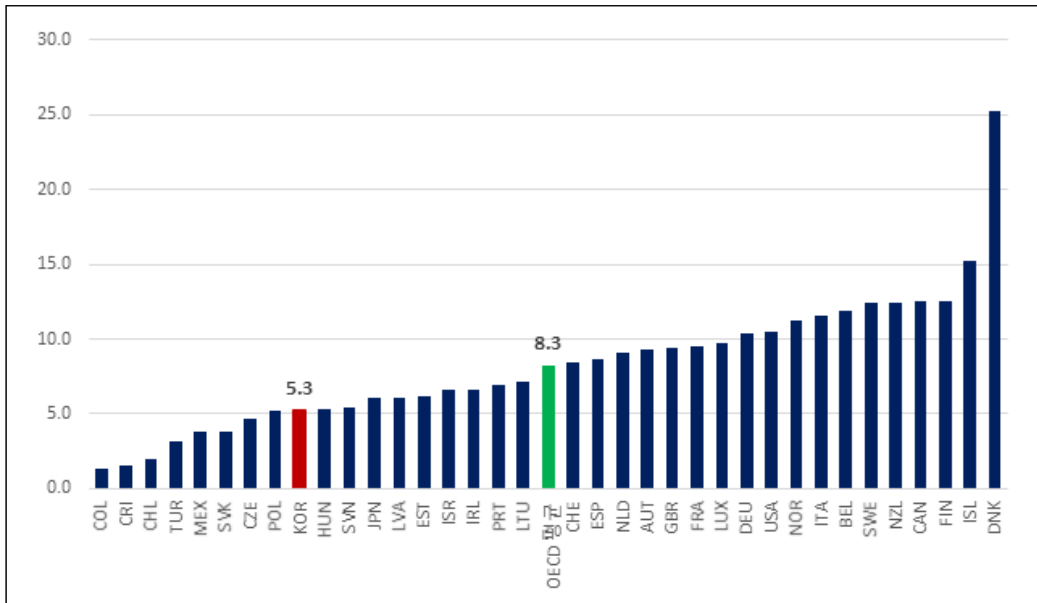
나) OECD 회원국과 국제 비교

- [그림 II-6]에서는 소득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정리하였음

-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은 5.3%로, OECD 평균 8.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보다 이 비율이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임

[그림 II-6]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2020년 기준)



자료: OECD, "Tax on personal incom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 검색일자: 2022. 9. 13.

2) 평균 실효세율

- 평균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¹⁹⁾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서를 활용하여 계산함²⁰⁾

19) 안종석·오중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 42.

20) 본 보고서는 『국세통계연보』상 소득지표 기준으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이 반영되기 전의 급여총계를, 세액지표로 결정세액을 사용하여 평균 실효세율을 계산함

가)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

□ <표 II-10>의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은 2011년 4.07%에서 2020년 5.89%p 증가한 5.89%로 나타남

○ 급여총계 및 근로소득 결정세액의 2011~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 10.6%로 나타남

〈표 II-10〉 연도별 근로소득 평균 실효세율

(단위: 억원, %)

연도	급여총계	결정세액	평균 실효세율
2011	4,378,384	178,019	4.07
2012	4,707,716	199,712	4.24
2013	5,029,442	222,873	4.43
2014	5,337,269	253,978	4.76
2015	5,667,290	282,528	4.99
2016	6,000,997	308,539	5.14
2017	6,376,165	347,339	5.45
2018	6,816,113	383,078	5.62
2019	7,216,864	411,011	5.70
2020	7,502,651	441,641	5.89
연평균 증가율 (2011~2020)	6.2	10.6	-

주: 1. 평균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급여총계(비과세 포함)

2. 결정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통계를 포함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 근로소득)(2014~),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 <표 II-11>에서는 연도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평균 실효세율을 정리하였음

-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평균 5.89%이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구간이 0.1% 미만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도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실효세율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2014년 대비 평균 실효세율 증가폭이 가장 큰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은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3.49%p 상승하였음

〈표 II-11〉 연도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

(단위: %)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년 대비(%p)	
1천만원 이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천만원 이하	0.60	0.62	0.67	0.72	0.73	0.77	0.71	0.11
8천만원 이하	3.80	3.92	3.93	3.97	4.01	4.10	4.07	0.26
1억원 이하	8.12	8.14	8.06	8.02	8.09	8.09	8.10	-0.02
3억원 이하	13.98	14.05	14.11	14.39	14.49	14.43	14.57	0.59
5억원 이하	26.64	26.76	26.85	27.25	27.53	27.57	27.54	0.9
10억원 이하	30.04	30.13	30.25	30.98	31.81	32.01	32.00	1.96
10억원 초과	33.73	33.56	33.58	33.17	36.49	37.15	37.22	3.49

주: 1. 평균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급여총계(비과세 포함)

2.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결정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통계를 포함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 근로소득)(2014~),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면세자 비중

가) 연도별 면세자 비중

□ 〈표 II-1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도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1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4%p 소폭 증가하여 37.2%로 나타남

- 면세자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자 중에서 과세표준이 0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0이 된 자를 말함²¹⁾
 - 2014년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음

〈표 II-12〉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신고 인원

(단위: 명, %)

	신고 인원					
	계	전년 대비 증가율	과세대상자	전년 대비 증가율	과세미달자	전년 대비 증가율
2011	15,540,057	2.4	9,934,987	7.5	5,605,070	-5.5
2012	15,768,083	1.5	10,612,293	6.8	5,155,790	-8.0
2013	16,359,770	3.8	11,238,611	5.9	5,121,159	-0.7
2014	16,687,079	2.0	8,663,243	-22.9	8,023,836	56.7
2015	17,333,394	3.9	9,229,164	6.5	8,104,230	1.0
2016	17,740,098	2.3	9,998,156	8.3	7,741,942	-4.5
2017	18,005,534	1.5	10,614,732	6.2	7,390,802	-4.5
2018	18,577,885	3.2	11,358,784	7.0	7,219,101	-2.3
2019	19,167,273	3.2	12,112,622	6.6	7,054,651	-2.3
2020	19,495,359	1.7	12,240,163	1.1	7,255,196	2.8
연평균 증가율 (2011~2020)	2.6		2.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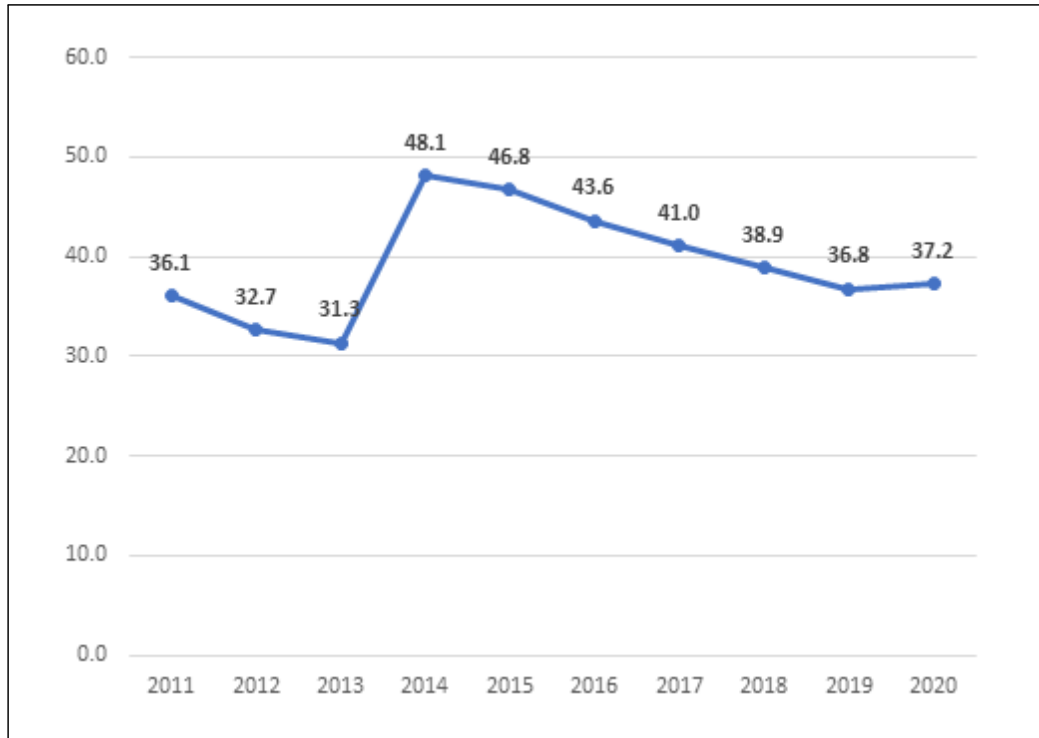
주: 1. 각 연도 원천징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자의 신고 실적 기준
2. 급여총계 기준 통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 근로소득)(2014~),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1) 안종석·오종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 56.

[그림 II-7] 연도별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추이

(단위: %)



주: 면세자 비중 = 과세미달자 ÷ (과세대상자 + 과세미달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 근로소득)(2014~),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면세자 비중

- <표 II-13>에서 근로소득자 연도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총급여) 면세자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면세자 비중 37.2%를 초과하는 소득구간은 총급여 2천만원 이하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2014년 대비 면세자 비중이 5%p 이상 감소한 구간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으로 나타남

〈표 II-13〉 근로소득자 연도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면세자 비중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2014년 대비(%p)
1천만원 이하	99.999	99.998	99.998	99.998	99.997	99.999	99.999	0.00
1.5천만원 이하	87.04	86.29	85.62	85.33	85.05	85.60	86.32	-0.72
2천만원 이하	40.60	41.22	39.62	38.56	34.81	34.56	40.24	-0.36
3천만원 이하	36.57	34.47	32.18	32.33	32.88	31.84	33.28	-3.29
4천만원 이하	32.84	30.29	27.45	26.10	27.38	25.42	26.41	-6.43
4.5천만원 이하	21.07	19.50	18.36	17.38	16.42	14.01	13.29	-7.78
5천만원 이하	13.99	12.82	12.43	11.71	10.80	8.77	7.71	-6.28
6천만원 이하	6.14	5.34	5.43	5.26	4.93	3.93	3.17	-2.97
8천만원 이하	1.18	1.01	1.08	1.07	1.03	0.86	0.66	-0.52
1억원 이하	0.22	0.20	0.19	0.16	0.15	0.14	0.12	-0.10
1억원 초과	0.27	0.25	0.22	0.19	0.16	0.17	0.15	-0.13

주: 면세자 비율 = 과세미달자 ÷ (과세대상자 + 과세미달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 근로소득)(2014~),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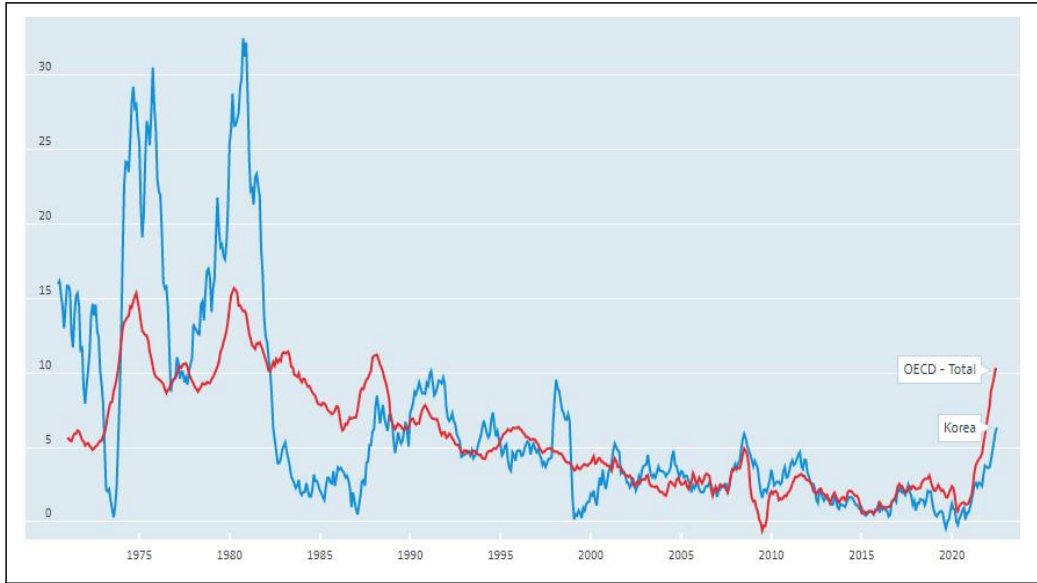
1) 소비자물가지수 연도별 추이

□ 우리나라의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²²⁾는 108.74(2020 = 100)로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였으며, 2008년 8월 5.9%를 기록한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22)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말함

[그림 II-8]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1970. 7. ~ 2022. 7.)

(단위: %)



주: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자료: OECD, "Inflation(CPI)",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검색일자: 2022. 9. 13.

2) 기간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표 II-14>에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개정이 이루어졌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소득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근 10여 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6%임

○ 참고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1%p씩 세율 인하가 이루어졌고, 2012년 이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였음

〈표 II-14〉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기간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개정 여부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6~2007	1996~2001	전체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20.5
	2002~2004	전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인하	7.2
	2005~2007	전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인하	4.8
	1996~2007		43.0
2008~2021	2008~2011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세율 인하	10.0
	2012~202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1.6
	2008~2021		25.5
전체 기간(1996~2021)			87.9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20 = 100)
 2. 분석대상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초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말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0003&conn_path=i3, 검색일자: 2022. 9. 13.

Ⅲ. 물가 변동 대응 조세정책에 대한 고찰

1. 물가 변동²³⁾이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맞추어 명목 소득세²⁴⁾ 부담도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됨
 -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명목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임
 -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져 소득 증가분보다 소득세 세수가 더 많이 증가함

- 그러나 물가 상승 상황에서 개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여 세후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물가 변동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제를 조정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물가 상승이 실질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첫 번째 이유로는 누진적 소득세제하에서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액이 고정되어 있음에 기인함²⁵⁾
 -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개인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상위구간으로 이동해서 한계세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임

23) 물가 변동이라 함은 물가 상승 또는 물가 하락,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하겠으나,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로 인플레이션 상황하의 물가 상승을 전제함

24) 여기서의 소득세란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소득을 말하며, 기타 물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이하 같음)

25) 전병욱(2021), p. 12.

- 이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라 하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명목 소득만 늘어나도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함
 - 그 결과 세율의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며 납세자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나므로 '감추어진 증세(hidden tax hike)'라고도 함²⁶⁾
 - 또한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평균세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임
- 아래 <표 Ⅲ-1>의 사례를 통해 물가 상승 시의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음
- 사례 1에서는 브래킷 크리프가 일어나는 경우를, 사례 2에서는 브래킷 크리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함
 -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 및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물가 변동에 따른 세 효과 논의의 간편성을 위해 비용 및 공제액은 없고 수입금액만 있는 것으로 가정함
 -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는 물가가 20% 상승하였다고 가정함
 - 세율은 과세표준 100원 이하일 경우 10%, 100원을 초과하면 20%를 부과하는 누진 구조를 가정함
 - 비교시점의 세후 실질소득은 세후 명목소득에 (1 + 물가 상승률 20%)을 나누어 산정함

<표 Ⅲ-1> 물가 상승하의 세후 실질소득 감소 사례 예시

(단위: 원)

구분	사례 1		사례 2	
	기준시점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과세표준	100	120	150	180
소득세액 (세율: 10%, 20%)	10	14	20	26
세후 명목소득	90	106	130	154
세후 실질소득	90	88.33	130	128.33

26) 국회입법조사처(2021), p. 252.

- 다음 물가 상승이 실질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의 수준 (일정 공제액 및 공제한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²⁷⁾
 - 각종 공제제도에는 과세표준 산정 전 단계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세액 공제 단계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공제액이 고정된다면 물가 상승에 의한 명목소득 증가분에 대한 과세표준 증가 및 산출세액 증가 효과에 비하여 공제를 통해 비과세되는 부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됨
 - 즉 물가가 변동할 때 해당 공제 요소의 실질가치가 반비례하여 변하게 되므로 실질 세부담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임

- 한편 물가 상승 시에는 실질적 세부담 증가와 더불어, 소득세제 및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명목 소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불러옴²⁸⁾
 - 선행 연구들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실질 세부담의 변화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침
 -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효세율의 증가율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낮아지게 되어 계층 간 세부담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²⁹⁾
 - 실질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공급이나 저축 등의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쳐 거시적인 자원 배분의 균형점을 왜곡하여 이동시킬 수 있음³⁰⁾

2. 물가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

-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재량적 세제 개편(discretionary tax policy)을 통한 방법(이하 '재량적 방식')과 연동제(Indexed method)를 통한 방법(이하 '물가연동 방식')이 있음

27) 성명재·박상원(2008), pp. 39~40.

28) 성명재·박상원(2008), p. 54.

29) 전승훈(2007), p. 10.; 전병욱(2021), pp. 32~34.

30) 전승훈(2007), p. 1.

- 실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 각 국가들은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세부담의 변동을 중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
- 두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 이하에서는 각 방식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봄

가. 재량적 방식

1) 개념

- 재량적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 없이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비주기적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식을 말함
-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세율, 공제액의 확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범위와 폭은 재량적으로 결정함
 - 예를 들어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조정의 경우 저세율 구간의 기준금액을 고세율 구간의 기준금액보다 상승률을 높게 재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점진적인 세율 인하도 물가 상승에 대응한 간접적인 재량적 방식일 수 있음

2) 특징

- 재량적 방식은 경제 상황 및 제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게 함으로써 세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경제 위기 및 그에 따른 급격한 소득분포의 변화, 노동공급 패턴의 변화, 기타 구조적인 변동에 대해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수 있음³¹⁾

- 그러나 재량적 방식의 사용은 적시성, 중립성, 신뢰성, 책임성 차원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음
 -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세부담 조정이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³²⁾
 - 우리나라의 실증분석상으로도 비주기적인 「소득세법」 개정과 같은 재량적인 정책을 사용할 경우 소득세 부담 및 가치분소득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³³⁾
 -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따라 물가효과와 상관없이 세제가 개편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물가 상승이 세부담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수단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하며 그 실제 정책효과도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³⁴⁾
 -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제도의 고정요소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누적된 조정 압력이 커지며, 실제 세법 개정이 있더라도 납세자는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해 타당성을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 정치적 부담 없이, 즉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경제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³⁵⁾

나. 물가연동 방식

1) 개념

-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적으로 연동³⁶⁾시키는 방식을 말함

31) 성명재·박상원(2008), p. 122.

32) 성명재·박상원(2008), p. 42.

33) 전승훈(2007), p. 6.

34) 전승훈(2007), p. 7.

35) 안종석(2019), p. 144.

-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의 변화에 의해서만 실질 세부담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임
- 과세표준 세율 적용구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이 물가연동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들 항목 전부를 물가연동시키는 방식을 '완전 물가연동 방식', 일부 항목만을 물가연동시키는 방식을 '불완전 물가연동 방식'이라 부르기도 함³⁷⁾
- 물가연동 방식 적용에 있어 어떠한 물가지수를 사용할 것인지, 연동 주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으로 다양한 양태를 나타낼 수 있음
 - 물가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물가지수, 명목임금지수,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혼합 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음
 - 연동 주기는 매년, 또는 3년 등의 일정 간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혹은 누적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에만 물가연동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음

2) 특징

- 물가연동 방식은 물가 변동에 의한 초과 또는 과소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여 실질 세부담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립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실질 세부담 및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 경제행위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중립적임³⁸⁾
 - 납세자 입장에서도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짐³⁹⁾
 - 실질 세부담의 변화는 실질 과세소득의 변화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되므로 만약 실질 과세소득에 의한 실질 세부담의 변동이 사회·경제적으로 용인되고 별도의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재량적 방식의 세법 개정 없이 안정적으로 세제가 유지될 수 있음⁴⁰⁾

36) 연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척도로 대표적인 것이 물가(물가지수)이며, 그 외에 평균임금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1인당 소득 증가율 등이 있을 수 있음.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가에 의한 연동 방식만을 상정하기로 함

37) 전승훈(2007), p. 20.

38) 전승훈(2007), p. 2.

39) 성명재·박상원(2008), p. 123.

- 또한 단순히 시계열적으로 실질소득 세부담의 안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볼 때 세부담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음⁴¹⁾
 -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생애소득이 동일한 두 소득자의 생애 소득세부담이 서로 상이해지지 않게 세부담의 불공평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물가연동 방식의 사용은 제도의 복잡성, 기계적 운영에 따른 탄력성 저하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음
 - 제도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⁴²⁾

- 또한 설령 물가연동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물가 상승 효과를 상쇄하여 실질 세부담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음
 - 물가연동 방식 적용의 항목 범위, 사용 물가지수 척도, 연동 주기 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실질 세부담 상쇄 효과의 크기는 달라지기 때문임

3. 물가연동 세제에 대한 세부적 고찰

가. 물가연동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

- 우리나라는 비주기적으로 재량적 방식에 의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왔음
 -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이나 공제액 및 공제 한도 등을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취함

40) 성명재·박상원(2008), p. 41.

41) 성명재·박상원(2008), pp. 105~106.

42) 성명재·박상원(2008), p. 42.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경우 2008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10여 년 넘게 저소득층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없이 세율과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확대만이 진행됨
 -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 현재 물가연동 방식에 의한 세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 구간의 자동적 상승으로 적용 세율이 높게 적용되어 담세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세 문제가 발생함
 - 조세부담률의 변동에 의한 재정의 비효율성, 세원별 세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의 형평 구조 악화, 납세자의 불만 누적이 문제가 되고 있음⁴³⁾
-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여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⁴⁴⁾
-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물가 상승에 의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방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현실에 보다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물가연동 방식과 재량적 방식은 그 자체로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논하기 어려움
 - 물가연동 방식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재량적 방식을 통해 실질 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물가 변동 효과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님

43) 안종석(2019), p. 144.; 성명재·박상원(2008), p. 44.

44) 국회입법조사처(2021), p. 253.

-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정확한 현황 인지와 문제 진단 및 이에 대한 효과적 처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수단으로서의 물가연동 방식 또는 재량적 방식의 선택은 차후 순서가 되어야 함
- 또한 물가 변동에 대응한 조세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규모나 면세자 비율 조정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물가연동 세제 도입 시의 주요 쟁점 및 고려 요소

- 만약 물가연동 방식의 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선행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파악하고 비교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1) 조세중립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연동 방식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 세부담이 실질소득 변화에 의해서만 변동되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즉 '중립성'에 있음
 - 실증분석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과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킬 때 소득세 부담의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남⁴⁵⁾
-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될 때 개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유지되고 계층 간 소득분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거시적으로도 경제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으므로 중립성은 물가연동 방식 도입 시의 가장 큰 유인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실질 세부담 변동의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도가 높을 수 있음

45) 전승훈(2007), p. 10.

- 만일 물가연동을 시행하지 않아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증가로 인해 실효 세율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조세 저항이 초래될 수 있음

- 다만 완전한 조세중립성 달성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액 등의 연동을 결정에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물가연동 방식 미도입 시 실증분석상 소득세제 정액 요소 중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을 고정시키는 경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초과 세부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⁴⁶⁾
 -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별 기준금액은 물가 변동에 대응한 각 소득계층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나 구간별로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차등하여 연동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음

-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물가 변동 효과를 상당 기간 중화시키지 않고 물가 변동에 의한 조세중립성의 왜곡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한계비용과 얻을 수 있는 정책상의 한계편익을 비교·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세수 효과 및 재정정책

- 물가연동 방식의 세제를 적용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수 규모가 작아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 일반적으로 물가연동 방식 미도입 시 물가 상승 국면은 세제 개편에 따른 정치적 고려 없이도 실질적 세수를 증가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정부는 국가 채무 증대에 대한 부담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음
 - 반면 물가연동 세제 도입 시에는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액 등이 조정되므로 사실상의 증세효과가 중화됨

46) 성명재·박상원(2008), p. 115.

- 따라서 물가연동 방식을 시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상대적 세수 규모 축소로 인한 재정 정책의 유연성 위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⁴⁷⁾
 -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 복지수요 증대, 예상치 못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점차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세수가 감소되어 재정건전성 고려 시 이에 대한 재정지출 활동이 경직될 수 있음
 - 한편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⁴⁸⁾

- 결국 소득세 물가연동 방식 세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수 수준, 정부 규모 및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⁴⁹⁾

- 또한 물가연동 세제의 시행은 물가 상승 시의 자동적 증세를 억제함으로써 경제 자동 안정화 기능을 저해하여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등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음⁵⁰⁾
 - 물가연동 방식 미도입 시 일반적으로 누진세 과세체계하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소득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되고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억제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물가연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논리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닌 공급충격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3) 재량적 방식과의 혼용 가능성

- 물가연동 방식을 채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량적 방식의 세제 개편이 요청될 수도 있음

47) 전승훈(2007), pp. 13~14.

48) 전승훈(2007), p. 14.

49) 전승훈(2007), p. 23.

50) 전승훈(2007), pp. 14~15.

- 물가연동 방식의 소득세제를 운용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경제·사회적 충격에 따라 긴급한 세제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또한 만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소득세 체계의 비합리성이 발견된다면 단순히 물가 변동에 따른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 이외에 보다 선진적인 방향으로서 세제의 구조적 틀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상황 발생 시에는 물가연동 방식과 재량적 방식의 병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⁵¹⁾
- 외부적인 충격이나 긴급한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간헐적인 세제 개편이 요청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량적 방식의 개편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⁵²⁾
 - 물가연동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재량적인 조세정책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의의가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재량적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물가연동 세제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함

4) 입법·행정 관련 비용 소요 및 복잡성 증대 측면

- 물가연동 방식의 세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 연동방식, 연동 주기 등에 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며, 입법 과정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 세부담 완화의 목표 수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액에 대한 적용 범위 결정, 합리적인 연동지표(CPI 등)의 결정, 연동 주기(매년 또는 수년)의 결정이 요구되며, 타당한 근거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연동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으로 구성되므로 각 소득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도 함께 분석하여야 함

51) 전승훈(2007), pp. 25~26.

52) 성명재·박상원(2008), p. 15.

- 물가연동 방식 적용 세목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 재산세, 자본이득세 등으로도 확장 가능하므로 물가연동 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세목에 걸쳐 조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입법 후에는 매년 물가연동률을 반영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액 등이 새로이 고시되어야 하므로 세무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 등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음

5) 물가 상승 정도 등 경제적 환경

- 물가연동 방식의 세제 도입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 큰 폭으로 지속되는 경제 환경에 의해 조세중립성이나 형평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는 경우에 더욱 증대됨
- 따라서 물가 상승 수준이 비교적 완만하다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낮아질 수 있으며, 도입에 따른 한계효익과 한계비용을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매년 물가 상승률이 미미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누적하여 보았을 때 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의미 있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 대응(재량적 방식 또는 물가연동 방식)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⁵³⁾

53) 전승훈(2007), p. 24.

IV. 주요국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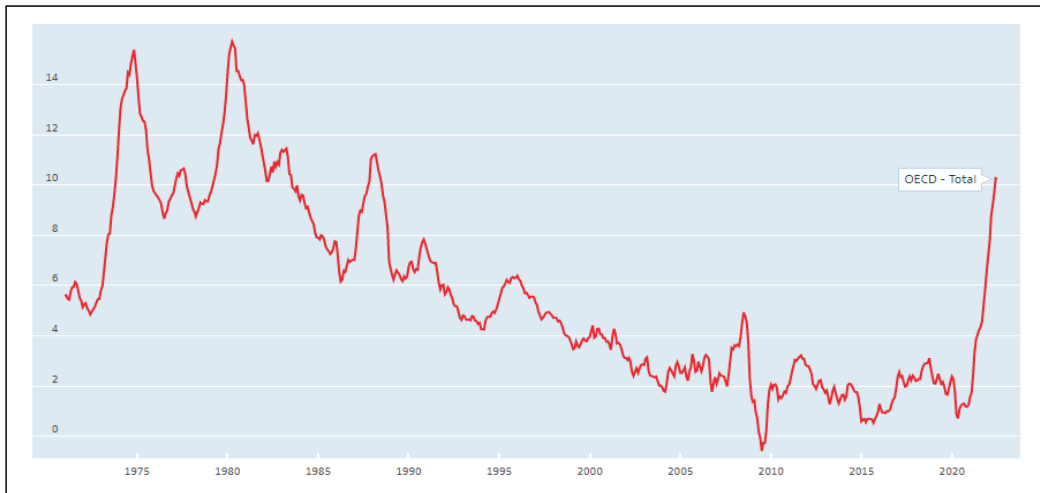
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동향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황

- OECD가 발표한 2022년 7월 기준 OECD 회원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6.55%로, 199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프랑스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낮은 6.3%로 나타남

[그림 IV-1] OECD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1970. 7. ~ 2022. 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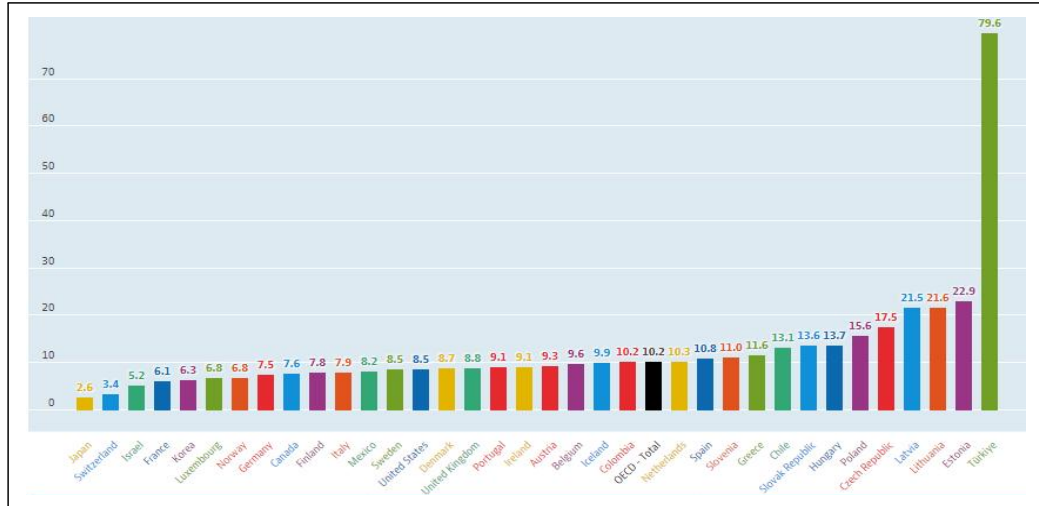


주: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자료: OECD, "Inflation(CPI)",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검색일자: 2022. 9. 13.

[그림 IV-2] OECD 회원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비교(2022. 7.)

(단위: %)



주: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자료: OECD, "Inflation(CPI)",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검색일자: 2022. 9. 13.

나.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영 현황

1) 도입 현황

□ 아래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7월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 물가 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최소 22개국으로 OECD 회원국의 60%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물가연동 세제 적용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총 22개국인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적 특징으로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권,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권에서는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액 등의 적용 범위, 조정 주기, 사용하는 연동지수 등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양태를 나타냄

- 물가연동 세제 미적용 국가는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이 있으며, 총 16개국인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적 특징으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권, 에스토니아 등의 발트 3국, 일본 및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물가연동 세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적용 현황(2022년 7월 기준)

구분	국가명
물가연동 세제 적용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22개국)
물가연동 세제 미적용	호주, 오스트리아 ¹⁾ ,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16개국)

- 주: 1. 물가연동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함은 1) 과세표준 구간 또는 2) 각종 공제제도 등에 있어서 최소 하나 이상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2. 2022년 7월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과세표준 구간 또는 공제액 등이 물가연동되도록 하는 규정이 법 조문상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국가'로 표시하였으므로, 적용 국가 및 미적용 국가 분류에 대한 완전성은 담보할 수 없음
 3. 물가연동이란 일반적인 물가지수 외에 임금지수나 소득지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함
 1)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 중임

자료: 저자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함

2)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

- 〈표 IV-2〉에서는 2022년 7월 현재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22개의 OECD 회원국 중 20개국에서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대해 물가에 연동하고 있으며, 19개국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에 물가를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음
 - 과세표준 세율 구간 뿐 아니라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에도 물가를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웨덴, 튀르키예를 제외한 17개국임
 - 뉴질랜드와 멕시코를 제외한 20개국은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대하여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슬로베니아, 스웨덴, 튀르키예를 제외한 19개국은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항목은 조사대상국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물가에 연동되는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은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가족 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음

〈표 IV-2〉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2022년 7월 기준)

국가	과세표준 세율 구간	공제제도 등	
		적용 여부	예시
벨기에	○	○	자녀세액공제, 비과세소득 한도
캐나다	○	○	인적공제 등
칠레	○	○	교육비공제 등
콜롬비아	○	○	근로소득공제 등
코스타리카	○	○	가족세액공제 등
체코	○	○	환급형 자녀세액공제 등
덴마크	○	○	인적공제 등
핀란드	○	○	근로소득공제 등
프랑스	○	○	근로소득공제, 저소득자 세액감면 등
아이슬란드	○	○	인적공제 등
이스라엘	○	○	인적공제 등
멕시코	×	○	항목별 공제 합계액 등
네덜란드	○	○	일반세액공제 등
뉴질랜드	×	○	가족지원세액공제
노르웨이	○	○	인적공제 등
슬로바키아	○	○	인적공제 등
슬로베니아	○	×	-
스웨덴	○	×	-
스위스	○	○	인적공제(지방세(cantonal) 단계) 등
튀르키예	○	×	-
영국	○	○	인적공제 등
미국	○	○	인적공제, 최저한세 등

주: 1. 물가연동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함은 1) 과세표준 구간 또는 2) 각종 공제제도 등에 있어서 최소 하나 이상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2. 조사대상국별로 모든 물가연동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지는 않았으며, 2022년 7월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과세표준 구간 또는 공제액 등이 물가연동되도록 하는 규정이 법 조문상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으로 표시하였고, 예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함
 3. 물가연동이라 함은 일반적인 물가지수 외에 임금지수나 소득지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함
 자료: 저자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함

2. 미국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⁵⁴⁾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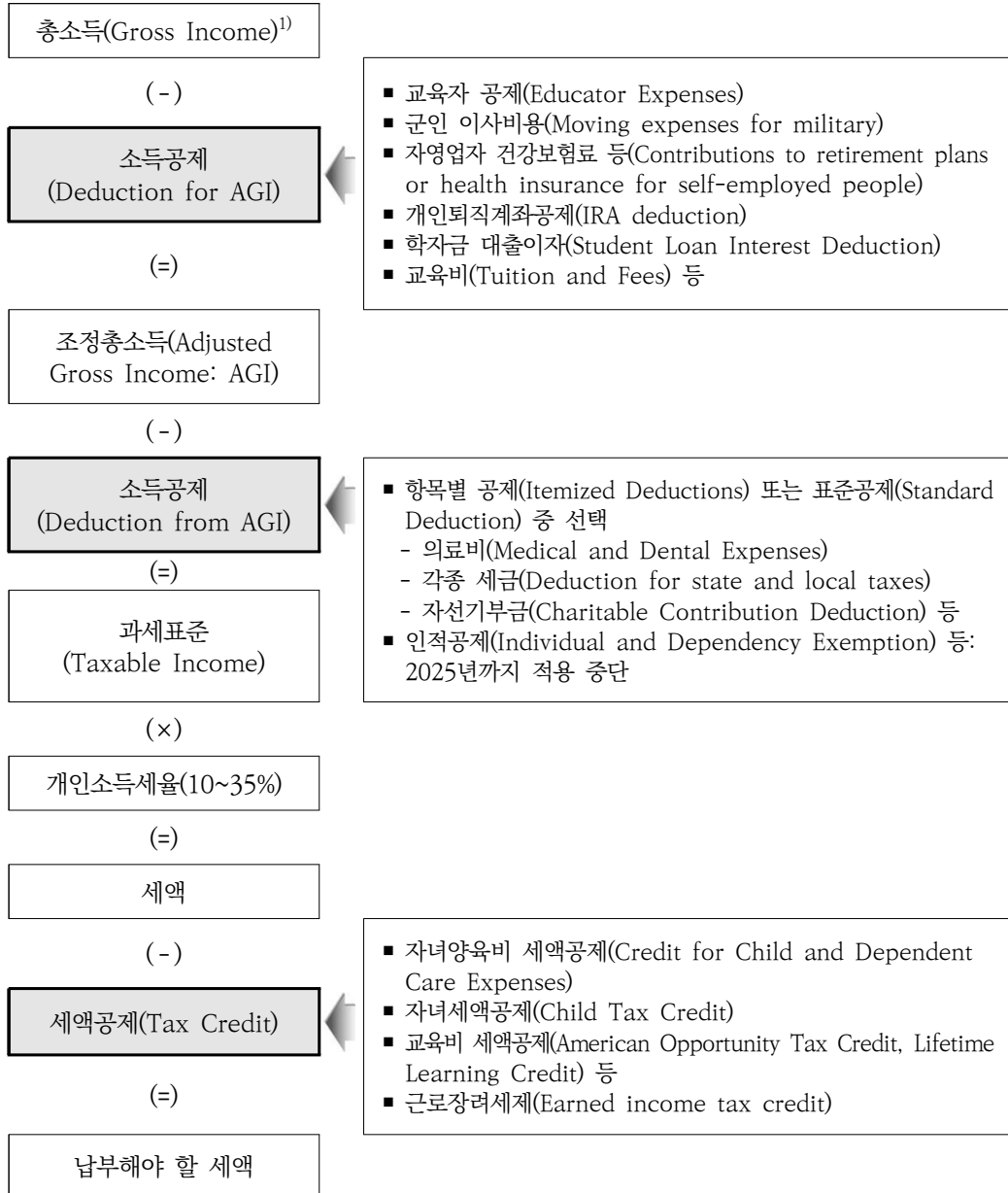
- (개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열거주의와 달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음
 - (과세방식) 결혼 유무 및 개별·합산신고 등에 의해 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과세연도 및 신고기한) 소득세 신고의 과세기간은 역년이며 신고기한은 당해연도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임

2) 세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 미국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총소득(gross income)에서 허용된 공제(allowances and deductions)를 차감한 순소득에 과세하는 구조로, 과세표준(taxable income) 산정 시까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침
 - 제1단계: 총소득(gross income)의 계산
 - 제2단계: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계산
 - 제3단계: 과세표준의 계산
 - 조정총소득에서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제4단계: 과세표준에서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 제5단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54) IBFD, "Country Tax Guide- UK", Individual Income Tax(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uk_s_001.html, 검색일자: 2022. 7. 28.) 및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232~292.를 참조함

〈표 IV-3〉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 1) 비과세소득(비과세 이자소득, 장학금, 산재보상금 등) 제외
 자료: 미국 국세청, 미국 소득세 신고서(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참조

가) 총소득의 계산

- 총소득(gross income)은 근로소득, 사업, 이자 및 배당, 연금, 자본이득 등 소득 원천을 불문한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며, 총수입에서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총소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열거주의와 달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음
- 미국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등으로부터의 이자소득,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산재보상금, 적격 장학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내국세법」 제101조에서 140조에 명시되어 있음

나) 조정총소득의 계산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은 총소득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개인 퇴직계좌 기여금 등 일부 공제항목들을 차감한 총소득을 말함
 - 이 외에도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금, 적격 교육비, 교육자 공제, 적격 의료저축계좌 기여금, 적격 이사비용 등의 공제항목이 있음

다)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표준(taxable income)은 조정총소득에서 i)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amounts)와 ii)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차감하여 산정함
 - 인적공제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중단되었음⁵⁵⁾

-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가 있으며, 인적공제 금액 및 신고유형별로 해당 연도 개인의 조정총소득에 따라 공제 수준을 제한하는 기준소득금액⁵⁶⁾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됨
- 참고로, 2017년 인적공제 금액은 4,050달러임
-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개산공제인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두 가지가 있으며, 개인소득세 신고 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표준공제는 일반적으로 조정총소득(AGI)에서 신고 지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며, 65세 이상 및 시각장애인은 추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음⁵⁷⁾
 - 항목별 공제는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지출에 대해 적용하는 소득공제로, 항목별 공제는 2017년 부부합산 기준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313,8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8~2025년 까지 한도 적용을 배제함⁵⁸⁾⁵⁹⁾
 - 근로소득 관련 비용은 적격 공연예술가 등 법에서 정한 유형의 근로자와 요건을 충족하는 교재 등 교육자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중 교육자 비용은 2022년 기준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⁶⁰⁾

55)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시행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은 개인소득세율 일부 구간 인하(최저세율(10%) 구간 제외, 최고세율 39.6% → 37%),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배제(2017년 기준 1인당 4,050달러), 표준공제 확대(독신자의 경우 2017년 기준 6,350달러 → 12,000달러), 자녀장려금 관련 세액공제액(1,000달러 → 2,000달러) 및 환급 가능 세액공제액 최대 1,400달러 확대,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500달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56) 인적공제 종합한도는 신고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며, 기준 조정총소득(2017년도 기준 부부합산 신고 313,800달러)을 초과하는 2,500달러마다 2%씩 감소됨

57) 미국 국세청(IRS), “Dependent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1>, 검색일자: 2022. 8. 30.

58)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2018년부터 2025년 적용배제되고 있음

59) 납세자의 조정총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항목별 소득공제 신청합계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액을 감액하는 규정임

60) 미국은 근로 관련 필요경비(job-related expenses)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중 ‘기타공제 대상 비용’과 합산하여 그 총액이 조정총소득 금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고, 항목별 소득공제 통합한도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 규정은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IRS, “Tax reform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itemized deductions”, <https://www.irs.gov/newsroom/tax-reform-brought-significant-changes-to-itemized-deductions>, 검색일자: 2022. 9. 15.)

〈표 IV-4〉 미국의 주요 항목별 공제 내용

주요 항목별 공제	내용
의료비	AGI의 7.5%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주 소득세 및 기타 적격 납부세액	한도: 개인 5,000달러 (부부합산 10,000달러)
적격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자	공제 가능
공익성 기부금	적격단체 현금기부 시 AGI의 60%
연방정부에서 선언한 재해로 인한 도난·손상	건별 100달러(상한), AGI의 10%

자료: IRS, "Itemized Deductions", <https://www.irs.gov/pub/irs-pdf/f1040sa.pdf>, 검색일자 2022. 6. 7.

라) 세액의 산출

-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신고유형별 과세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됨
 - 과세 구간은 일반적으로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주어진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 범위를 말함
 - 세율 구간은 신고유형별로 부부합산, 독신, 세대주, 부부별도 신고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세율 구간은 납부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세율 구간에 대해 물가 수준에 연동하여 조정해주고 있음

〈표 IV-5〉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과 장기 최대자본이득세율¹⁾(2022년)

구분	세무신고 유형			연방 소득세율 (%)	장기 자본이득세율 (%)
	단독	부부합산	세대주		
소득세 과세표준	~10,275달러	~20,550달러	~14,650달러	10	0
	10,275~41,775달러	20,550~83,550달러	14,650~55,900달러	12	
	41,775~89,075달러	83,550~178,150달러	55,900~89,050달러	22	15
	89,075~170,050달러	178,150~340,100달러	89,050~170,050달러	24	
	170,050~215,950달러	340,100~431,900달러	170,050~215,950달러	32	
	215,950~539,900달러	431,900~647,850달러	215,950~539,900달러	35	
	539,900달러~	647,850달러~	539,900달러~	37	20

주: 1. 연방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37%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이며, 세무신고 유형(단독, 부부합산, 세대주 여부)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을 달리함
 2.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독신 신고자 기준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3.8%의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부과함
 1) 순양도차익이 일반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분류과세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최대자본이득세율이라 함
 자료: 미국 국세청(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2. 6. 7.

마) 결정세액의 산출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환급형(refundable) 세액 공제 및 비환급형(non-refundable)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함⁶¹⁾
- 환급형 세액공제는 근로장려세제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건강보험료 세액공제(Health insurance credit)가 있음⁶²⁾

61)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반해 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함
 62) IBFD, "1.8.3.1. Refundable credi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s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us_s_1.8.3.1.", 검색일자: 2022. 8. 31.

- 비환급형 세액공제는 경로 및 장애인 세액공제(Elderly and Disabled Credit), 입양 비용 세액공제(Credit for Adoption Expenses),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Tax Credits) 등이 있음
 - 환급되지 않는 개인 세액공제는 개인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거나 다른 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허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함
 - 이 외에 혼합형으로 자녀세액공제와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가 있음
 -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란 적격 학생당 최대 연간 2,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이 되는 경우 남은 세액공제 금액(최대 1,000달러)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음⁶³⁾
 -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근로장려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살펴 봄
- (근로장려세제) 미국의 Earned Income Tax Credit(이하 'EITC')은 1975년 도입된 최초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임⁶⁴⁾
- EITC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기본요건, 자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⁶⁵⁾
 - 과세연도 2022년 기준 조정총소득 한도금액은 자녀 수 0~3명에 따라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22,610달러, 49,622달러, 55,529달러, 59,187달러이고 독신인 경우 16,480달러, 43,492달러, 49,399달러, 53,057달러임
 - 투자소득 한도금액은 10,300달러임
 - EITC 최대 급여는 과세연도 2022년 기준 자녀 0명이면 560달러, 자녀 1명이면 3,733달러, 자녀 2명이면 6,164달러, 자녀 3명 이상이면 6,935달러임⁶⁶⁾
 - EITC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 한도 및 최대 급여, 소득수준별 급여산정 시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함

63) 미국 국세청(IRS),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aotc>, 검색일자: 2022. 8. 31.

64) CBO, "Refundable Tax Credits", <https://www.cbo.gov/publication/43767>, 검색일자: 2022.9.1.

65) 미국 국세청(IRS), "Do I Qualify for the EITC?",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do-i-qualify-for-earned-income-tax-credit-eitc>, 검색일자: 2020. 9. 1.

66) 미국 국세청(IRS), "Earned Income Tax Credit Income Limits and Maximum Credit Amount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tax-credit-income-limits-and-maximum-credit-amounts>, 검색일자: 2022. 9. 1.

- (자녀세액공제) · 미국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와 추가자녀세액공제(The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17세 미만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최대 2,000달러(자녀 1인당)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CTC 세액공제액(급여액)은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부양자녀의 수, 소득세 신고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소득 수준별로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형태로 달라짐
 - 세액공제액(급여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AGI 1,000달러당 50달러씩 점진적으로 감액됨(phase-out)
 - 기준금액은 미국 세무신고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며, 개별 신고 및 세대주 신고인 경우 200,000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400,000달러임

- 미사용된 CTC 세액공제액(급여액)이 발생하는 CTC 신청자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ACTC라고 함
 - 2022년 기준 환급가능한 근로소득(earned income)⁶⁷⁾ 기준금액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CTC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부양자녀⁶⁸⁾ 1인당 500달러의 부양가족 세액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가 추가로 적용됨⁶⁹⁾
 - 비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세액공제액은 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됨

67) 여기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란 임금, 급여, 기타 과세대상 종업원 혜택 및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을 의미함(안중석·박수진·이서현, 2017, p. 55.)

68)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이상으로 대학생이거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는 자녀 또는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친척을 말함

69) 미국 국세청(IRS), “An overview of the credit for other dependents”, <https://www.irs.gov/newsroom/an-overview-of-the-credit-for-other-dependents>, 검색일자: 2022. 8. 31.

- 기준소득 금액은 개별 신고 및 세대주 신고인 경우 200,000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400,000달러임

바) 최저한세

- (최저한세) 미국은 조세부담의 과도한 경감을 제한함으로써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고 조세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운용 중임⁷⁰⁾
 - 비과세소득과 같은 우대항목을 가산하고, 공제항목이나 이연과세항목 등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 최저한세 부담액에서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세액(regular income tax)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가 최저한세액으로 납부함
 - 우대항목(tax preference items)은 면세이자 등이 있음
 - 조정항목(adjustment items)은 감가상각비, 주택담보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인적 공제 등의 항목을 가산 또는 차감함
 - 우대항목 및 조정항목을 가감한 후 최저한세 공제금액(exemption)을 차감하는데, 공제금액은 2022년 기준 개별신고의 경우 75,9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118,100달러, 부부개별 신고의 경우 59,050달러임⁷¹⁾
 - 2022년 기준 개별신고, 세대주신고, 부부합산 신고 시 과세표준 206,100달러 이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6%, 206,1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함
 -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03,050달러임

70) IBFD, "Alternative minimum tax (AM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s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us_s_1.10.1.2., 검색일자: 2022. 8. 31.

71) 최저한세 잠정과세표준이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079,800달러, 개별신고와 세대주의 경우 539,9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세 공제금액에서 차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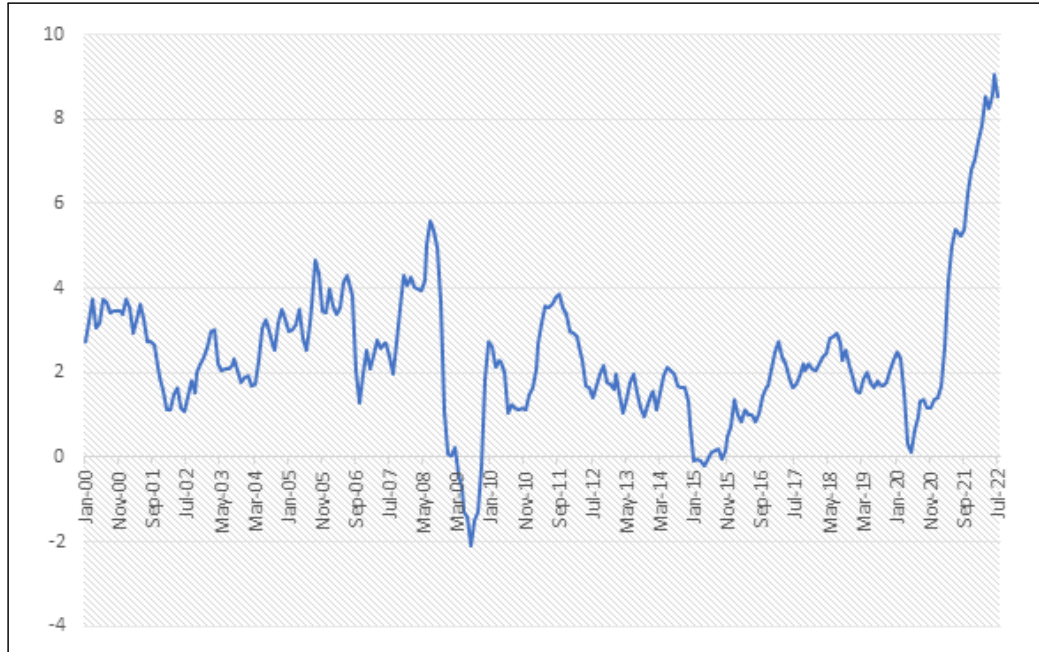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OECD에서 발표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53% 증가함
- 지난 20년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1~9.1%의 분포를 보임
- 미국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물가지수(CPI-U)는 2022년 6월 기준 연간 9.1% 증가하여 1981년 11월 기준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음

[그림 IV-3] 미국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자료: OECD, "Inflation (CPI)",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2022. 7. 13.

2) 운용방식

가) 개요

- (도입연도 및 도입 배경) 미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세 왜곡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⁷²⁾
 -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⁷³⁾
 - 미국의 물가연동세제는 1981년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ERTA)에서 제정되었으며, 이후 3년 동안의 세율 인하를 거쳐 1985년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함
 - 미국의 도입 당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3%임

- 미국은 주(State)정부별로 연방소득세 이외에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세 물가연동제 실시 여부는 주정부별로 상이함
 - 24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표준공제, 인적공제의 세 가지 주요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는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⁷⁴⁾
 -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41개 주정부 중에서 앨라배마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조지아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클라호마주,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등 17개 주는 물가연동을 실시하지 않음
 -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43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개인소득세⁷⁵⁾를 부과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주⁷⁶⁾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7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pp. 3~4.; 성명재·박상원, 2008, p. 77.

73) Tax Foundation, "Tax Indexing Turns 30", <https://taxfoundation.org/tax-indexing-turns-30/>, 검색일자: 2022. 8. 7.

74) 미국 조세재단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inflation-adjusting-state-tax-codes/>, 검색일자: 2022. 8. 5.

75) 워싱턴주는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뉴햄프셔주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만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 표준공제, 인적공제 항목 모두 물가에 연동하는 주정부는 총 9개 주임
 -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몬타나주, 네브라스카주, 오리건주, 로드 아일랜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몬트주가 이에 해당됨

나) 물가연동 적용 범위

- 물가연동 도입 세목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소득세 등), 상속·증여세, 소비세 등으로 약 60여 개 항목에 대해 적용됨
 - 참고로, 2010년에는 약 30여 개의 소득세 관련 항목이 물가에 연동되었음
 - 과세표준 세율 구간, 표준공제, 근로장려세제 등이 대표적인 소득세 물가연동 항목임
- 개인소득세의 주요 물가연동 항목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율 구간 등이 있으며 매년 물가 수준에 연동하여 금액을 조정해주고 있음⁷⁷⁾
 - 인적공제는 2017년 기준 4,050달러이나 2018~2025년까지는 공제를 배제함
 - 표준공제 및 항목별 공제는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납세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 추가 표준공제가 적용됨
 - 항목별 공제는 2017년 부부합산 기준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313,8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8~2025년 까지 한도 적용을 배제함
 - 세율 구간은 소득세 세율 구간별 세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납부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율 구간에 대해 물가 수준에 연동하여 조정해주고 있음

76)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정부는 알래스카주,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와이오밍주가 있음

7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pp. 1~3.;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1>, 검색일자: 2022. 8. 5.

- 세율 구간은 신고유형별로 부부합산, 독신, 세대주, 부부별도 신고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음

〈표 IV-6〉 미국의 개인소득세법상 2019~2022년 인적공제, 표준공제 및 세율 구간

(단위: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적공제		2025년까지 적용배제			
표준 공제	부부합산	24,400	24,800	25,100	25,900
	독신, 부부별도 신고	12,200	12,400	12,550	12,950
	세대주	18,350	18,650	18,800	19,400
추가 표준 공제	부부합산	1,300	1,300	1,350	1,400
	독신, 세대주	1,650	1,650	1,700	1,750
항목별 공제 한도		2025년까지 적용배제			
세율 (부부 합산)	10%	0~19,400	0~19,750	0~19,900	0~20,550
	12%	19,400~ 78,950	19,750~ 80,250	19,900~ 81,050	20,550~ 83,550
	22%	78,950~ 168,400	80,250~ 171,050	81,050~ 172,750	83,550~ 178,150
	24%	168,400~ 321,450	171,050~ 326,600	172,750~ 329,850	178,150~ 340,100
	32%	321,450~ 408,200	326,600~ 414,700	329,850~ 418,850	340,100~ 431,900
	35%	408,200~ 612,350	414,700~ 622,050	418,850~ 628,300	431,900~ 647,850
	37%	612,350 초과	622,050 초과	628,300 초과	647,850 초과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pp. 5~7.

- <표 IV-7>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연간 소득세 물가연동 항목을 세액계산 단계별로 정리함
 -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물가연동 조정은 일반적으로 2023년에 제출될 세금신고서에 적용됨
 - 한편, 2022년도에는 「내국세법」 §25A(d)(2)에 제공된 평생교육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부부합산 신고 시 사용하는 수정된 조정된 총소득금액을 물가연동하지 않기로 함

<표 IV-7> 미국의 소득세 주요 물가연동 항목

세액산출 단계		물가연동 항목	물가 미연동 항목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 입양지원 프로그램(Adoption Assistance Programs) 비과세 한도 • 적격 교통수단에 대한 복지혜택(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Benefit) 비과세 한도 • 18세 이하 자녀 불로소득 면제금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생명보험 한도
특별비용공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및 중등교사의 특정 비용 • 학자금 대출이자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¹⁾ • 표준공제 • 추가 표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교육비 공제 • 의료비 공제 • 기부금 공제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과세표준 구간 	-
세액공제	환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ACTC) • 근로세액공제(EIC) • 적격 건강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기회세액공제(40%)
	비환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 세액공제 • 경로·장애인 세액공제 • 평생교육 세액공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 면제 금액 	-

주: 1) 교육자 비용은 2022년 기준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2) 2022년 기준으로 환급가능한 근로소득(earned income)⁷⁸⁾ 기준금액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한도가 매년 조정되지는 않음
 자료: 본문 내용 및 미국 국세청(IRS), "Rev. Proc. 2021-45", <https://www.irs.gov/pub/irs-drop/rp-21-45.pdf>, 검색일자: 2022. 9. 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78) 여기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란 임금, 급여, 기타 과세대상 종업원 혜택 및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을 의미함(안종석·박수진·이서현, 2017, p. 55.)

다) 조정 주기 및 물가연동지수

- 물가조정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기초로 산정된 생계비조정지수(cost-of-living adjustment)를 사용하고 있음⁷⁹⁾
- 생계비조정지수는 2018년 이후부터 ‘연쇄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CPI-U)를 기초로 산정됨
 - C-CPI-U는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로 해당연도의 8월 31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평균값임
- 과세표준 등 주요 물가연동 항목에 산출된 생계비조정지수를 곱하여 매년 조정하게 됨

$$\text{생계비조정지수} = \frac{\text{특정연도 소비자물가지수}}{\text{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

- 참고로,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물가연동지수로 채택하고 있음
-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를 따라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연쇄 소비자물가지수(C-CPI-U)를 사용하고, 이 외에 지역 중심의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를 채택하고 있음

라) 주요 변천 과정 및 최근 논의 동향

- (도입연도) 미국의 물가연동 세제는 1981년 「경제회복법(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ERTA)」에서 제정되었으며, 이후 3년간의 단계적 세율 인하를 거쳐 1985년 과세연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 의회는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8.9%에 달하자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브래킷 크리프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함

79) IRC §1 (f) (2), (6)

- 레이건 정부의 「경제회복법」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이외에도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시행함
- (물가조정지수의 변경) 국세청(IRS)은 2018년 이전에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로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사용했으나 2017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TCJA)」에 따라 ‘연쇄 소비자물가지수’(C-CPI-U)로 변경하였음
 - 2018년 이전 생계비조정지수는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Consumers: CPI-U)를 사용하였으나 C-CPI-U가 CPI-U보다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변동률을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보아 2018년부터 C-CPI-U로 변경됨⁸⁰⁾
-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 항목은 2010년 약 30개에서 2022년 기준 40여 개로 증가하였음
 - 2013년 과세연도부터는 소득세 최저한세에 대하여도 물가에 따라 연동되어 조정되기 시작하였음⁸¹⁾
 - 여기에는 최저한세(AMT) 면제 금액, 면제 금액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한도 및 28%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금액(AMTI)이 포함됨
- (최근의 논의 동향) 소득세에 대하여 매년 40개 이상의 항목이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나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주요 세법 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자녀세액공제와 납세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공제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조정되지 않고 있음⁸²⁾
 - 2017년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자녀로 인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중단된 것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음
 - 인적공제는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나 자녀세액공제의 최대 금액은 조정되지 않음

8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p. 3.

81) IRC § 55(d)(1)

82) 이 외에도 투자손실에 대해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1978년 이래로 연간 3,000달러로 고정되어 있고, 사업상 증여에 대한 공제는 1962년 이후로 25달러로 설정되었음

- 또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기 위한 소득 한도는 물가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되지만 최대공제액(2,500달러)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시행되고 있음

3. 영국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⁸³⁾

1) 개요

- 영국은 소득세제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가지고 있음
 - 개인의 소득세 부과를 위하여 시대별·종류별로 각기 다른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매해 예산안 심사에 따라 제·개정되는 재정법(Finance Act; FA)에 의해 정기적으로 변동됨
 - 기본 규율 법률은 「Income Tax Act 2007(ITA)」임
 - 사업소득, 자산소득, 투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ITTOIA)」에서 상세 규율함
 -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Income Tax (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ITEPA)」에서 상세 규율함
 - 소득세의 과거 입법 법률인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ICTA)」에서도 이중과세 방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음
 -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s)은 국세청(HMRC)이나 재무부(Treasury)에서 제정함
 - 이러한 보충적 입법 권한은 국회 입법의 위임으로부터 나옴

83) IBFD, Country Tax Guide- UK, Individual Income Tax(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uk_s_001.html, 검색일자: 2022. 7. 28.) 및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232~292.를 참조함

- 영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 신탁,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될 수 있으며, 거주자 해당 유무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짐
 - 거주자인 개인 및 신탁(trust)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거주자가 되기 위한 판정 기준으로서 대표적으로 1년 중 183일 이상을 영국에 거주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영국 내 체류 일수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근로 환경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짐
 -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 및 신탁은 영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영국 내 원천소득을 발생시킨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 납세자 단위는 개인 단독이며 부부합산이나 자녀합산 제도는 없음
 - 1990년에 배우자⁸⁴⁾와의 부부합산 제도가 폐지되었음
 - 소득공제 등도 개인별로 적용됨

- 영국은 소득세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열거주의(source doctrine) 방식을 취하고 있음⁸⁵⁾
 - 자산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규정된 소득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함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은 세무당국의 신고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함
 - 과세기간(과세연도)은 직전연도 4월 6일부터 당해연도 4월 5일까지로 함
 - 신고기한은 서면 신고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10월 31일, 온라인 신고의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임
 - 만약 근로자의 고용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PAYE scheme)’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고 여타 소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은 없고 저축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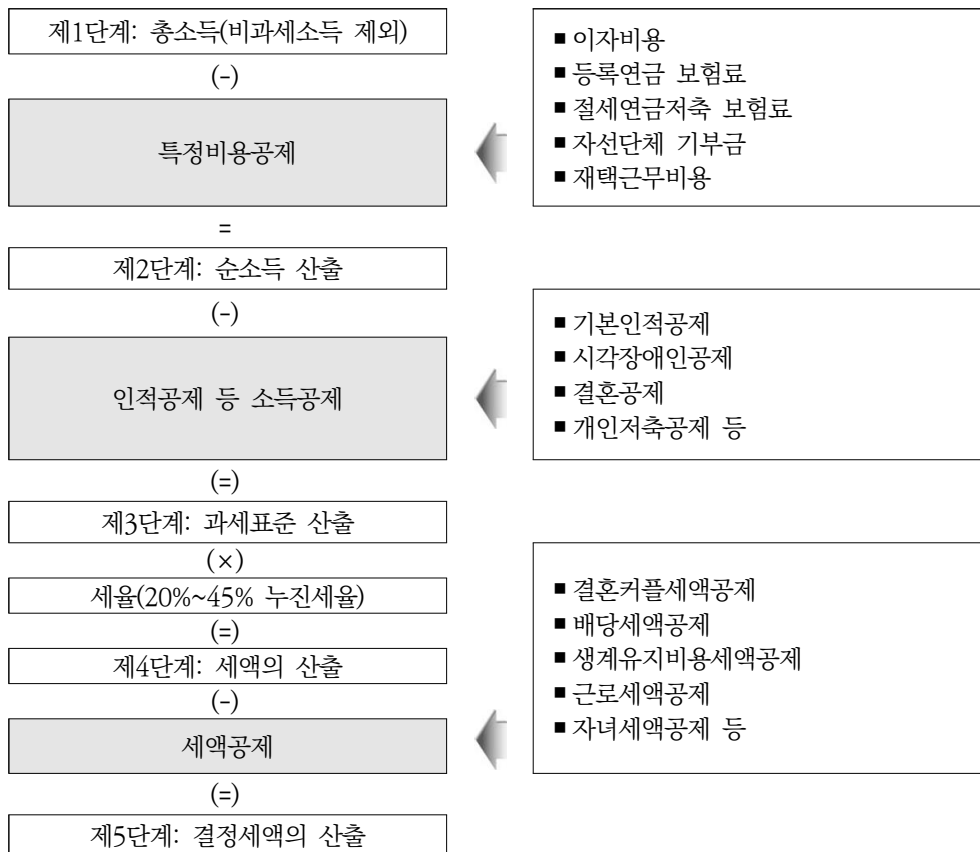
84) 법정파트너(civil partner)를 포함함(이하 같음)

8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43.

2) 세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5단계 과정을 거침
 - 제1단계: 종류별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출함
 - 제2단계: 총소득에서 종류별 소득에 대응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산출함
 - 제3단계: 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allowance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제4단계: 과세표준에서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 제5단계: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tax credits)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표 IV-8〉 영국의 소득세 결정 단계별 흐름



자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이하에서 소득세 결정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봄

가) 총소득(total income)의 산출

□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각종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총소득을 산출함

○ 과세대상 종합소득에는 자산소득(income from UK or overseas property businesses), 투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음

- 자산소득에는 로열티소득, 부동산임대료소득, 신탁소득 등이 있음
- 투자소득에는 저축소득, 배당소득을 포함함
- 근로소득에는 연금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함
-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소득신고도 필요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아동보조금(child benefit)·장애생활보조금(Disability Living Allowance)·고용 지원보조금(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주거보조금(Housing Benefit) 등⁸⁶⁾
-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에서 일정 한도(2021/22년 기준 투자액 2만파운드)내 운용되는 투자소득
- 특정예금증서(authorized savings certificates)에서 발생한 이자·특정 벤처 캐피탈신탁(venture capital trust)로부터의 배당금
- 특정 연금수령액(certain annual payments)
- 산립소득
- 상해배상금·사망 보험금·국세환급금 이자·장학금·기타 사회보장금

86) 영국 국세청, "Benefits", <https://www.gov.uk/browse/benefits>, 검색일자: 2022. 7. 29.

- 일정 한도(2021/22년 기준 8,500파운드) 내의 성직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8천파운드(2021/22년 기준) 내의 근무지이전지원 수당, 5천파운드(2021/22년 기준) 내의 무상 또는 저리의 종업원 대여금에 따른 이득은 근로소득 비과세함
- 3만파운드(2021/22년 기준) 옵션가치 이하의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비과세함
-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적격 퇴직금 중 3만파운드(2021/22년 기준)까지는 비과세함
- 자가거주 주택에서 일부를 임대해 주었을 때 연 7,500파운드(2021/22년 기준)까지는 비과세함

나) 순소득(net income)의 산출

- 총소득이 산출되면 각 소득종류별로 대응되는 공제, 즉 특정비용공제(deductions and reliefs)⁸⁷⁾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산출함
- 특정비용공제란 주로 납세자가 특정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들 중 소득세법에서 개별적으로 비용공제를 허용한 항목들을 의미함
 - 특정비용공제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투자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과 관련한 이자비용
 - 등록연금(registered pension schemes) 보험료는 관련 소득 범위 내에서 100% 공제됨
 - 절세연금저축(tax-relieved annual pension savings) 보험료는 관련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되나 연 한도(2021/22년 기준 4만파운드)가 있으며, 면세연금펀드 불입액에 대해서는 평생 한도(2021/22년 기준 1,073,100파운드)가 설정되어 있음
 - 자선단체 기부금은 한도 없이 공제됨

⁸⁷⁾ sections 23 and 25 of ITA

-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 발생액으로 최소 매주 6파운드(2021/22년 기준)가 공제됨

다) 과세표준(tax base)의 산출

- 순소득이 산정되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allowance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인적공제⁸⁸⁾에는 기본인적공제(basic personal allowance)와 시각장애인공제 (blind person's allowance), 결혼공제(marriage allowance)가 있음
 - 기본인적공제는 동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2021/22년 기준 12,570파운드임
 - 만일 순소득이 10만파운드(단일소득임계점, single income limit)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부분 2파운드당 1파운드씩 동 공제액을 삭감하며, 결국 총소득 125,140파운드를 넘어서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인적공제액은 소멸함
 - 시각장애인공제는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적용 가능하며, 2021/22년 기준 2,520파운드임
 - 만일 소득 부족 등으로 미사용액이 발생하면 동거 배우자에게 미사용액 이전이 가능함
 - 결혼공제는 부부 모두 1935년 4월 6일 이후 출생자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느 한 배우자의 기본인적공제액의 미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인적공제의 10%를 한도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임
 - 2021/22년 기준 공제 한도액은 1,260파운드임
- '기타 소득공제(other allowable deductions)'로서 개인저축공제(personal savings allowance)가 있음

88) section 33 et seq. of ITA

- 기본세율 또는 고세율 적용 대상자의 저축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2021/22년 기준 저세율 적용자에게는 1천파운드, 고세율 적용자에게는 500파운드를 한도로 해당금액을 공제함

라) 세액의 산출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법정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
 - 다만,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타 종합소득과 연계하여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함
 - 다음의 저축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최대 5천파운드까지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
 - 은행 이자,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 이자, 국공채 이자, 적격 단위 신탁 (authorized unit trust) 예치금 이자 등
- 2021/2022 과세연도 기준 종합소득에 대한 영국⁸⁹⁾의 소득세율은 20~45%이고 과세표준이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구조임
 - 기본세율(basic rate) 20%, 고세율(higher rate) 40%, 추가 고세율(additional rate) 4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임
 - 단 배당소득과 저축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함
 - 배당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중 가장 상위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놓여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2021/22년 기준 각각 7.5%, 32.5%, 38.1%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저축소득 중 5천파운드까지는 세율 0%를 적용하나 만일 저축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여타 종합소득(소득공제 차감 후)이 5천파운드를 초과한다면 면세 기준점(5천파운드)은 비례적으로 하향됨⁹⁰⁾

89) 여기서 제시된 영국의 소득세율 체계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며, 스코틀랜드는 별도의 세율체계를 지니고 있는 바 여기서는 논외로 함

90) 영국 국세청, "Tax on savings interest", <https://www.gov.uk/apply-tax-free-interest-on-savings>, 검색일자: 2022. 7. 29.

-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축소득에 대해서는 전체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 다음의 상위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적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됨⁹¹⁾

〈표 IV-9〉 영국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2021/2022년 기준)

(단위: 파운드(GBP))

과세표준	소득세율
0~37,700	20%
37,701~150,000	40%
150,001~	45%

자료: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uk_s_001.html 1.10. rates, 검색일자: 2022. 7. 28.

마) 결정세액의 산출

- 산출세액이 산정되면 각종 세액공제(tax credits)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개인적 여건을 반영한 세액공제로는 결혼커플세액공제(credit for married couples and civil partners)가 있음
 - 결혼커플세액공제는 결혼하고 동거 중인 커플 중 최소 한 사람이 1935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일 때 적용되며, 커플 중 어느 일방 또는 반반씩 공제받을 수 있음⁹²⁾
 - 소득 규모(임계점 30,400파운드)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며 2021/22년 기준 공제액은 최소 353파운드, 최대 912.5파운드임
 - 미사용액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 여타 소득세액에서 공제가능한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91) 영국 세금정보사이트, "What tax rates apply to me?", <https://www.litrg.org.uk/tax-guides/tax-basics/what-tax-rates-apply-me#toc-what-tax-rates-apply-to-my-savings-income->, 검색일자: 2022. 7. 29.

92)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married-couples-allowance>, 검색일자: 2022. 7. 30.

- 배당세액공제는 2021/22년 기준 2천파운드로서 일률적으로 적용함
 - 그로스업 방식(imputation)의 배당 이중과세조정 방식은 2016/17년에 폐지됨
 - 생계유지비용 세액공제(qualifying maintenance payments credit)는 법원 명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혼·별거 후 예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생계유지비에 대해 지급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임
 - 배우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1935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여야 함
 - 소규모 기업, 신사업 진출 기업, 벤처기업 투자 등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액 공제를 두고 있음
 - 기업투자기구(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세액공제
 - 스타트업투자기구(Seed enterprise investment) 세액공제
 - 벤처캐피탈신탁(capital trust) 세액공제
 - 사회적 기업 투자세액공제(Social investment tax relief)
- 근로장려와 관계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구간별로 기본요소, 결혼요소, 한부모요소, 근무시간요소, 장애요소, 자녀양육요소 등에 의해 공제액이 결정됨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무소득 포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의 수, 나이,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급대상자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공제액이 결정됨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OECD에서 발표한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함

○ 지난 20년간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0.2~8.8%의 분포를 보임

[그림 IV-4] 영국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자료: OECD, "Inflation (CPI)",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2022. 9. 13.

2) 운용방식

가) 개요

- 영국은 1977년부터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세율 구간 및 공제금액 등의 실질적인 효과 및 가치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시행함⁹³⁾
 - 이러한 물가연동 규정은 「재정법(FA 1977)」 제22절에서 규정하였음
 - 영국의 도입 당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8%임

93) 성명재·박상원(2008), p. 89.

- 물가연동에 의한 구체적인 항목들의 변경은 매년 예산안 심사에 따라 제·개정되는 재정법에 따라, 소득세법에 규정하거나, 또는 위임된 명령(시행령, Statutory instruments) 형식으로 발표됨⁹⁴⁾
 -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ITA 97)」 제21조 ‘세율 적용의 과세표준 구간’, 제57조 ‘각종 공제’와 관련된 물가연동 규정을 예로 들 수 있음

- 물가연동을 하는 목적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다수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보다 높은 세율로 이동하는 ‘재정적 견인(fiscal drag)’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임⁹⁵⁾
 - ‘재정적 견인’이란 세수 초과로 인하여 경제 성장에 미치는 억제 효과를 말함

나) 물가연동 적용 범위

- 영국에서는 각종 비과세, 특별비용공제, 소득공제, 적용세율의 과세표준 구간, 세액공제 등의 항목에서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⁹⁶⁾, 구체적인 예는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음
 - 다만 모든 항목이 물가연동되지는 않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물가연동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함
 - 대표적으로 자녀보조금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소득 임계점(50,000파운드), 기본 인적공제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일소득 임계점(100,000파운드),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150,000파운드) 등은 물가연동되지 않고 있음

94) 성명재·박상원(2008), p. 89.

95) 영국 세무정보사이트, “Income tax explained”, <https://ifs.org.uk/taxlab/taxes-explained/income-tax-explained>, 검색일자: 2022. 8. 25.

96) ITA 2007, section 21, section 57 등

〈표 IV-10〉 영국의 항목별 물가연동 적용 여부

세액산출별 단계	물가연동하는 항목	물가연동하지 않는 항목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보조금·장애생활보조금·고용 지원보조금·주거보조금·출산휴가 수당 등 비과세되는 각종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보조금 감소 임계점 • 개인저축계좌 연 불입 한도 • 일정 저축소득 비과세 한도 • 성직자 비과세 급여 한도 • 근무지 이전수당 한도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종업원 대여금 한도 • 비과세되는 적격 스톡옵션 가액 한도 • 비과세되는 비자발적 퇴직금 한도
특별비용공제·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연금펀드 종신 불입액 한도 • 기본인적공제 • 시각장애인공제 • 결혼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세연금저축 보험료 한도 • 재택근무비용공제 한도 • 개인저축공제 한도 • 기본인적공제 감액 임계점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세율 적용 시작점(기본세율 적용 한도) • 저축소득에 대한 면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고세율(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커플세액공제(감액 소득 임계점 포함) • 근로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세액공제

자료: 본문 내용 및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를 참조함

□ 한편 영국의 2015/16년~2021/22년 물가연동에 의한 주요 항목별 금액을 요약하면 아래 〈표 IV-11〉과 같음

○ 매년 물가연동을 기본으로 하지만 「재정법」에 따라 항목별로 일시적으로 동결하기도 하였음

〈표 IV-11〉 영국의 물가연동에 의한 주요 항목별 추이(2015/16년~2021/22년)

(단위: 파운드)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기본인적공제	10,600	11,000	11,500	11,850	12,500	12,500	12,570
시각장애인공제	2,290	2,290	2,320	2,390	2,450	2,500	2,520
고세율 적용 시작점	31,785	32,000	33,500	34,500	37,500	37,500	37,700
결혼커플세액공제 (최대치)	835.5	835.5	844.5	869.5	891.5	907.5	912.5

자료: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검색일자: 2022. 8. 25.

다) 조정 주기 및 물가연동지수

- 영국은 과세연도 개시 전 당해연도 9월 물가지수가 전년 9월 대비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해 자동적으로 물가연동함⁹⁷⁾
 - 전년도 12개월 동안의 물가 수준을 9월에 측정하여 과세표준, 각종 공제액 등의 주요 물가연동 항목에 산출한 물가연동률을 곱하여 조정함
- 그러나 매년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물가연동 여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물가연동 적용 여부 및 확정적인 연동 물가 상승률 등은 매년 제정되는 「재정법 (FA)」에 의거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개정이 이루어짐
- 물가연동을 위한 지수로는 통계청(Statistics Board)에서 공표하는 모든 항목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사용함⁹⁸⁾
 - CPI는 월 단위로 공표되며, 2021/22년 CPI 상승률은 1.7%였음

97) ITA 2007, section 21(1)

98) ITA 2007, section 21(6)

라) 주요 변천 과정 및 최근 논의 동향

- 영국의 물가연동제는 1977년 처음 시행 시, 매년 자동적으로 물가에 연동시키도록 하였으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 전부를 자동 연동시키지는 않았음⁹⁹⁾
 - 영국의 물가연동제를 ‘불완전 물가연동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음

- 물가연동지수는 최초 소매가격지수(Retail Price Index: RPI)의 상승률에 연동되는 지수를 사용하였으나, 2015년 4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s Index: CPI)를 이용해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¹⁰⁰⁾
 - 2015년 이전 소매가격지수에 의한 연동은 ‘Rooker-Wise Amendment’로 불림
 - CPI는 가계 단위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음¹⁰¹⁾

- 한편 최근 2021년 「재정법」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2025/26년까지 물가연동을 제한하기로 하는 조치를 담은¹⁰²⁾
 - 기본인적공제와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불입 한도 소득기준 등에 대해 2025/26년까지 동결함
 - 시각장애인공제, 결혼커플공제 등은 물가연동을 유지함
 - 별다른 입법이 없는 한 2026/27년부터는 다시 CPI에 의한 물가연동이 예정됨

99) 전승훈(2007), p. 20.

100) 영국 국세청,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index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personal-allowance-indexation/income-tax-personal-allowance-indexation>, 검색일자: 2022. 8. 25.

101) 영국 통계청, “Consumer price inflation”,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2015-04-14>, 검색일자: 2022. 8. 25.

102)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personal-allowance-and-the-basic-rate-limit-from-6-april-2022-to-5-april-2026/income-tax-personal-allowance-and-the-basic-rate-limit-from-6-april-2022-to-5-april-2026>, 검색일자: 2022. 8. 25.

- 2021년의 물가연동 일부 항목 제한 조치는 공공 재정의 안전성 및 공공 서비스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제공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며, 이로 인한 예상 세수 증대 효과는 <표 IV-12>와 같음¹⁰³⁾

<표 IV-12> 영국의 2021년 물가연동 제한 조치에 따른 예상 세수증대 효과

(단위: 백만 파운드)

2022/23년	2023/24년	2024/25년	2025/26년
1,555	3,655	5,790	8,180

자료: 영국 국세청,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and the basic rate limit from 6 April 2022 to 5 April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personal-allowance-and-the-basic-rate-limit-from-6-april-2022-to-5-april-2026/income-tax-personal-allowance-and-the-basic-rate-limit-from-6-april-2022-to-5-april-2026>, 검색일자: 2022. 8. 25.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용이나 소득 불공평도 등 경제적 문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¹⁰⁴⁾¹⁰⁵⁾
- 개인 입장에서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은 불가피함

103)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personal-allowance-and-the-basic-rate-limit-from-6-april-2022-to-5-april-2026/income-tax-personal-allowance-and-the-basic-rate-limit-from-6-april-2022-to-5-april-2026>, 검색일자: 2022. 8. 25.

104) 영국 세금정보사이트, “Income tax explained”, <https://ifs.org.uk/taxlab/taxes-explained/income-tax-explained>, 검색일자: 2022. 8. 25.

105) 영국 뉴스사이트, “Britain to freeze personal tax thresholds until 2026”, <https://www.reuters.com/world/uk/britain-freeze-personal-tax-thresholds-until-2026-2021-03-03/>, 검색일자: 2022. 8. 25.

4. 프랑스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1) 개요¹⁰⁶⁾

- (소득세 법령체계) 프랑스 세법은 단일법전 체계로 소득세를 비롯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액 중 실체법에 관한 사항은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에서 규정하고 있음¹⁰⁷⁾
 - (납세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 및 법인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이며, 이들은 다시 프랑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함
 - (과세 범위) 프랑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전 세계 소득을 대상으로 함
 - (과세 단위) 소득세 과세 단위는 개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대신 가족계수(Le quotient familial)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수를 고려해서 가구소득에 대하여 부과함
 -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나 부담하는 소득세는 속한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산출함

- 프랑스의 과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역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 신고는 가족 단위로 하여 주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당국에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5월경에 자진신고하여야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Pay-as-you-earn(PAYE)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소득세는 고용주 또는 납세자가 지정한 비율로 매월 원천징수됨

- (지방소득세) 프랑스에서는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없음¹⁰⁸⁾

1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 - 제1권 -』, 2019, pp. 339~401.을 참조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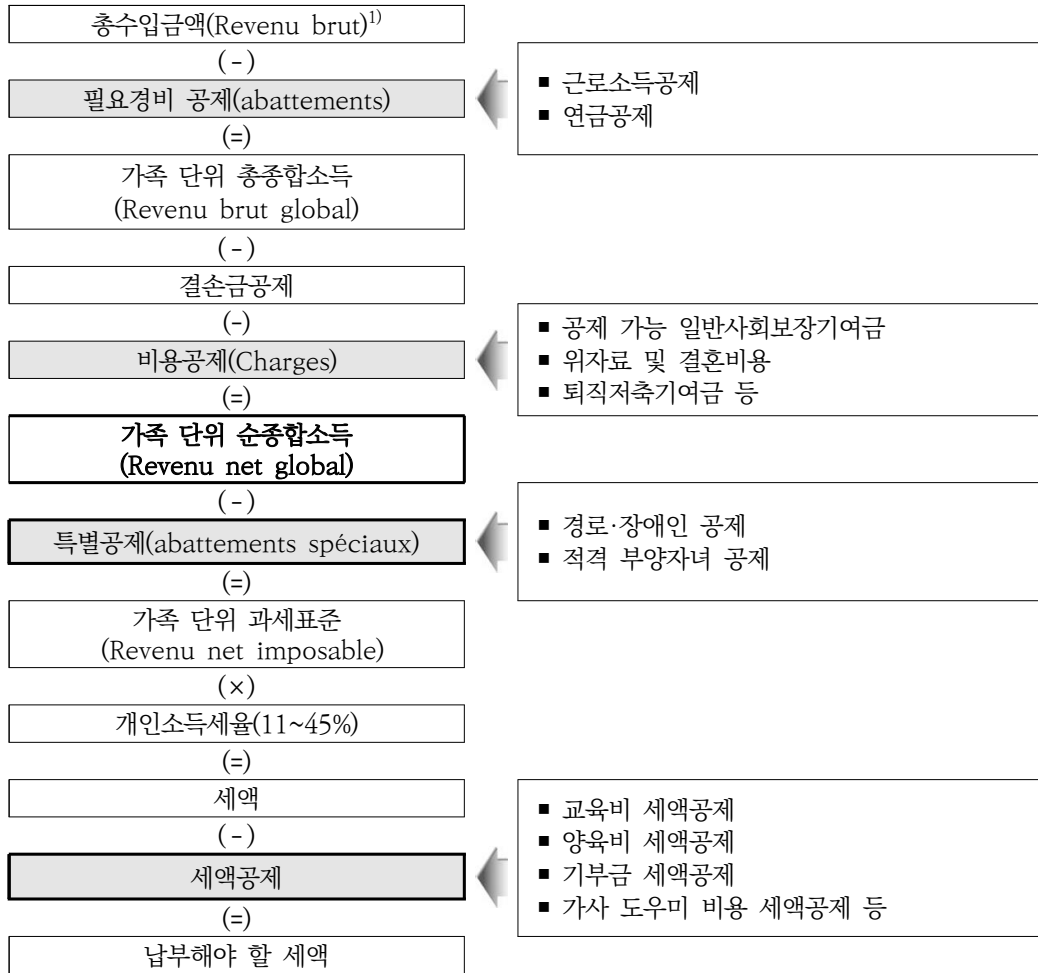
107) 참고로, 신고와 납부, 세무조사 등 절차적인 내용은 조사절차법(LPF)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108) PWC,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france/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2. 8. 31.

2) 세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 <표 IV-13>에서는 제시한 프랑스의 소득세액 결정 단계별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¹⁰⁹⁾

<표 IV-13>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 1) 비과세소득 제외

자료: 프랑스 소득세 신고서(Formulaire 2042: Déclaration de revenu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09) 프랑스 경제·재정부, “Revenu brut global, revenu net imposable,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quelles différences?”,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revenu-imposable-revenu-fiscal-reference#>, 검색일자: 2022. 9. 10.

가) 총소득(Revenu brut global)의 산출

-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프랑스는 과세대상 소득을 다음의 8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합산과세 체계로 운용하고 있음
 - 산업 또는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triels ou commerciaux)
 - 비상업소득(bénéfices non commerciaux)
 - 농업소득(bénéfices agricoles)
 - 자본소득(revenus de capitaus mobiliers)
 - 근로소득(Traitements, Salaires), 연금소득(restes viagères), 퇴직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revenus fonciers)
 - 특정 법인 이사의 보수
 - 양도소득(plus value)

- (비과세 소득) 프랑스는 현행 「조세일반법」 체계에서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 과세대상 8가지 소득을 규정하면서 해당 소득의 범주에 드는 소득 중 일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¹¹⁰⁾
 - 비과세소득(exonérés)은 26세 미만의 학생 근로자 급여 등이 있음
 - 26세 미만의 학생이 받는 임금은 4,690유로(2021년 과세연도, 최저임금 기준¹¹¹⁾ 까지 소득세가 면제됨
 - 견습생이 받는 급여(2021년 과세연도 18,760유로 한도)
 - 초과근무(Heures supplémentaires ou complémentaires exonérées) 수당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연간 7,500유로)¹¹²⁾
 -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 양도가액이 15,000유로 이하인 경우

1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제1권-』, 2019, pp. 366~367.

111) 최저임금의 3배 이내(limite de 3 fois le montant du SMIC)

112)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81 quater

-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별 총수입금액(revenu brut)에서 각 소득에 대응되는 비용(charges)을 공제하여 소득별 순소득 산출하며, 해당 비용에는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공제 등이 있음¹¹³⁾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 또는 개산공제(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¹¹⁴⁾
 -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 관련 기여금을 차감한 근로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함
 - 2021 과세연도 기준 최소 448유로, 최대 12,829유로를 한도로 함¹¹⁵⁾
 - 실제 지출한 경비로는 교통비, 식대 등이 있음
 - 근로자는 실제 지출한 식대(Frais de repas)에 대해 1일 5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물가에 연동됨
- (연금공제) 연금 및 종신 주택연금 수령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가족 단위당 최소 383유로, 최대 3,752유로의 범위 안에서 공제함

나) 순종합소득(Revenu net global)의 산출

- 소득유형별 과세체계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개인별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가족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유형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사회보장기여금 및 공제비용을 차감하여 순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함
- (결손금 공제) 각 개인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가족 단위의 소득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함

113) pwc, "Individual - Deductions", <https://taxsummaries.pwc.com/france/individual/deductions>, 검색일자: 2022. 8. 31.

114) article 83(3) of the CGI

115) IBFD, "1.8.2. Allowan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fr_s_1.2.3.%23ita_fr_s_1.8.2., 검색일자: 2022. 9. 8.

- 직전연도에 발생한 가족 단위 구성원의 결혼금은 동일한 성격의 소득 및 당해연도 다른 구성원의 소득과 상계함
- (비용공제) 총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¹¹⁶⁾은 자산 및 투자소득에 대한 일부 일반사회보장기여금(CGS), 위자료 및 결혼비용 기여금,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주거비, 특정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이 있음¹¹⁷⁾, ¹¹⁸⁾
 - 일반 사회보장기여금(CSG)¹¹⁹⁾의 부분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¹²⁰⁾
 - (위자료 공제, Enfants majeurs célibataires)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성인 자녀가 부모의 가족 과세단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42유로(자녀가 결혼한 경우 12,084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¹²¹⁾
 - (퇴직저축 기여금) 퇴직저축 기여금(Cotisations d'épargne retraite)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기타 특별공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대상으로 1인당 2022년 기준 3,592유로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¹²²⁾
 - 다만, 수령인의 소득이 1인 기준으로 10,881.75유로(부부 16,893.94유로)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116) 소득별 순소득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은 해당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등을 말하고, 순종합소득 산출 시 적용되는 비용은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비용을 말함

117) 프랑스 국세청, "IR - Base d'imposition - Charges déductibles du revenu brut global - Conditions générales de déductibilité",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49-PGP.html/identifiant=BOI-IR-BASE-20-10-20130701>, 검색일자: 2022. 8. 29.

118) 프랑스 국세청, "Déductibilité des autres charges", <https://bofip.impots.gouv.fr/bofip/1872-PGP.html/identifiant=BOI-IR-BASE-20-60-20190301>, 검색일자: 2022. 8. 27.

119) 누진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일반 사회공헌금은 납부 연도의 전체 과세소득에서 일부 공제(최대 6.8%)받을 수 있음

120)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CSG는 해당 소득에서 직접 공제됨

121) article 196 B of the CGI

122) article 156 (II) (2° ter) of the CGI

다) 과세표준(Revenu net imposable)의 산출¹²³⁾

- 결손금 및 특별비용에 대한 공제를 차감한 후 순종합소득이 산정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제(abattements spéciaux)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순소득인 과세표준(Revenu net imposable)을 산출함
-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¹²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적공제는 매우 제한적인 바, 대표적으로 경로·장애인 소득공제가 있음
 - (저소득층 정액공제) 경로·장애인 소득공제란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기준 1인당 최대 2,484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음^{125), 126), 127)}
 - 경로·장애 인적소득공제는 순종합소득(revenue net global)의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순종합소득이 25,0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됨
 - 15,560유로 미만인 경우 공제액: 2,484유로¹²⁸⁾
 - 15,560~25,040유로인 경우 공제액: 1,242유로
 - 순종합소득(revenu global net)이 25,040유로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 없음
- 기타 특별공제로는 적격 부양자녀¹²⁹⁾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가 있음
 - 2021년 기준 공제액은 6,042유로로 설정되어 있음¹³⁰⁾

123) 프랑스 정부, “Impôt sur le revenu - Calcul de l’impôt”, <https://www.demarches.interieur.gouv.fr/particuliers/impot-revenu-calcul-impot>, 검색일자: 2022. 8. 31.

124) 가족계수제도는 1945년 12월 31일 도입된 기존 부양자녀 수에 따른 공제제도를 대체한 것임

125) article 156 (II) (2° ter) of the CGI

126) 프랑스 국세청, “Abattements spéciaux”, <https://bofip.impots.gouv.fr/bofip/2036-PGP.html/identifiant%3DBOI-IR-BASE-40-20210330>, 검색일자: 2022. 9. 8.

127) article 157 bis du CGI

128) 프랑스 세무정보사이트, “Guide to French Income Tax”, <https://www.french-property.com/guides/france/finance-taxation/taxation/calcul-taxe-liabilite/allowances/>, 검색일자: 2022. 9. 8.

129)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있거나 없는 기혼자녀가 21세 미만(학생인 경우 25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130) article 196B of the CGI

라) 세액의 산출

- (산출세액 계산 방식)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 단위는 가족 단위이므로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이월결손금 및 비용을 공제한 후 산출한 과세대상 순소득(Revenu net imposable)을 가족 수(parts)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part당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가족 수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함
- 가족 단위별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part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음¹³¹⁾
 -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단위에 0.5단위를 가산함¹³²⁾
 - 부양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장애인, 21세 미만 또는 학업 중인 25세 미만의 성인 자녀와 같이 납세자의 과세 단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함
- 2022년 기준 프랑스 가족 단위별 가족계수(parts)는 <표 IV-14>와 같음

<표 IV-14> 프랑스의 가족 단위별 가족계수(parts)(2022년)

부양가족 수	부부합산 신고 ¹⁾	단독 신고
0명	2	1
1명	2.5	1.5
2명	3	2
3명	4	3
4명	5	4
추가 자녀당	1	1

주: 1.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0.5단위를 가산함

1) PACS 포함

2)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포함

자료: 프랑스 정부, 「Quotient familial et 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 검색일자: 2022. 7. 7.

131) CGI §193

132) 이 외에도 74세 이상의 재향군인(ancien combattant)인 경우가 해당됨

- (세율)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0~45%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누진세율 체계이며, 2011년 이후로 25만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과세소득에 대해 3~4%p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추가 부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의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함
 - 과세소득이 25만유로 초과 50만유로 이하(부부의 경우 50만유로 초과 100만유로 이하)의 경우 3%, 500,000유로(부부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분에 대하여 4%를 적용함

〈표 IV-15〉 프랑스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2022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10,225	0
10,226~26,070	11
26,071~74,545	30
74,546~160,336	41
160,337~	45

주: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의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바, 과세소득이 25만 유로 초과 50만유로 이하(부부의 경우 50만유로 초과 100만유로 이하)의 경우 3%, 500,000유로 (부부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분에 대하여 4%를 적용함

자료: 프랑스 재무부, "Comment calculer votre impôt d'après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 2022?",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tranches-imposition-impot-revenu>, 검색일자: 2022. 5. 24.

-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방식) 프랑스는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0%의 단일세율(Prélèvement Forfaitaire Unique, PFU)¹³³⁾을 적용하나 납세자가 다른 유형의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¹³⁴⁾

133)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12.8%와 사회보장기여금 17.2%를 합한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134) IBFD, "1.2.4. Capital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pi_fr_s_1.2.4.%23epi_fr_s_1.2.4., 검색일자: 2022. 6. 2.

- (한도) 다만, 가족계수는 자녀가 많은 기혼자 부부에게 특히 세금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의 한도(Plafonnement des effets du quotient familia)를 두어 이를 보완하고 있음
- 한편,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추가 감면을 허용하는 특별 한도를 두고 있음
 - 장애인인 경우 2022년 기준 1,587유로의 추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표 IV-16〉 프랑스의 가족 단위 part당 소득세 면제 한도(2022년)

부양가족 수	part 수	소득세 면제 한도
0	1	-
1	1.5	1,592유로
2	2	3,184유로
3	3	4,776유로
4	4	6,368유로
추가 자녀당	1	1,592유로

주: 자녀를 공동양육할 권리가 있는 경우 각 부모에 대해 한도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자녀당 796유로가 됨
 자료: 프랑스 정부, “Impôt sur le revenu - Quotient familial d’une personne en concubin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088>, 검색일자: 2022. 8. 8.

- (예) 2022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음
 - 3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를 예로 들어, 부부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대상 소득이 80,000유로라고 가정한 경우, 가족계수는 4이므로 $80,000/4 = 20,000$ 임
 - 산출세액은 $10,225 \times 0\% + (20,000 - 10,225) \times 11\% = 1,075.25$ 유로
 - 납부세액은 $4 \times 1,075.25 = 4,301$ 유로임
 - 부양자녀로 인한 가족계수 2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 부부는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어 가족계수 한도 적용 전 세액은 다음과 같음
 - $(80,000/2) = 40,000$
 - $[10,225 \times 0\% + (26,070 - 10,225) \times 11\% + (40,000 - 26,070) \times 30\%] \times 2 = 11,843.90$ 유로

- 그러나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면제 한도인 4,776유로를 적용하여 $11,843.90 - 4,776 = 7,069.9$ 유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됨

마) 결정세액의 산출^{135), 136)}

- 프랑스는 가족 단위 과세방식으로 산출세액이 산정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 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본인 또는 가족 단위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한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가족 관련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재택 고용서비스, 개인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¹³⁷⁾
 - 가족 관련 세액공제는 양육비 세액공제, 중등 이상 교육을 수행하는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세액공제, 위자료 세액공제가 있음
 - 이 외에도 주 거주지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주택 세액공제, 가사도우미 세액공제, 고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장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¹³⁸⁾ 등이 있음
 - 프랑스는 환급형과 비환급형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음¹³⁹⁾
 - 환급형 세액공제는 양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 등이 있음
 - 비환급형 세액공제는 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이하에서 자세하게 후술하기로 함
- (항목별 공제)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교육비와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 의료비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이유로 하여 일반적으로 적용을 배제함

135) 프랑스 경제·재정부, “Particuliers: les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auxquels vous pouvez prétendre”,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financement-aides-credits-impot>, 검색일자: 2022. 8. 31.

136) pwc, “Individual - Other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s://taxsummaries.pwc.com/france/individual/other-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2. 8. 31.

137) 프랑스 국세청, “JE DÉCLARE MES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je-declare-mes-reductions-et-credits-dimpot>, 검색일자: 2022. 9. 15.

138) article 200 quater A du CGI

139)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Déduction, réduction d’impôt, crédit d’impôt: quelles différence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23>, 검색일자: 2022. 8. 31.

- 교육비 세액공제(Frais de scolarité des enfants (réduction))는 자녀의 중등 교육 또는 대학 교육에 대하여 정액의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를 최대 183유로 적용받을 수 있음¹⁴⁰⁾
 - 이 외에도 학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¹⁴¹⁾ 등이 있음
- 양육비 세액공제(Frais de garde d'enfant hors du domicile(credit d'impôt))는 실제로 발생한 적격 지출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1인당 한도는 2,300유로임^{142), 143)}
 - 즉, 최대 세액공제액은 아동 1인당 1,150유로임¹⁴⁴⁾
- 기부금 세액공제(Dons réduction d'impôt)는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함¹⁴⁵⁾
 - 세액공제율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66% 또는 75%를 적용함
 - 빈민구호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7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데, 75%의 공제율은 2021년과 2022년 최대 1천유로를 한도(limite)로 함¹⁴⁶⁾
- 일반적으로 건강, 생명 또는 연금보험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다만, 유족 또는 장애 저축보험료(Primes de rente survie ou épargne handica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¹⁴⁷⁾

140) article 199 quater F of the CGI

141) article 200 terdecies of the CGI

142) 프랑스 국세청, "Crédit d'impôt en faveur des dépenses de frais de garde des jeunes enfants", <https://bofip.impots.gouv.fr/bofip/865-PGP.html/identifiant=BOI-IR-RICI-300-20140425>, 검색일자: 2022. 9. 12.

143)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Impôt sur le revenu - Frais de garde d'enfant hors du domicile (crédit d'impô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 검색일자: 2022. 8. 31.

144) article 200 quater B CGI

145) 프랑스 국세청, "IR -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accordés au titre des dons faits par les particuliers", <https://bofip.impots.gouv.fr/bofip/5823-PGP.html/identifiant=BOI-IR-RICI-250-20120912>, 검색일자: 2022. 9. 15.

146) article 200(1ter) of the CGI

147) 프랑스 국세청, "La réduction d'impôt rente-survie ou épargne handicap", <https://impots.dispofi.fr/reduction-impot-assurance-vie>, 검색일자: 2022. 8. 31.

- (세액공제의 통합한도)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총 1만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148), 149)}
 - 통합한도 적용대상 공제는 보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음^{150), 151)}
 - 다만,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 또는 역사적 기념물 관련 세제 지원, 비과세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통합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 (저소득자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제도)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저소득자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Prime Pour l'Emploi, PPE)를 2016 과세연도부터 폐지함
 - PPE는 2009년 6월에 도입한 사회복지제도인 RSA(Active Solidarity Income)로 흡수되어 재정 지원 방식인 Prime d'activité(PA)로 변경되었음
 - 프랑스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¹⁵²⁾
 -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CAF)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함

-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총소득에 대한 세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액을 감면(décote)함¹⁵³⁾

148) IBFD, "1.8.3.19. Overall tax reduction limit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fr_s_1.10.1.2.&refresh=1662968559673%23ita_fr_s_1.8.3.18., 검색일자: 2022. 9. 13.

149)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En quoi consiste le plafonnement global des niches fiscales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179>, 검색일자: 2022. 9. 16.

150) article 200-0A of the CGI

151) 프랑스 국세청, <https://bofip.impots.gouv.fr/bofip/6526-PGP.html/identifiant=BOI-IR-LIQ-20-20-10-10-20190531>, 검색일자: 2022. 9. 12.

152)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p.133.

153) 프랑스 경제·재정부, "Pouvez-vous bénéficier de la décote de l'impôt sur le revenu ?",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decote-impot-revenu>, 검색일자: 2022. 8. 27.

- 가족계수의 적용에 대한 한도 적용 후 세액감면·공제를 고려하기 전에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조정함
 - 세액감면 기준은 2021년 기준 단독 1,745유로, 부부합산 2,888유로 미만인 경우임
 - 2022년 감면세액은 단독 790유로(부부합산 1,307유로)에서 총소득에 대한 세액의 45.25% 차감한 금액임
- (소액부징수)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이 61유로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음¹⁵⁴⁾

바) 최저한세

- 당초 비거주자에 한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5년 12월 17일 법률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제도를 폐지하였음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 물가 상승률 추이

- OECD에서 발표한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08% 증가함
- 지난 20년간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은 -0.72~6.08%의 분포를 보임

154) Article 1657 of the CGI

[그림 IV-5] 프랑스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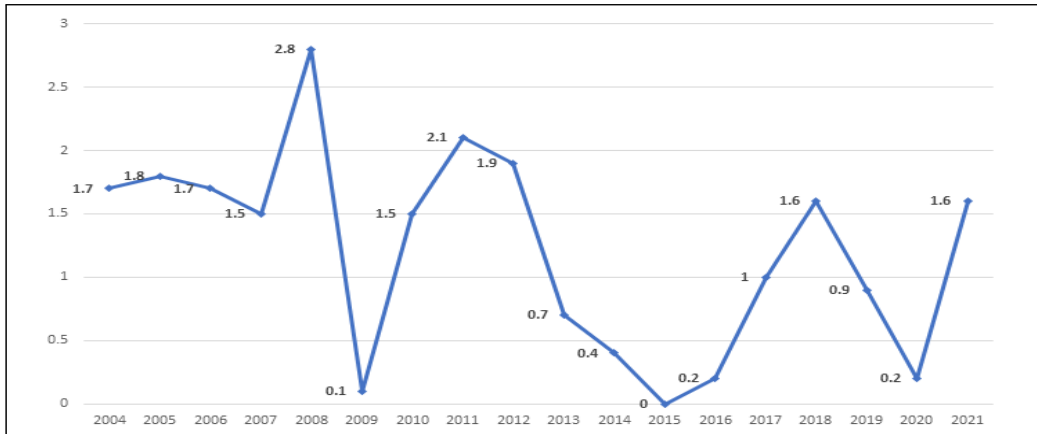
주: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자료: OECD, "Inflation (CPI)",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검색일자: 2022. 9. 13.

□ [그림 IV-6]에서는 프랑스의 지난 20년간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1년 1.6%를 기록하였음

[그림 IV-6] 프랑스의 지난 20년간 담배를 제외한 연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dices des prix à la consommation",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series/102342213?PRIX_CONSO=2409098, 검색일자: 2022. 8. 8.

2) 운용방식¹⁵⁵⁾

가) 개요

- 프랑스의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1969년 도입되었으며, 「재정법(Projet de loi de finances)」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도입 목적은 급여, 임금 및 대체소득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프랑스의 도입 당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임
 - 2022년 「재정법(loi de finances)」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1.4% 조정하였음¹⁵⁶⁾

-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실시된 1969년 이후로 2012년과 2013년에 적용된 물가연동에 대한 ‘동결’을 제외하고 법률에서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한도 등의 항목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고 있음
 - 변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함

나) 물가연동 적용 범위

- 프랑스에서는 과세표준 세율 구간뿐 아니라 각종 공제액 및 공제한도 등의 항목에서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소득세 물가연동 항목은 과세표준 세율 구간(0~45%), 가족계수와 관련된 한도 규정,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 <표 IV-17>에서는 물가연동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구간 변천 과정을 정리함

155)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l'équilibre financier”, <https://www.senat.fr/rap/l21-163-21/l21-163-212.html#toc7>, 검색일자: 2022. 7. 8.

156) 프랑스 법령정보시스템, “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4637653, 검색일자: 2022. 8. 29.

〈표 IV-17〉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변천 과정

(단위: 유로, %)

		과세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물가연동률		0.1	0.1	1.0	1.6	1.0	0.2	1.4
세율 구간	14% ¹⁾	9,700~ 26,791	9,710~ 26,818	9,807~ 27,086	9,964~ 27,519	10,064~ 27,794	10,084~ 25,710	10,225~ 26,070
	30%	26,791 ~ 71,826	26,818 ~ 71,898	27,086 ~ 72,817	27,519 ~ 73,779	27,794 ~ 74,517	25,710 ~ 73,516	26,071~7 4,545
	41%	71,826 ~ 152,108	71,898 ~ 152,260	72,817 ~ 153,783	73,779 ~ 156,244	74,517 ~ 157,806	73,516 ~ 158,122	74,546~1 60,336
	45%	> 152,108	> 152,260	> 153,783	> 156,244	> 157,806	> 158,122	> 160,336

주: 1) 2021년 11%

자료: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l'équilibre financier", <https://www.senat.fr/rap/l21-163-21/l21-163-212.html#toc7>, 검색일자: 2022. 5. 10.

□ 가족계수와 관련된 한도에 대하여는 〈표 IV-16〉에 정리한 바와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시 이용한 동일한 물가연동율을 적용하여 매년 연동하고 있음

〈표 IV-18〉 프랑스의 가족계수 관련 한도의 물가지수 연동 변천 과정

(단위: 유로)

구분	관련 조문	과세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물가연동률	-	0.1	1.0	1.6	1.0	0.2	1.4
가족지수의 각 0.5 part 한도	「CGI」 제197조	1,512	1,527	1,551	1,567	1,570	1,592
독립자녀의 첫 번째 부양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가족계수 전액 한도	「CGI」 제197조	3,566	3,602	3,660	3,697	3,704	3,756
부양가족이 없고 25세 이상 자녀를 5년 이상 양육한 독신, 이혼 또는 사별한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추가 0.5 part 한도, 별도로 과세됨	「CGI」 제197조	903	912	927	936	938	951

〈표 IV-18〉의 계속

(단위: 유로)

구분	관련 조문	과세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대군인, 장애인 또는 26세 미만 성인 자녀의 부모이며 별도로 과세되는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추가 0.5 part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감면	CGI 제197조	1,508	1,523	1,547	1,562	1,565	1,587
부양자녀가 있는 사별한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	CGI 제197조	1,684	1,701	1,728	1,745	1,748	1,772
21세 미만(기혼 또는 가족과 함께) 또는 25세 미만의 학업 중인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CGI 제 196의 B조	5,738	5,795	5,888	5,947	5,959	6,042

자료: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l'équilibre financier", <https://www.senat.fr/rap/l21-163-21/l21-163-212.html#toc7>, 검색일자: 2022. 7. 8.

- 한편, 1981년에 도입된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도 매년 물가지수에 연동하고 있음
 -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décote)은 모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전 총세액에 적용됨¹⁵⁷⁾
 - 〈표 IV-19〉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décote) 계산방식 변천 과정을 정리함

157) 프랑스 경제·재정부, 「Pouvez-vous bénéficier de la décote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decote-impot-revenu#>, 검색일자: 2022. 7. 8.

〈표 IV-19〉 프랑스의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방식 변천 과정

(단위: 유로)

소득세	독신, 미망인 또는 이혼한 납세자 (단독과세)	공동 과세대상 부부 (부부 공동과세)
2015	$I = IB - (1,135 - IB)$	$I = IB - (1,870 - IB)$
2016	$I = IB - (1,165 - \frac{3}{4} IB)$	$I = IB - (1,920 - \frac{3}{4} IB)$
2017	$I = IB - (1,165 - \frac{3}{4} IB)$	$I = IB - (1,920 - \frac{3}{4} IB)$
2018	$I = IB - (1,177 - \frac{3}{4} IB)$	$I = IB - (1,939 - \frac{3}{4} IB)$
2019	$I = IB - (1,196 - \frac{3}{4} IB)$	$I = IB - (1,970 - \frac{3}{4} IB)$
2020	$I = IB - (1,208 - \frac{3}{4} IB)$	$I = IB - (1,990 - \frac{3}{4} IB)$
2021	$I = IB - (779 - 0.4525 \times IB)$	$I = IB - (1,289 - 0.4525 \times IB)$
2022	$I = IB - (790 - 0.4525 \times IB)$	$I = IB - (1,307 - 0.4525 \times IB)$

주: I = 감면 적용 후 납부해야 할 세액, IB = 감면 전 총액에 해당하는 세액
 자료: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l'équilibre financier", <https://www.senat.fr/rap/121-163-21/121-163-212.html#toc7>, 검색일자: 2022. 7. 8.

- 〈표 IV-18〉에서는 과세표준 세율 구간 및 저소득자 세액감면, 가족계수와 관련된 한도 이외의 물가연동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 교육비 세액공제, 양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과 세액공제의 통합한도, 소액 부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물가에 연동하지 않고 있음

〈표 IV-20〉 프랑스의 소득세 주요 물가연동 항목(2022년 기준)

세액산출 단계	물가연동 항목	물가 미연동 항목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습생 비과세 한도 • 26세 미만의 학생이 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 비과세 한도
특별비용공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 공제 한도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공제 등 • 경로·장애인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자료공제 • 퇴직저축 기여금

〈표 IV-20〉의 계속

세액산출 단계		물가연동 항목	물가 미연동 항목
세율		• 전체 과세표준 구간	-
세액공제	환급형	-	• 학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
	비환급형	• 기부금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양육비 세액공제 •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장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기타		• 가족계수에 따른 감면 한도 •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의 통합한도 • 소액부징수

자료: 본문 내용 및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l'équilibre financier (article liminaire et première partie de la loi de finances)」, [https:// www.senat.fr/rap/l20-138-21/l20-138-212.html](https://www.senat.fr/rap/l20-138-21/l20-138-212.html), 검색일자: 2022. 7. 8.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조정 주기 및 물가연동지수

- 프랑스의 물가연동률은 직직전연도 대비 직전 연도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설정함
- 2022년 물가연동률은 2020년 대비 2021년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설정되었음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각종 공제액 등의 주요 물가연동 항목에 물가연동률을 곱하여 매년 조정함

$$\text{물가연동률} = \frac{\text{직전연도 12개월 소비자물가지수 평균}}{\text{직직전연도 12개월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 1$$

라) 주요 변천 과정 및 최근 논의 동향¹⁵⁸⁾

- 소득세 세율 구간에 대한 담배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의 연동은 1969년 이후로 크게 중단없이 적용되었음
 - 이전에는 물가에 연동되지 않은 비교적 오랜 기간(1952~1958년, 1961~1963년)이 있었음
 - 1966년에는 세금 감면을 통하여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을 대체하였음
 - 물가연동(indexation)은 1969년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었으나 초창기에는 과세표준 세율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음
 - 도입 초기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동 시 저소득 납세자의 세부담을 더 크게 낮추기 위해 처음 4개의 세율 구간을 인플레이션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일부 소득 구간을 제한하기 위해 마지막 5개의 세율 구간은 인플레이션 수준 이하로 조정하였음
 - 1981년 이후부터는 모든 세율 구간에 대하여 차등 없이 연동하는(indexation indifférenciée) 원칙이 확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Hollande) 대통령은 유럽 재정 위기의 해결을 위한 긴축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 개혁을 단행하였는 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을 폐지하여 2012년과 2013년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이 중단되었음

- 2014년 브래킷 크리프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재시행됨
 - 2014년 「재정법」은 납세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0.8% 재조정하여 물가에 다시 연동하기 시작함

158) 프랑스 의안정보시스템, 「Revalorisation de la décote et des seuils d'exonération et des abattements en matière de fiscalité directe locale au bénéfice des ménages modestes」, <https://www.assemblee-nationale.fr/14/rapports/r0251-tII.asp>, 검색일자: 2022. 8. 3.

5. 캐나다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159), 160)}

1) 개요

- 캐나다에서 연방소득세를 규율하는 법체계로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85; ITA)」, 「소득세법 시행령(Income Tax Regulations)」, 역사적 주석들(Historical footnotes), 「소득세법 시행규칙(Income Tax Application Rules)」 등이 있음¹⁶¹⁾
 - 「소득세법」은 「헌법(the Constitution Act, 1982)」을 상위법으로 하여 연방하원 의회에서 조세법률로서 제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개별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소득세법」의 일반 목적 및 규정들을 구현함
 - 「소득세법 시행령」은 법의 일부이지만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서 행정명령(Order-in-Council)만으로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음
 - 역사적 주석들은 조항들의 적용시점, 경과 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the Income Tax Application Rules, 1971’의 조문을 의미하며, 현행 「소득세법」 체계 및 자본소득 과세체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조치들에 대하여 규정함
- 캐나다의 거주자(Resident)는 각 원천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소득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에는 캐나다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연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59) IBFD, Country Tax Guide- Canada,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5 Jul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gthb/html/gthb_ca_s_001.html, 검색일자: 2022. 8. 9.) 및 김재진·박수진·이형민, 『주요국의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세제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p. 54~66.과 이준봉,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2013, pp. 29~144.를 참조함

160) 연방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 외에 연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주(provinces)정부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고 연방소득세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161) 이준봉(2013), pp. 13~14.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 판단은 캐나다 내의 체류기간(183일 기준), 거주지 존부, 사회·경제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됨¹⁶²⁾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직무(office), 고용관계(employment), 사업(business), 자산(property) 등에서 발생한 원천별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 자산소득에는 임대료, 이자, 로열티, 배당 등이 있음
 -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s)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다만 순자본이득의 50%만을 과세소득으로 함
- 연방소득세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지움
 - 배우자나 가족 등과의 합산과세는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고소득자의 고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가족들에게 분할하는 행위 (splitting income)를 방지하는 규정을 둠
 - 파트너십의 경우 소득 계산만 파트너십 단계에서 수행될 뿐 결국 파트너십의 개인별 지분만큼 개인별 소득으로 귀착됨
- 연방소득세 과세연도는 1역년이며,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임¹⁶³⁾

2) 세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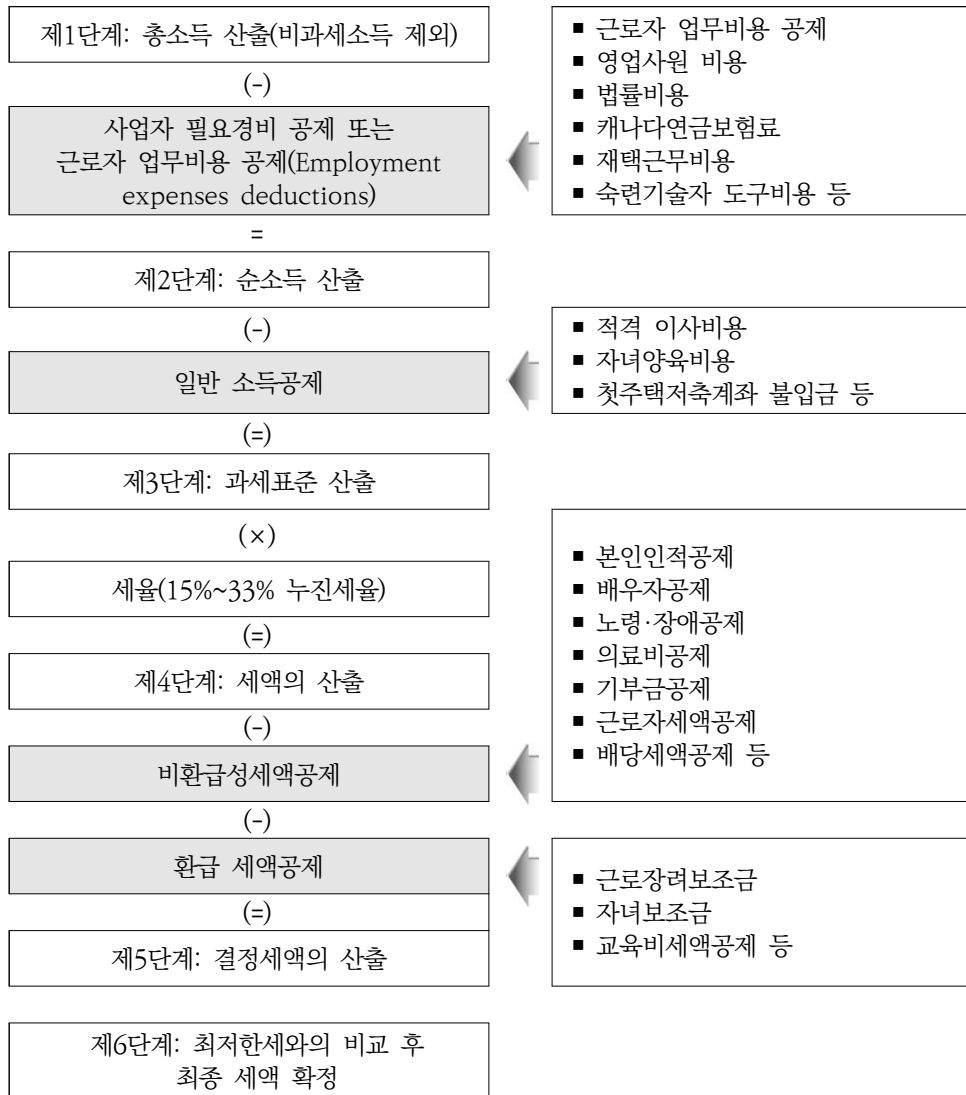
-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6단계 과정을 거침
 - 제1단계: 유형별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출함
 - 제2단계: 총소득에서 유형별 소득에 대응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산출함
 - 제3단계: 순소득에서 각종 일반 소득공제(other deductions)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함

162) ITA s. 250

163) ITA s. 150(1)

- 제4단계: 과세표준에서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 제5단계: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tax credits)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제6단계: 최저한세(minimum tax)와의 비교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함

〈표 IV-21〉 캐나다의 연방소득세 결정 단계별 흐름



자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이하에서 소득세 결정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봄

가) 총소득(total income)의 산출

□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원천별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출함

○ 총소득은 직무(office), 고용관계(employment), 사업(business), 자산(property) 등의 원천별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계산함

- 개인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도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함
- 근로자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대상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의 사망 또는 해당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이연 한도: 연 10만캐나다달러)¹⁶⁴⁾

□ 한편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소득신고도 필요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근로자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주 거주지 주택 양도차익
- 자본이득 중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 주식의 처분 및 적격 농장·어장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2022년 비과세한도: 913,630캐나다달러)
- 상해 보상금,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
- 비과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로부터의 실현 소득(연 불입액 한도는 6천캐나다달러임)
-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첫주택저축계좌(first-home savings account) 인출로 인한 소득

164) ITA s. 110

나) 순소득(net income)의 산출

- 총소득이 산출되면 소득유형별로 대응되는 공제를 차감하여 순소득을 산출함
 - 예를 들어, 사업 관련 발생 필요경비를 사업수입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업무 비용을 총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말함
 - 영업사원의 비용, 출장경비, 회비, 법률비용, 등록연금플랜에 대한 불입금,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 보험료, 고용보험료, 재택근무비용(일 한도 2캐나다 달러/연 한도 500캐나다달러) 등이 근로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숙련기술자의 도구 구입비용 공제(Tradesperson's tools deduction)는 2022년 기준 1,287캐나다달러까지 가능함
 - 등록퇴직저축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보험료는 2022년 기준 29,21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공제함
 - 투자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이자비용도 공제 가능함

다) 과세표준(taxable income)의 산출

- 순소득이 산정되면 일반 소득공제(other deductions)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일반 소득공제란 개별 소득에는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담세력이나 조세특례의 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소득공제를 말함
- 일반 소득공제¹⁶⁵⁾에는 적격 이사비용(eligible moving expenses) 공제, 자녀양육비(child care expense) 공제, 장애인지원(disability support) 공제 등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격 이사비용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근로 제공, 사업 영위, 고등교육과정 학생의 학업목적으로 최소 40km 이상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을 때 관련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함

165) ITA dIV. b SUBSECTION e, dIV. c

-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자녀가 있을 때, 근로나 사업활동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자녀양육 비용에 대해 일정 범위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함
 - 2022년 기준 공제한도는 7세 미만 자녀 1인당 8천캐나다달러(7~18세 자녀는 5천 캐나다달러)임
 - 양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적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배우자에게 공제함
- 장애인지원 소득공제는 장애인인 납세자가 근로 제공, 사업 영위, 학업수행 시 지출한 보조 장비나 지출비용에 대하여 한도 없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함
- 첫주택저축계좌(first-home savings account) 관련 불입금은 2022년 기준 연 8천 캐나다달러, 평생 4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공제해 줌

라) 세액의 산출

-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누진세 체계의 법정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방소득세액을 산출함
 - 연방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최소 15%에서 최대 33%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임¹⁶⁶⁾
 - 다만 각 주(provinces)에서도 연방소득세 산출 목적상 도출된 과세소득에 일정률을 곱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고세율은 44.5% (누나부트)에서 54.8%(뉴펀들랜드)까지 오르게 됨

〈표 IV-22〉 캐나다의 연방소득세 세율체계(2022년 기준)

(단위: 캐나다 달러, %)

과세표준	연방소득세율
0~50,197	15
50,198~100,392	20.5
100,393~155,625	26
155,626~221,708	29
221,709~	33

자료: IBFD, "Tax Rate",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gthb/html/gthb_ca_s_001.html
1.10. rates, 검색일자: 2022. 8. 9.

166) ITA s. 117

마) 결정세액의 산출

- 산출세액이 산정되면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s)와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s)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함
 - 세액공제에는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조세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됨
 -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기본금액(based amount)에 대해 15%의 단일공제율(연방 소득세율의 가장 낮은 한계세율 수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구조를 근간으로 함

- 비환급성 세액공제란 당해연도 소득세 계산 시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자세한 사항은 <표 IV-21> 참조)
 - 납세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세액공제(본인 기본세액공제, 배우자 세액공제, 장애 세액공제, 가족 요양인 세액공제, 경로자세액공제 등)
 - 본인 기본세액공제는 결혼 유무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160캐나다달러, 최소 1,908캐나다달러임
 - 배우자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2,160캐나다달러이며,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액공제액이 점점 줄어들며, 소득이 14,398캐나다달러가 초과되면 세액공제액은 0임
 - 경로자세액공제는 경로자의 소득이 39,826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1,185캐나다달러이며,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액공제액이 점점 줄어들며, 소득이 92,479캐나다달러가 초과되면 세액공제액은 0임
 - 기부금, 의료비 등 특별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기부액의 200캐나다달러까지는 15%, 2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29%(단, 최고소득세율 적용자는 33% 가능)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적격 기부금 지출액은 순소득의 75%를 한도로 함
 -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격 의료지출 비용 중 2,479캐나다달러(2022년 기준)와 순소득의 3%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공제해 줌
 - 근로자의 업무 관련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근로자세액공제(employment amount tax credit)¹⁶⁷⁾

167) ITA s. 118(10)

- 근로소득금액에 15%의 단일공제율이 적용되며, 단 근로소득금액은 2022년 기준 1,287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함
- 연금소득세액공제
 - 적격 연금소득(2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함)의 15%를 세액공제 허용함
- 배당세액공제
 - 내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소득금액 계산상 가산한 배당가산액(gross-up)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배당 법인의 유형과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있음

〈표 IV-23〉 캐나다의 연방소득세법상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및 최대세액공제 한도액(2022년 기준)

(단위: 캐나다달러, %)

구 분	기본금액(①)	최대세액공제 한도액 (① × 15%)
인적기본(Basic)	14,398	2,160
배우자(Spouse) 등		
경로자(연령 65세 이상)	7,898	1,185
장애(Disability)	기본	1,331
	18세 미만 추가	776
가족요양인(Caregiver)	2,350	353
연금소득	연금소득과 2,000 캐나다달러 중 적은 금액	300
입양	최대 17,131	2,570
캐나다 근로자	1,287	193
기부금	순소득의 75%를 한도로 함	
의료비	2,479캐나다 달러와 순소득의 3%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 연방소득세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캐나다 세금정보사이트, "2022 Non-Refundable Personal Tax Credits - Tax Amounts",
<https://www.taxtips.ca/nrccredits/tax-credits-2022-tax.htm>, 검색일자: 2022. 8. 9.

□ 환급성 세액공제란 당해연도 소득세 계산 시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근로장려보조금(Canada Workers Benefit)
 - 노동력이 있는 19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며, 결혼·자녀 유무에 따라 소득 기준점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결정됨 (2022년 기준 무자녀 독신의 경우 소득은 32,244캐나다달러 이하여야 하고 최대 1,395캐나다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녀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부양할 자녀 수,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비과세 보조금이 매월 지급되며, 가계소득이 2022년 기준 32,797캐나다달러를 초과할 경우 비례적으로 혜택이 감소함
- 교육비 세액공제(Canadian Training Tax Credit)
 - 2022년 소득 기준 151,978캐나다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매년 250캐나다달러 (65세 이전 평생 5,000캐나다달러)가 부여될 수 있으며, 적격 교육비용 지출액의 50%를 해당 지원액의 사용액으로 봄
- 환급성 의료비 지원 세액공제(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 저소득(2022년 가계 기준 29,129캐나다달러 이하) 개인에게 의료비나 장애 지원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의 25%만큼 환급됨(한도: 2022년 기준 1,316캐나다달러)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가별, 소득유형별로 공제한도를 설정함

바) 최저한세와의 비교

□ 납세자의 조세 혜택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고소득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함¹⁶⁸⁾

168) ITA s. 127.5~127.55

- 특정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신고·적용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임대자산(rental properties) 등에 적용되는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
 - 감모상각, 탐사비용, 개발비용 또는 캐나다의 석유 및 가스 관련 비용 등의 공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 재산(resource property)으로부터의 손실(losses)
 - 주식매수선택권(security options) 관련 소득공제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 배당세액공제
- 납세자는 최저한세와 일반 소득세액(regular net tax payable)을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¹⁶⁹⁾
- 최저한세는 특정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전의 과세표준(Adjusted Taxable Income)에서 기본공제 4만캐나다달러를 차감한 후, 해당 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정함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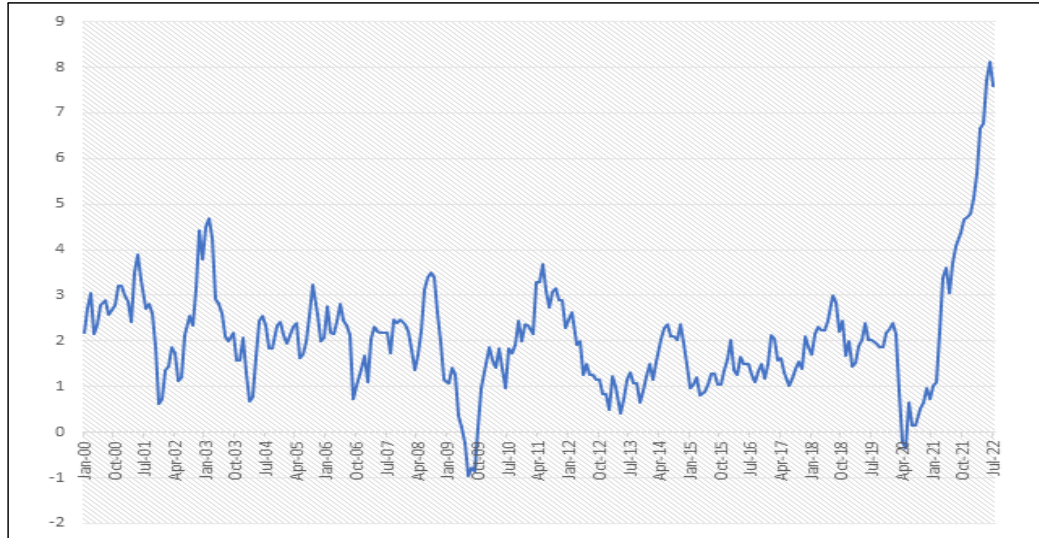
1) 물가 상승률 추이

- OECD에서 발표한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59% 증가함
- 지난 20년간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0.95~8.13%의 분포를 보임

169) 캐나다 정부, “Minimum tax”,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minimum-tax.html>, 검색일자: 2019. 5. 30.

[그림 IV-7] 캐나다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자료: OECD, "Inflation (CPI)",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검색일자: 2022. 7. 13.

2) 운용방식

가) 개요

- 캐나다는 당해연도의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 각종 항목을 물가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85)」 제117.1조에서 법제화 함
 - 직전연도 항목 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당해연도의 항목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임
 - 캐나다의 도입 당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5%임

- 1974년부터 물가연동 세제를 시행한 이래로, 2000년부터 5개년 세금감면계획(the Government's Five-Year Tax Reduction Plan)에 의해 본격적으로 물가연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¹⁷⁰⁾

170) 전승훈(2007), p. 18.

- 다만 물가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의 재량적인 조세정책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매년 ‘소득세의 물가연동(Indexation Adjustment for Personal Income Tax System)’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물가연동 내용을 공시하고 있음

나) 물가연동 적용 범위

- 캐나다는 세율 적용의 과세표준 구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제액 및 공제한도 등의 항목에서 광범위하게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는 아래 <표 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음
- 다만 일부 비과세 한도, 비용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최저한세 기본공제액 등에서 물가연동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함

<표 IV-24> 캐나다의 항목별 물가연동 적용 여부

세액산출별 단계	물가연동하는 항목	물가연동하지 않는 항목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PC 주식 처분 및 적격 농·어장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 비과세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톡옵션 행사이의 과세이연 한도 • 비과세저축계좌 불입 한도
비용공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퇴직저축플랜 보험료 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기술자의 도구 구입비용 공제 한도 • 재택근무비용 공제 한도 •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한도 • 첫주택저축계좌 불입 소득공제 한도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
비환급성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액공제, 배우자세액공제, 장애 세액공제, 가족요양인세액공제, 경로자 우대세액공제 등 • 입양비용 세액공제 한도 •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점 • 근로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연금소득 세액공제 한도

〈표 IV-24〉의 계속

세액산출별 단계	물가연동하는 항목	물가연동하지 않는 항목
환급성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보조금 • 자녀보조금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점 • 환급성 의료비 지원 세액공제 한도 	-
기타	-	• 최저한세 산출을 위한 기본공제액

자료: 본문 내용 및 캐나다 국세청, “Indexation adjustment for personal income tax and benefit amount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adjustment-personal-income-tax-benefit-amounts.html>, 검색일자: 2022. 8. 22.을 참조하여 작성함

□ 참고로 2019~2022년 4개 연도의 물가연동된 적용 세율별 과세표준 구간과 주요 비 환급성 세액공제 항목별 현황을 나타내면 아래 〈표 IV-25〉, 〈표 IV-26〉과 같음

〈표 IV-25〉 캐나다의 적용 세율의 과세표준 구간 변동(2019~2022년)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5% 세율 적용 시작점	47,630	48,535	49,020	50,197
26% 세율 적용 시작점	95,259	97,069	98,040	100,392
29% 세율 적용 시작점	147,667	150,473	151,978	155,625
33% 세율 적용 시작점	210,371	214,368	216,511	221,708

자료: 캐나다 국세청, “Indexation adjustment for personal income tax and benefit amount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adjustment-personal-income-tax-benefit-amounts.html>, 검색일자: 2022. 8. 22.

〈표 IV-26〉 캐나다의 주요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변동(2019~2022년)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적: 기본금액	12,069	13,229	13,808	14,398
경로우대: 기본금액	7,494	7,637	7,713	7,898
장애: 기본금액	8,416	8,576	8,662	8,870
가족요양인: 기본금액	2,230	2,273	2,295	2,350
입양: 기본금액(최대)	16,255	16,563	16,729	17,131
캐나다 근로자: 기본금액	1,222	1,245	1,257	1,287
의료비 지출액 한도	2,352	2,397	2,421	2,479

자료: 캐나다 국세청, "Indexation adjustment for personal income tax and benefit amount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adjustment-personal-income-tax-benefit-amounts.html>, 검색일자: 2022. 8. 22.

다) 조정주기 및 물가연동지수¹⁷¹⁾

□ 소득세 물가연동을 위한 조정주기는 과세 연도(1역년)별로 시행함¹⁷²⁾

○ 다만 항목에 따라 적용 기준점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나누어지며,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의 조정된 연동률이 적용됨¹⁷³⁾

-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의 예로는 세율 구간(tax bracket thresholds), 각종 개인공제(personal amounts),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있음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의 예로는 자녀보조금, 장애아동보조금 등이 있음

171) ITA s. 117.1 (1), (4)

172) 캐나다 의회, "Personal Income Taxes in Canada: Revenue, Rates and Rationale", <https://hillnotes.ca/2021/10/18/personal-income-taxes-in-canada-revenue-rates-and-rationale-2/>, 검색일자: 2022. 8. 22.

173) 캐나다 국세청, "Indexation adjustment for personal income tax and benefit amount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adjustment-personal-income-tax-benefit-amounts.html>, 검색일자: 2022. 8. 22.

- 연동지수는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2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평균값을 사용함
 -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의해 공표된 캐나다 전체의 CPI를 근간으로 함
 - CPI는 2년마다 바스켓을 변경함¹⁷⁴⁾
 - CPI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함
- 당해연도에 적용할 물가연동률은 CPI의 변화 비율로 정의되며, '전년도 9월 30일 기준 CPI / 전전년도 9월 30일 기준 CPI'가 됨
 - 실제 연도별 물가연동률은 2019년 2.2%, 2020년 1.9%, 2021년 1.0%, 2022년 2.4%였음¹⁷⁵⁾
- 전년도 해당 항목에 이 조정률을 곱한 후 정책적 판단에 의한 조정액을 추가하여 당해 연도 항목 금액을 산출하며 1캐나다달러 미만에서 반올림함
 - 정책적 조정액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안에서 발표함

라) 주요 변천 과정 및 최근 논의 동향

- 소득세 누진세 체계에서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한 재정의 숨은 이익(hidden revenues)을 제거하기 위하여 1973년 물가연동 세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재정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시킴¹⁷⁶⁾
 - 1970년대 초반 당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플레이션률은 5% 수준이었고, 세수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174) 캐나다 통계청, "Exploring the first century of Canada's Consumer Price Index", <https://www150.statcan.gc.ca/n1/pub/62-604-x/62-604-x2015001-eng.htm>, 검색일자: 2022. 8. 22.

175) 캐나다 국세청, "Indexation adjustment for personal income tax and benefit amount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adjustment-personal-income-tax-benefit-amounts.html>, 검색일자: 2022. 8. 22.

176) 뉴욕타임즈, "WHAT INDEXING INCOME TAXES PRODUCED FOR CANADA", <https://www.nytimes.com/1981/08/23/business/what-indexing-income-taxes-produced-for-canada.html>, 검색일자: 2022. 8. 22.

- 과세표준 구간 및 각종 공제액을 물가연동시킴으로써 개인으로서는 혜택을 얻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도입 이후 오일 쇼크 등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게 되었음
 - 1974~1980년 사이 7년 동안은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950캐나다달러에서 3,432캐나다달러로 261% 증가함
 - 막대한 재정 적자로 물가연동 폐지를 고려하였으나 폐지할 경우, 당장의 재정 적자 축소는 가능하나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키고 복지수요를 증대시켜 재정수지를 도리어 악화시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함
- 1986년 멀로니(Mulroney) 총리는 국가부채를 완화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소득세제 일부 항목에 대해 물가연동 요소를 제거하였음¹⁷⁷⁾
-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률이 3%를 초과할 때만 물가연동하기로 하는 규정을 제정함
 -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세부담은 증가하였으며, 오타와시를 기준으로 1986년 한 해 약 14억캐나다달러의 세수 증대를 추산함
- 캐나다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으로 실질적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100%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크레티앵(Chretien) 총리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소득세의 완전한 물가연동 조치(full indexation)를 발효함¹⁷⁸⁾
- 즉 인플레이션률이 3% 이상일 경우에만 개인소득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도록 한 1986년의 규정을 폐기하였음
- 캐나다 연방소득세의 완전한 물가연동 시스템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큰 논란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일부 주(province)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지방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이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음^{179), 180)}

177)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Canadians should watch out for opaque tax hikes",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canadians-should-watch-out-for-opaque-tax-hikes>, 검색일자: 2022. 8. 22.

178) 성명재·박상원(2008), p. 93.

- 2021년 캐나다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자녀보조금 등 현행의 물가연동되는 항목에 대해 취약계층에 있어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다만 2019~2020년 앨버타 주의 케니(Kenney)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물가연동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한 바 있음

6. 그 외 국가

가. 독일

1) 물가연동하는 항목 및 연동방식, 연동 주기

- 독일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정치적인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근거 법령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등의 세율 구간을 재량적으로 조정해오고 있음¹⁸¹⁾
- kalte Progression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 기능의 모든 왜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용어로, 누진세율 세율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말함

179) The Globe and Mail, "On inflation indexing, Chrystia Freeland is ahead of her time", <https://www.theglobeandmail.com/investing/personal-finance/taxes/article-on-inflation-indexing-chrystia-freeland-is-ahead-of-her-time>, 검색일자: 2022. 8. 23./

180)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Canadians should watch out for opaque tax hikes",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canadians-should-watch-out-for-opaque-tax-hikes>, 검색일자: 2022. 8. 22.

181) Dorn, Florian et al. (2017): How Bracket Creep Creates Hidden Tax Increases: Evidence from Germany, ifo DICE Report, ISSN 2511-7823, ifo Institut -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München, München, Vol. 15, Iss. 4, pp. 34-39.

-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세의 kalte Progression을 추정하는 보고서(Progression Report)를 제출하고 있음
 - 소득세의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델(Mikrosimulationsmodell)¹⁸²⁾을 사용하여 추정함
 - 계산을 위한 가정은 모든 납세자가 다음 연도에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이 증가한다고 전제함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조세 입법자인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하원(Bundesrat)에서는 Progression Report를 기반으로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음
- 독일의 종합소득세율은 2022년 기준 면세점인 10,347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최소 14%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현재 독일의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소득세법(EStG)」 제32a조¹⁸³⁾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과세표준 구간은 10,347유로의 기본공제 구간, 10,348유로에서 14,926유로까지는 경과 구간, 14,927유로에서 58,596유로까지는 선형누진적 구간, 58,597유로부터 277,825유로까지는 높은 비례세율 구간, 277,826유로부터는 부유세 구간으로 나누어짐¹⁸⁴⁾
 - 세 번째 구간은 소득세율(각 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우리나라처럼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고안되었음(각 구간의 세율을 방정식으로 규정)
 - 마지막 구간은 부유세로, 2007년부터 45%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182) 소득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은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에서 연방 재무부와 연구 협업의 일환으로 개발하였으며, 수년간 소득세 분야에서 개정 사항에 따른 재정적 영향 정량화를 위해 사용되어 왔음

183) 독일 「소득세법(EStG)」 §32a

184) 국제청, 『독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2,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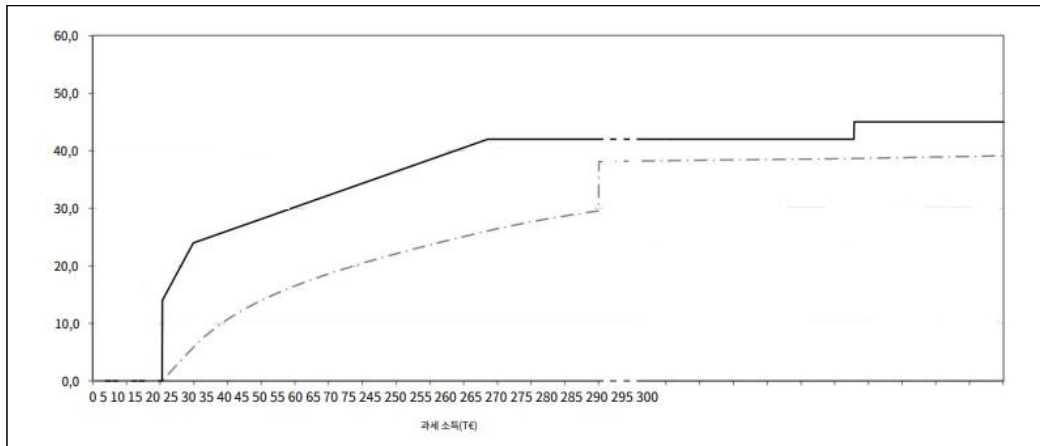
〈표 IV-27〉 독일의 종합소득세율(2022년 기준)

(단위: 유로, %)

소득구간		세율
1구간(기본공제, Grundfreibetrag)	10,347 이하	0
2구간	10,348 ~ 14,926	14 ~ 23.97
3구간	14,927 ~ 58,596	23.97 ~ 42
4구간	58,597 ~ 277,825	42
5구간(부유세, Reichensteuer)	277,826 이상	45

주: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기본공제는 10,347유로의 2배(20,694유로)를 적용함
 자료: 독일 「소득세법」 제32a조; Bloomberg Tax, “Country Guides, Germany, 6. Personal Tax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591347240>. 검색일자: 2022. 8. 26.

〔그림 IV-8〕 독일의 2022년 소득세율 체계



자료: 독일 재무부, 「BMF Amtliches Einkommensteuer-Handbuch」, <https://esth.bundesfinanzministerium.de/esth/2021/home.html>, 검색일자: 2022. 8. 11.

- 독일 소득세율 변천 과정은 〈표 IV-28〉에서 정리하였음
 - 2007년에 고소득층에 대한 45%의 부유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음
 - 2008년 이후의 소득세율 체계는 0~45%의 세율로 유지되고 있음
 - 2009년 이전에는 세율 구간에 대한 조정 없이 세율을 인하하였음

- 2009년 이후로 기본공제 금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음
 -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으로 이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구간을 말함
- 2016년 이후로는 기본공제 및 최고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세표준 구간(세율 구간)이 매년 조정되고 있음

〈표 IV-28〉 독일의 소득세율 변천 과정

(단위: 유로, %)

기간	기본공제 (Grundfreibetrag)	최저세율 (Eingangssteuersatz)	최고세율 구간 (부유세)	최고세율 (Spitzensteuersatz)	과세표준 구간의 수
2004	7,664	16	52,152	42	4
2005-2006	7,664	15	52,152	42	4
2007-2008	7,664	15	52,152 (250,001)	42 45	5
2009	7,834	14	52,552 (250,401)	42 45	5
2010-2012	8,004	14	52,882 (250,731)	42 45	5
2013	8,130	14	52,882 (250,731)	42 45	5
2014	8,354	14	52,882 (250,731)	42 45	5
2015	8,472	14	52,882 (250,731)	42 45	5
2016	8,652	14	53,666 (254,447)	42 45	5
2017	8,820	14	54,058 (256,304)	42 45	5
2018	9,000	14	54,950 (260,533)	42 45	5
2019	9,168	14	55,961 (265,327)	42 45	5
2020	9,408	14	57,052 (270,501)	42 45	5
2021	9,744	14	57,919 a(274,613)	42 45	5
2022	10,347	14	58,597 (277,826)	42 45	5

자료: 독일 재무부, 「Tarifformeln im Überblick」,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atensammlung-zur-steuerpolitik-2022.pdf](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atensammlung-zur-steuerpolitik-2022.pdf?__blob=publicationFile&v=2)
?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2. 8. 26.

2) 주요 변천 과정 및 최근 논의 동향

- 독일 정부는 2년마다 kalte Progression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음¹⁸⁵⁾
 - 2012년 3월 29일 의회는 kalte Progression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로 인한 영향을 정기적으로 연방 하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 2022년 상반기에 「소득세법(EStG)」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들을 위해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함
 - 2022년의 경우 원래 9,984유로로 예정되어 있었던 기본공제 금액을 10,347유로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조정하였음¹⁸⁶⁾
 - 부부합산 과세하는 경우에는 2배인 20,694유로임
 - 근로소득공제(Werbungskostenpauschale) 금액을 기존 1,000유로에서 1,200유로로 인상함
 - 21km 이상 원거리 통근자에 대한 통근수당공제((Pauschale für Fernpendler) 금액을 0.35센트에서 0.38센트로 인상함

- 2022년 8월 독일 재무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개인소득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질의응답자료(FAQ) 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⁸⁷⁾
 - 기본공제의 인상을 예정대로 2023년 10,632유로, 2024년 10,932유로로 시행함
 - 아동 소득공제(child tax allowance) 및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함

185) Dorn, Florian et al. (2017), pp. 34-39.

186) 2022년 5월 27일 「조세감면법(Steuerentlastungs - gesetz)」

187) 독일 정부, “Fragen und Antworten zum Ausgleich der kalten Progressio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FAQ/kalte-progression.html>, 검색일자: 2022. 8. 1.

- 특히, kalte Progression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되, 277,826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조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함
 - 주로 증산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고소득자는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임
- 동 조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나. 뉴질랜드

1) 불가연동하는 항목 및 연동방식, 연동 주기

- 2022년 현재 뉴질랜드는 환급성 세액공제로서 가족근로지원 세액공제(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중 가족지원 세액공제(Family tax credit)와 신생아 세액공제(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하여 불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음¹⁸⁸⁾¹⁸⁹⁾
 - 불가연동에 관한 내용은 관련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¹⁹⁰⁾
 - 가족근로지원 세액공제는 2007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는데,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패키지로써 다음 4가지 항목의 혜택으로 구성됨
 - ① 가족지원 세액공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구소득이 월 3,558뉴질랜드달러(2022년 기준)를 초과하면 혜택이 점차 감액됨
 - ② 신생아 세액공제: 태어난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매주 65뉴질랜드달러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이 95,133뉴질랜드달러(2022년 기준) 이하 이면 3살 때까지 추가로 일정 금액이 지급됨

188) PKF Goldsmith Fox, "Tax Facts -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https://www.pkfgf.co.nz/publications/tax-facts/tax-facts-working-for-families-tax-credits/>, 검색일자: 2022. 8. 30.

189) 뉴질랜드 국세청, "Types of Working for Families payments", <https://www.ird.govt.nz/working-for-families/payment-types>, 검색일자: 2022. 8. 30.

190) Income Tax Act MF 7 (1)(a)(db), (2)

- ③ 근로세액공제(In-work tax credit): 최소 요구조건인 노동(자영업 포함)시간을 충족할 경우 연간소득, 자녀 수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급됨
- ④ 최소가구소득 세액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 매주 최소 요구 근로 시간을 충족하고 세후 가구소득이 32,864뉴질랜드달러(2022년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됨

□ 가족지원 세액공제 및 신생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를 기준으로 동 물가지수의 누적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이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물가를 연동시키는 시점을 CPI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용상 명목금액 인상폭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결정하고 있으므로 자동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5% 규칙을 적용하면서도 규칙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연동을 실시하는 시점을 정하되, 방법이나 정도는 그 시기에 결정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¹⁹¹⁾
- 2008년 이후 가족지원 세액공제의 적용 예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연성을 보임
 - (2008년 10월 1일) CPI의 누적 증가분이 5.22%로 예상되어 가족지원 세액공제 감액기준점을 연 35,914뉴질랜드달러에서 36,827뉴질랜드달러로 인상함¹⁹²⁾
 - (2012년 4월 1일) CPI는 5%를 넘었으나 16세 이상 자녀에 대한 가족지원세액 공제는 동결하고 16세 이하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¹⁹³⁾
 - (2018년 7월 1일) 16~18세 사이 둘째 자녀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령별 가족지원 세액공제액을 인상함¹⁹⁴⁾

191) 안중범·이상돈,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p. 55.

192) Welfare Expert Advisory Group, “A brief history of family support payments in New Zealand”, 2018, p. 27.

193) 뉴질랜드 법률정보사이트, “Income Tax (Family Tax Credit) Order 2011”, <https://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11/0403/latest/DLM4136818.html>, 검색일자: 2022. 8. 30.

194) 뉴질랜드 정부, “Fact Sheet – Families Package”, <https://www.beehive.govt.nz/sites/default/files/2017-12/Families%20Package%20Factsheet.pdf>, 검색일자: 2022. 8. 30.

- 결과적으로 가족지원 세액공제는 대부분 예산안과 법률 개정을 통해 조정되었으며, 법률에 의한 CPI 자동 조정은 1회에 불과하였음¹⁹⁵⁾

〈표 IV-29〉 뉴질랜드의 가족근로지원 세액공제 물가연동 적용 현황

구분	물가연동 방식 및 조정 주기
가족지원 세액공제	CPI 5% 이상 발생 시
신생아 세액공제	CPI 5% 이상 발생 시
근로세액공제	3년마다 재량적 검토
최소소득가구 세액공제	매년 재량적 검토
감액 비율(Abatement rate)	물가연동하거나 변경할 계획 없음
감액 기준점(Abatement threshold)	의회 결정

주: 2018. 7. 1. 당시 자료이나 2022년 현재 변동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함
 자료: Welfare Expert Advisory Group, 2018, p. 20.

- 이 외에 2022년 현재 세율적용 과세표준 구간이나 여타 공제액 또는 공제한도 등에 대하여는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즉, 필요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액 등을 조정하는 재량적 방식을 사용함

2) 주요 변천 과정 및 최근 논의 동향

- 소득세 물가연동에 대한 최초 논의는 1989년에 시작되었으며, 자본이득세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출발함¹⁹⁶⁾
- 재무부는 「자본과세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본이득 측정 시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거 하기 위해 소득 계산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음

195) Welfare Expert Advisory Group, 2018, p. 20.

196) 뉴질랜드 재무부, "Inflation Adjusting the Tax Base - Policy and Design Issues",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0-11/swg-b-ir-iatb-27oct10.pdf>, 검색일자: 2022. 8. 31.

- 2005년 재무부는 소득세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세율 적용구간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¹⁹⁷⁾
 -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조정지수는 확실성과 행정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방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의 중간치인 2%를 3년 동안 누적한 값 상당액인 6.12%를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조정하기로 제안함¹⁹⁸⁾
 - 뉴질랜드의 경우 물가가 계속적으로 안정된 편이고 연방은행이 최고 목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음¹⁹⁹⁾

- 그러나 2008년 예산보고서에 의하면 세율 적용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은 시행되지 않았고 소득세 최하위세율 인하 및 세율 적용구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만이 시행되었음²⁰⁰⁾
 - 물가연동 미실시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 세율 구간 변경의 경우에도 당초 1단계는 2008년 10월 1일부터(최저소득세율을 15%에서 12.5%로 변경), 2단계는 2010년 4월 1일부터, 3단계는 2011년 4월 1일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정권 변동 후 1단계만 시행됨

- 이후 2018년 국세청과 재무부가 조직한 세무워킹그룹(Tax Working Group)은 1989년의 「자본과세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행하지는 않았음^{201), 202)}

197) 뉴질랜드 정부, "Income tax inflation indexed from 1 April 2008", <https://www.beehive.govt.nz/node/23095>, 검색일자: 2022. 8. 31.

198) 물가 상승률을 실제 물가 상승률이 아닌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3년마다 조정하는 경우 물가 상승이 크게 증가하면 유동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나, 뉴질랜드의 경우 물가가 계속적으로 안정된 편이고 연방은행의 최고 목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안중범·이상돈, 2007, p. 37.)

199) 안중범·이상돈(2007), p. 37.

200) 뉴질랜드 의회, "Budget Speech", https://www.parliament.nz/en/pb/hansard-debates/rhr/document/48HansD_20080522/volume-647-week-75-thursday-22-may-2008, 검색일자: 2022. 8. 31.

201) 뉴질랜드 정부, "Inflation indexing the tax system", <https://taxworkinggroup.govt.nz/sites/default/files/2018-09/twg-bg-3985472-appendix-e-inflation-indexing-the-tax-system-1.pdf>, 검색일자: 2022. 8. 31.

- 과세표준 적용구간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자산, 주식, 자본자산, 이자 등에 대한 세원을 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함
 - 국제적 선례가 없고 복잡성으로 인해 높은 행정준수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냄
 - 비록 현재의 물가연동 미실시는 소득세 체계의 누진성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물가연동을 실시할 경우 미래 정부재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함
- 2019년에는 제1야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이 3년마다 생계비조정지수(cost of living Index)에 따라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공약한 바 있음²⁰³⁾
- 세율 적용구간은 2010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²⁰⁴⁾, 주기적으로 세율구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은밀히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함
 - 2019년 이후 2022년 8월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집권당은 노동당(Labor Party)으로 세율 적용구간 등에 있어 물가연동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22년 현재 경제계 일각에서 물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의한 숨은 증세에 대하여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자동 물가연동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²⁰⁵⁾

202) 뉴질랜드 뉴스사이트, "Issue with NZ's tax system isn't 'where bands sit', David Parker says as National pushes for inflation adjustment",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22/06/issue-with-nz-s-tax-system-isn-t-where-bands-sit-david-parker-says-as-national-pushes-for-inflation-adjustment.html>, 검색일자: 2022. 8. 31.

203) 뉴질랜드 뉴스사이트, "Simon Bridges puts bracket-creep-busting tax indexation bill in ballot",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tics/112210050/simon-bridges-puts-bracketcreepbusting-tax-indexation-bill-in-ballot>, 검색일자: 2022. 8. 31.

204) 2021년 세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최고세율 39% 구간(과세표준 180,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이 신설됨

205) 뉴질랜드 뉴스사이트, "How inflation gives you a hidden tax hike - and Govt pockets the proceeds", <https://www.newsroom.co.nz/how-inflation-is-giving-you-a-hidden-tax-hike-and-the-government-pockets-the-proceeds>, 검색일자: 2022. 8. 31.

- 물가 상승률이 7% 수준을 유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납세자들을 점점 더 고세율 적용 구간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은 불합리함
- 노동당은 증세 입법 없이도 실질적 세수 증대를 누리고 있으며, 국민당은 실질적 성과 없이 인플레이션 조정에 의한 감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는 등 각자 정치적 이득만 취하고 있음
 - 2022년 8월 현재 국민당은 계속하여 소득세율 적용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연 17억뉴질랜드달러의 세수손실이 예상됨²⁰⁶⁾

다. 일본²⁰⁷⁾

- 일본은 물가연동제를 채택하지 않고 소득공제 항목인 ‘과세 최저한’ 조정을 통해 재량적 방식으로 물가 변동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음
 - ‘과세 최저한’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생활비 성격을 지니며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자공제), 급여소득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등이 있음²⁰⁸⁾
 - 이러한 소득공제는 최저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 하지 않는다는 소득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²⁰⁹⁾
- 1988년 이전 소득세제 관련 구체적 물가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각 경제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재량적으로 대처해 나아간 것으로 판단됨

206) 뉴질랜드 뉴스사이트, “Labour and National go tit for tat over tax”,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72216/labour-and-national-go-tit-for-tat-over-tax>, 검색일자: 2022. 8. 31.

207) 藤岡祐治(2018), pp. 12~35.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함

208) 2021년도 기준 부양자녀가 2명(고등학생, 대학생)인 급여소득자의 경우 과세최저한은 354.5만엔임 (급여소득공제 124.4만엔, 사회보험료공제 53.2만엔, 기초공제 38만엔, 배우자공제 38만엔, 부양자공제 38만엔, 특정부양자공제 63만엔)

일본 재무성,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세 과세 최저한”,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235.htm, 검색일자: 2022. 10. 17.

209) 일본 국세청, “소득공제의 현대적 의미 -인적공제 방식을 중심으로-”,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kenkyu/ronsou/48/tanaka/hajimeni.htm>, 검색일자: 2022. 10. 17.

- (1947년) 소득세 등 세제 개정 시 과세기준을 직전년도 소득에서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하고 물가 상승에 맞춰 급여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함
 - (1950년) 물가 상승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샤우프 권고²¹⁰⁾에 따라 기초공제를 인상하고 이후 기초공제뿐만 아니라 부양공제, 급여소득공제 등을 거의 매년 인상하기 시작함
 - 샤우프 권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세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관점에서 물가 조정을 고려한 것이긴 하나, 자동적인 물가연동제에 기반한 것은 아님
 - (1961년) 세제조사회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소득 증가 이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물가 조정 감세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음
 - (1975년) 세제조사회는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당분간 소득세 감세를 보류하고 물가 조정 대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냄
 - (1983년) 세제조사회는 전반적 소득 증가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 최저한’의 인상을 권고함
-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하여 1988년 세제조사회는 인적공제나 세율 구간의 자동 연동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그 도입에 있어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 이후 진행된 더 이상의 심층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① 세제 전체가 아닌 세율 구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② 세수가 감소함
 - ③ 조세제도의 자동 경기 조절 기능을 해칠 수 있음

210) 샤우프 권고(シャウプ勧告)는 일본 조세법의 기초가 되는 세제개혁에 관한 보고서로 연합국 군 최고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1949년 5월 10일 일본에 온 칼 샤우프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5일 발표됨(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information/qanda015.html, 검색일자: 2022. 10. 17.)

라. 호주

- 호주의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맬컴 프레이저(Malcolm Fraser) 정부(1975~1983년) 당시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브래킷 크래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적용 전체 세율 구간을 대상으로 1976년 도입되었으나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하여 폐지됨²¹¹⁾
- 도입 당시 소득세율은 7단계 20~65%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전체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율은 13%였음
- 1979년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중단되어 부분적으로 물가에 연동되다가 1983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폐지되었음
 - 인플레이션은 1983년 10.1%에서 1985년 6.7%로 감소하였으며, 세계개혁에 따라 몇 차례 소득세율 인하가 이루어져 1987-1988년도에는 최고세율이 49%까지 인하됨
- <표 IV-30>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정부는 브래킷 크리프를 해결하는 등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등 3단계 감세정책을 시행 중임
 - 과세연도 2024-25년 이후로 37%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19%, 32.5%, 45%의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변경할 예정이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인상할 예정임
 - 참고로, 2022-23년 과세연도 기준 개인소득세율은 19~4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임
- 의회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은 2021년 브래킷 크리프와 재정적 영향(Bracket creep and its fiscal impact)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²¹²⁾

211) Paul Tilley, *1985 reform of the Australian tax system*, 2021, p.3.

212) 호주 의회, "Bracket creep and its fiscal impact",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Budget_Office/Publications/Budget_explainers/Bracket_creep, 검색일자: 2022. 10. 14.

- 브리프 크래프 방지를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Grudnoff(2018)은 그간 세율 인하 등의 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브래킷 크리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²¹³⁾

〈표 IV-30〉 호주의 소득세율 변천 과정

(단위: 호주달러, %)

세율	2018. 7. 1.~	2022.7.1	2024.7.1
0	0~18,200	0~18,200	0~18,200
19.0	18,201~37,000	18,201~41,000	18,201~41,000
32.5	37,001~90,000	41,001~120,000	41,001~200,000
37.0	90,001~180,000	120,001~180,000	-
45.0	180,001~	180,001~	200,001~

자료: 호주 국세청, "Individual income tax rates".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Residents>, 검색일자: 2022. 10. 17.

213) Matt Grudnoff(2018), p. 1.

V. 국제 비교 및 결론

1. 국제 비교

가.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동향

- <표 V-1>에서 알 수 있듯, 2022년 7월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약 60%인 최소 22개국²¹⁴⁾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소득세 물가연동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미국 등 22개국임
 - 단일소득세율 체계로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와 헝가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운용되며, 평균 과세표준 구간 수는 5개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 기준 OECD 평균 3.4%를 초과한 회원국 중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4개국임
 - 또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물가연동하지 않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멕시코임
 - 과세표준 세율 구간 및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모두 연동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17개국임

214)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2022년 7월 기준 2023년 시행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을 논의 중임

- 뉴질랜드와 멕시코는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물가와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음
 - 슬로베니아, 스웨덴, 튀르키예는 과세표준 세율 구간은 물가에 연동하나 각종 공제제도 등은 물가연동을 배제하고 있음
- 소득세 물가연동 공제제도 등의 유형은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가족 관련 세액공제 등으로 다양함

〈표 V-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실시 현황

(단위: %, 개)

	소득세 과세체계 ¹⁾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¹⁾	소득세 물가연동제 ²⁾			
	명목세율		과세표준 구간 수		실시 여부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		
	최고	최저				세율 구간	공제제도 등	예시
호주	45	0	5	2.9	×	-	-	-
오스트리아 ³⁾	55	0	7	2.8	×	-	-	-
벨기에	50	25	4	2.4	○	○	○	자녀세액공제, 비과세 소득 한도
캐나다	33	15	5	3.4	○	○	○	인적공제 등
칠레	40	0	8	4.5	○	○	○	교육비공제 등
콜롬비아	39	0	7	3.5	○	○	○	근로소득공제 등
코스타리카	25	0	5	1.7	○	○	○	가족세액공제 등
체코	23	15	2	3.8	○	○	○	환급형 자녀세액공제 등
덴마크	27	12.09	2	1.9	○	○	○	인적공제 등
에스토니아	20	20	1	4.7	×	-	-	-
핀란드	31	0	5	2.2	○	○	○	근로소득공제 등
프랑스	45	0	5	1.6	○	○	○	근로소득공제, 저소득자 세액감면 등
독일	45	0	3	3.1	×	-	-	-
그리스	44	9	5	1.2	×	-	-	-
헝가리	15	15	1	5.1	×	-	-	-
아이슬란드	31	17	3	4.4	○	○	○	인적공제 등
아일랜드	40	20	2	2.4	×	-	-	-
이스라엘	50	10	7	1.5	○	○	○	인적공제 등

〈표 V-1〉의 계속

(단위: %, 개)

	소득세 과세체계 ¹⁾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¹⁾	소득세 물가연동제 ²⁾			
	명목세율		과세표준 구간 수		실시 여부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		
	최고	최저				세율 구간	공제제도 등	예시
이탈리아	43	23	5	1.9	×	-	-	-
일본	45	5	7	-0.3	×	-	-	-
대한민국	45	6	8	2.5	×	-	-	-
라트비아	31	20	3	3.3	×	-	-	-
리투아니아	32	20	2	4.7	×	-	-	-
룩셈부르크	38	0	19	2.5	×	-	-	-
멕시코	35	1.92	11	5.7	○	×	○	항목별 공제 합계액 등
네덜란드	49	9.45	3	2.7	○	○	○	일반 세액공제 등
뉴질랜드	39	10.5	5	3.9	○	×	○	가족지원세액공제
노르웨이	23.35	7.15	5	3.5	○	○	○	인적공제 등
폴란드	32	17	2	5.1	×	-	-	-
포르투갈	48	14.5	7	1.3	×	-	-	-
슬로바키아	25	19	2	3.1	○	○	○	인적공제 등
슬로베니아	50	16	5	1.9	○	○	×	-
스페인	24.5	9.5	6	3.1	×	-	-	-
스웨덴	20	0	2	2.2	○	○	×	-
스위스	13.2	0	11	0.6	○	○	○	인적공제(지방세 (cantonal) 단계) 등
튀르키예	40	15	5	19.6	○	○	×	-
영국	45	20	3	2.5	○	○	○	인적공제 등
미국	37	10	7	4.7	○	○	○	표준공제, 최저한세 등
OECD 평균	36.1	10.1	5.1	3.4	22개국 ⁴⁾	20개국 ⁴⁾	19개국 ⁴⁾	

주: 1. '-'는 해당사항 없음

1) 2021년 기준이며, 부가세(surtax)를 포함하지 않음

2) 2022년 7월 기준

3)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2022년 7월 기준 2023년 시행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을 논의 중임

4)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거나 세율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는 회원국 수입

자료: 본문 및 OECD, "Tax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r=528170#>, 검색일자: 2022. 9. 2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조사대상국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 소득세 과세체계

□ <표 V-2>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상 주요 특징을 정리함

- 조사대상국은 모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실제 발생한 적격비용을 공제하거나 개산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은 인적공제를 2018~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단하고 있음²¹⁵⁾
 - 프랑스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하는 가족계수제도가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가 없음
- 조사대상국 모두 경로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인적공제를 두고 있음
- 조사대상국 모두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두고 있으나 적용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임
 -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항목별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영국은 기부금, 프랑스는 교육비와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²¹⁶⁾
- 미국은 특정 지출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표준공제 제도를 운용하지 않음
- 조사대상국은 모두 환급형 및 비환급형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 조사대상국의 소득세율 체계는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음

215)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시행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은 개인 소득세율 일부 구간 인하(최저세율(10%) 구간 제외, 최고세율 39.6% → 37%),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배제(2017년 기준 1인당 4,050달러), 표준공제 확대(독신자의 경우 2017년 기준 6,350달러 → 12,000달러), 자녀장려금 관련 세액공제액(1,000달러 → 2,000달러) 및 환급 가능 세액공제액 최대 1,400달러 확대,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500달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16) 조사대상국은 모두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7단계, 프랑스와 캐나다는 5단계, 영국은 3단계 세율체계를 두고 있음
○ 조사대상국의 과세기간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역년이며, 영국은 직전연도 4월 6일부터 당해연도 4월 5일까지임

〈표 V-2〉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요 특징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	○	○	○ ²⁾
인적공제 ¹⁾	기본공제	○	○	×	○ ²⁾
	추가공제	○ ³⁾	○	○ ³⁾	○ ³⁾
항목별 공제	의료비	○	×	×	○
	교육비	○	×	○	○
	기부금	○	○	○	○
표준공제		○	×	×	×
세액공제	환급형	○	○	○	○
	비환급형	○	○	○	○
과세표준 구간 수		7단계	3단계	5단계	5단계
소득세율	최저	10	20	0	15
	최고	37	45	45	33
과세기간		역년	직전연도 4월 6일부터 당해연도 4월 5일까지	역년	역년

- 주: 1)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와 장애·경로·자녀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2) 캐나다의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 인적공제 방식은 세액공제임
3) 미국, 프랑스, 캐나다의 추가 인적공제 방식은 세액공제임
4) 미국은 신고유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달리 정하고 있음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물가연동 대응 소득세제

가) 개요

- 조사대상국 모두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브래킷 크리프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조사대상국 중 프랑스에서 1969년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이후로 캐나다(1973년), 영국(1977년), 미국(1981년)²¹⁷⁾의 순으로 도입되었음
 - 미국은 3년 간의 세율 인하 후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함
- 조사대상국별 도입 당시 물가 상승률은 영국 15.8%(1977년), 미국 10.3%(1981년), 캐나다 7.5%(1973년), 프랑스 6.0%(1969년) 순으로 나타남
- 미국, 캐나다는 소득세 물가연동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재정법」에 따라 소득세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영국은 부분적으로 연동하고 있음
 - 영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물가연동 항목 및 공제 수준 등을 결정하고 있음²¹⁸⁾

〈표 V-3〉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개요

국가	도입시기	도입 당시 물가 상승률	근거 법령	관련 조문	유형
미국	1981년 ¹⁾	10.3%	내국세법(IRC)	§1(f)(2), (6)	완전 물가연동
영국	1977년	15.8%	재정법(Finance Act 1977)	§22	부분 물가연동
프랑스	1969년	6.0%	재정법(loi de finances pour 2022)	§2	완전 물가연동
캐나다	1973년	7.5%	소득세법(ITA 1985)	§117.1	완전 물가연동

주: 1) 미국은 3년간의 세율 인하 후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함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17) 참고로,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43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2019년 기준 24개 주(states)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218) 영국은 2025/26년도까지 과세표준 세율 구간 및 기본 인적공제에 대하여 물가연동을 적용배제함

나) 적용방식

- (물가연동지수) 조사대상국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물가연동지수를 물가연동 항목에 적용하고 있으나 측정기간 등 세부적인 측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미국은 해당연도의 8월 31일 이전 12개월 연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을 측정함²¹⁹⁾
 - 프랑스는 직전연도 12개월 동안의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을 측정함
 - 영국과 캐나다는 해당연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을 측정함

- (조정 주기) 조사대상국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근거 법령에 따른 물가연동 항목에 대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정되고 있음
 - 물가연동 항목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후술하기로 함

〈표 V-4〉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 방식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조정 주기		원칙적으로 매년	원칙적으로 매년	원칙적으로 매년	원칙적으로 매년
물가연동지수	연동지수	연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측정 방법	해당연도의 8월 31일 이전 12개월 평균값	해당연도 9월 30일 이전 12개월 평균값	직전연도 12개월 평균값	해당연도 9월 30일 이전 12개월 평균값
	측정 기간	직전연도 9. 1.~ 해당연도 8. 31.	직전연도 10. 1.~ 해당연도 9. 30.	1. 1.~12. 31.	직전연도 10. 1.~ 해당연도 9. 30.
물가연동률 ¹⁾ (2021년 기준)		1.0% ²⁾	0.5% ³⁾	1.4%	1.0%

주: 1) 물가연동률이란 각 조사대상국에서 채택한 물가연동지수에 의해 산출한 조정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각종 공제액 등의 주요 물가연동 항목에 물가연동률을 곱하여 매년 조정함

2) 미국 2021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율임

3) 영국의 2021/22 과세연도 고세율 적용 시작점에 대한 물가연동율임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19) 참고로, 미국 대부분의 주는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연방정부를 따라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연쇄 소비자물가지수(C-CPI-U)를 사용하거나 지역 중심의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를 채택하고 있음

다) 적용 범위

- <표 V-5>와 <표 V-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국은 소득세 과세체계 내의 정책적 요소에 대해 일반적으로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해주고 있으나 물가연동항목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운용 방식은 상이함
 - 미국은 대표적으로 과세표준 세율 구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 EITC 및 CTC, 최저한세 등을 물가연동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은 추가 인적공제 성격의 경로 및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물가연동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영국은 대표적으로 과세표준 세율 구간 일부, 기본 및 추가 인적공제, EITC 및 CTC 등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물가연동항목은 대표적으로 과세표준 세율 구간, 추가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가족계수 관련 감면 한도, 저소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등이 있음
 - 프랑스는 인적공제와 EITC 및 CTC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과세표준 세율 구간, 기본 및 추가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 중 의료비·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및 CTC 등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세율 구간 및 주요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물가연동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봄

(1) 과세표준 세율 구간

- 조사대상국은 모두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운용 중이며, 영국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모든 세율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조정해주고 있음
 - 영국은 세율 구간 중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150,000파운드)은 물가에 연동하고 있지 않으며, 2021년 「재정법」에서는 2025/26년까지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을 적용 배제하기로 함

-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 배제 기간은 2022년 4월 6일~2026년 4월 5일까지임

〈표 V-5〉 조사대상국의 세율 구간 물가연동 방식

		미국	영국 ²⁾	프랑스	캐나다
과세표준 구간 수		7단계	3단계	5단계	5단계
과세표준 세율 구간	최저	0~20,550 ¹⁾	0~37,700	0~10,225	0~50,197
	최고	647,851~ ¹⁾	150,001~	160,331~	221,709~
소득세율		10/12/22/24/32/ 35/37	20/40/45	0/11/30/41/45	15/20.5/26/29/33
물가연동 적용 구간		모든 과표 구간	기본세율 및 고세율 적용구간	모든 과표 구간	모든 과표 구간
조정 주기		원칙적으로 매년	원칙적으로 매년	원칙적으로 매년	원칙적으로 매년

주: 1) 미국은 신고유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신고 유형에 대하여 조사함

2) 영국은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을 2025/26(2022년 4월 6일~2026년 4월 5일까지)년까지 적용 배제함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주요 공제제도

- (근로소득공제) 조사대상국 모두 근로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적격비용 또는 개산공제의 방식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적용방식 및 물가연동 여부는 차이를 보임
 - 미국은 적격 공연예술가 등 법에서 정한 유형의 근로자와 교재 등의 교육자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자 비용 공제한도를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²²⁰⁾
 - 프랑스는 실제 발생한 경비 또는 개산공제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개산공제 시 두고 있는 한도에 대하여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220) 미국은 근로 관련 필요경비(job-related expenses)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중 '기타 공제 대상 비용'과 합산하여 그 총액이 조정총소득금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 공제할 수 있고, 항목별 소득공제 통합한도의 적용을 받았으나,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영국과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적격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제한적으로 일부 비용에 대한 개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한도에 대하여는 물가에 연동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캐나다는 적격 경비에 대한 공제 이외에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산공제를 허용하는데 그 한도 등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함

- (기본 인적공제) 조사대상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는 납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제도를 두면서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영국은 한시적으로 물가연동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미국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인적공제를 두고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규모를 제한하나 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이전에는 공제금액 및 공제액이 감소하는 과세소득 기준금액에 대하여 물가에 매년 연동하였음
 - 영국은 소득공제방식으로 기본인적공제를 적용 중이며, 매년 공제금액 및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였으나 2025/26년도까지는 물가연동을 배제하기로 함
 - 프랑스는 납세자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가 없음
 - 프랑스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하는 가족계수제도가 있으므로 기본 인적공제를 두지 않음
 - 캐나다는 결혼 유무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기본인적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용 중이며, 매년 공제금액 및 기준소득 등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추가 인적공제) 조사대상국 모두 추가 인적공제를 두고 있으나, 적용대상의 범위 및 적용방식은 상이하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미국은 경로·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용 중이나 물가에 연동하고 있지는 않음
 - 영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제금액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프랑스와 캐나다는 경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며, 공제금액 한도 및 기준소득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의료비 공제) 미국과 캐나다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물가연동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임
 - 미국은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물가에 연동하지는 않음
 - 캐나다는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최소지출기준 계산 시 필요한 순소득 기준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교육비 공제) 조사대상국 중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자녀의 교육과정에 발생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항목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물가 연동 여부는 차이를 보임
 - 미국의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 평생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매년 물가에 연동되지는 않음
 - 평생교육비 세액공제는 2022년 물가연동항목에서 제외됨
 -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단계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지 않음
 - 캐나다는 교육비에 대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준소득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기부금 공제) 조사대상국은 모두 기부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하여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다만, 프랑스는 7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빈민구호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한도를 2021년과 2022년 동안 최대 1천유로로 동일하게 설정함
 - 미국과 영국의 기부금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방식이며, 캐나다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용 중이나 모두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지는 않음

- (표준공제) 미국의 대부분의 납세자는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표준공제는 기본 표준공제와 추가 표준공제로 구성되어 그 공제금액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대체하는 표준공제를 두고 있지 않음

- (공제 종합한도) 조사대상국 중 미국과 프랑스는 세부담의 과도한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항목별 공제를 제한하거나 공제 종합한도를 두고 있으며, 물가연동 여부는 달리 적용함
 - 미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인적공제 및 항목별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²²¹⁾을 두어 물가연동 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25년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프랑스는 조세 지원으로 인한 세부담의 과도한 경감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공제 항목에 대하여 통합한도를 두고 있으나 그 한도를 매년 물가에 연동하지는 않음 - 다만, 가족계수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을 제한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그 한도에 대하여는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최저한세) 미국과 캐나다는 소득세 최저한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캐나다와는 달리 미국은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미국은 신고유형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6% 또는 28%의 세율을 적용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위한 면제금액,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매년 연동하고 있음
 - 캐나다는 최저한세 산정 시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는 기본면제금액(basic exemption)에 대해 물가연동하지 않음

221) 항목별 공제는 2017년 부부합산 기준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313,8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8~2025년까지 한도 적용을 배제함

(3) 저소득근로자 및 자녀양육 조세지원제도

- (저소득근로자 및 자녀양육지원)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세액공제 방식 (환급형 또는 비환급형)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운용 중이나 물가연동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임
- 미국은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공제금액과 기준 소득금액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는 반면,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물가연동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환급가능한 최대 공제금액이 2019~2021 과세연도 동안 조정되지 않았음²²²⁾²²³⁾
 - 영국과 캐나다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두 공제금액, 기준 소득금액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프랑스는 저소득자 및 자녀양육 지원목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운영하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를 재정지원 형태로 통합하였음
 - 다만, 저소득자를 위한 세액감면이나 가족계수제도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저소득자를 위한 세액감면 규모 및 가족계수 관련 한도는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222) 2019~2021 과세연도: 1,400달러, 2022 과세연도: 1,500달러

223) 한편, 미국은 환급가능 소득기준액 및 가구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급여 수준이 감액되는데, 이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고 있지는 않음

〈표 V-6〉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관련 주요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적용 방식				조정 주기	적용 방식				조정 주기	적용 방식				조정 주기	적용 방식				조정 주기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실제 경비 ¹⁾	-	-	○ ¹⁾	매년	실제 경비 ³⁾	-	-	× ³⁾	-	실제 경비 또는 개산 공제	×	-	○	매년	실제 경비 ⁵⁾	-	-	× ⁵⁾	-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 공제	○	○	×	매년 ²⁾	소득 공제	○	○	○	매년 ⁴⁾	-				세액 공제	○	○	○	매년	
	추가공제 (경로·장애인 등)	세액 공제	×	×	×	×	소득 공제 (시각장애 인공제)	○	-	-	매년	소득 공제	○	○	○	매년	세액 공제	○	○	○	매년
표준공제	기본공제	소득 공제	○	-	-	매년	-				-				-						
	추가공제 (경로·장애인 등)	소득 공제	○	-	-	매년	-				-				-						
특별공제 (항목별공제)	의료비공제	소득 공제	×	×	×	×	-				-				세액 공제	×	○	○ (적용 기준 금액)	매년		
	기부금공제	소득 공제	×	×	×	×	소득 공제	×	×	×	×	세액 공제	×	×	○	매년	세액 공제	×	×	×	×
	교육비공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	×	×	×	-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	×	×	×	환급형 세액 공제	×	○	×	매년	

〈표 V-6〉의 계속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적용 방식				조정 주기	적용 방식				조정 주기	적용 방식				조정 주기	적용 방식				조정 주기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공제 방식	공제 금액	기준 소득	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					-					-					세액 공제 ⁶⁾	×	○	○	매년
공제 종합한도	소득 공제	-	○	-	매년 ²⁾	-					세액 공제	-	-	×	×	-				
최저한세	별도 세율 (26/28%)	○	○	-	매년	-					-				기본 면제	×	-	-	×	
저소득근로자 · 자녀양육 지원	EITC	환급형 세액 공제	○	○	○	매년	환급형 세액 공제	○	○	○	매년	재정지원으로 통합 ⁷⁾				환급형 세액 공제	○	○	○	매년
	CTC	혼합형 세액 공제	○	×	×	재량 적	환급형 세액 공제	○	○	○	매년	재정지원으로 통합 ⁷⁾				환급형 세액 공제	○	○	○	매년

- 주: 1. ○ = 불가 연동, × = 불가 미연동, - = 해당 제도 및 관련 내용이 없음
 2. 조사대상국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 등의 주요 공제제도를 대상으로 공제금액, 기준소득, 한도 등의 정액적 요소를 주로 조사함
 3. 기준소득이란 공제금액 및 한도 등의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함
 1) 미국은 법에서 정한 유형의 근로자와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교육자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자 비용은 2022년 기준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2) 미국은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 한도를 2025년까지 운용하지 않음
 3) 영국은 근로소득공제 시 재택근무비용은 한도 내에서 개산공제를 허용함
 4) 영국은 기본인적공제에 대한 불가연동을 2025/26년까지 적용 배제함
 5) 캐나다는 근로소득공제 시 재택근무비용, 도구구입비용공제는 개산공제를 허용함
 6) 캐나다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필요경비에 대한 개산공제제도임
 7) 프랑스는 저소득자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및 가족계수제도를 운용 중이며,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주요 변천 과정

- 조사대상국은 모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입 이후로 적용 방식이나 적용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개편하여 왔음
 - 미국은 1981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생계비조정지수 산정방식을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TCJA)」에 따라 도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연쇄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함
 -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 항목은 2010년 약 30개에서 2022년 기준 4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최저한세가 물가연동 항목으로 포함됨
 - 영국은 1977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 물가연동지수를 소매가격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득세 일부 항목에 대하여 물가연동을 제한하기로 함
 - 2025/26년도까지 인적공제, 과세표준 세율 구간 등에 대한 물가연동을 적용하지 않음
 - 프랑스는 1969년부터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도입 초기에는 세율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다가 1981년부터 이를 폐지하였으며, 2012~2013년에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물가연동을 중단하였다가 2014년부터 다시 실시함
 - 캐나다는 1973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한 이후로 1983년에는 세수 증대 목적으로 물가연동 3% 초과 기준을 제정하였다가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완전한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기 시작함

〈표 V-7〉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주요 변천 과정

국가	주요 변천 과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2014년 최저한세 물가연동 항목 포함 • 2018년 생계비조정지수 산출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변경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2015년 소매가격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물가연동지수 변경 • 2021년 소득세 일부 항목에 대하여 2025/26년도까지 물가연동 제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1981년 이후 모든 세율 구간에 대하여 차등 없이 물가연동 실시 • 2012~2013년 소득세 물가연동 중단 • 2014년 소득세 물가연동제 재실시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1986년 소득세 일부 항목에 대한 물가연동 요소 제거 및 물가연동 3% 초과 기준 제정 • 2000년 완전 물가연동 시행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기타 국가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 (독일) 독일은 근거 법령으로 명문화하여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6년 이후로는 물가에 연동하여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음²²⁴⁾
-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누진세율 체계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kalte Progression을 추정하는 보고서(Progression Report)를 제출하고 있음
- 2009년 이전에는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대한 조정 없이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09년 이후로 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상향 조정하였음

224) 독일의 종합소득세율은 2022년 기준 면세점인 10,347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최소 14%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세율 체계는 2008년 이후로 0~45%의 세율을 유지되고 있음

- 2016년 이후로 기본공제 및 최고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세표준 세율 구간이 매년 조정되고 있음(〈표 IV-26〉 참조)
- 2022년 8월 재무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인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25), 226)}
 - 기본공제의 인상을 2023년 10,632유로, 2024년 10,932유로로 예정대로 시행함
 - 아동 소득공제(child tax allowance) 및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함
 - 다만 동 조치는 중산층에 대한 kalte Progression을 완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277,826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부유세 구간)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뉴질랜드) 2022년 현재 뉴질랜드는 「소득세법」에서 환급성 세액공제인 가족근로지원 세액공제(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중 가족지원 세액공제(Family tax credit)와 신생아 세액공제(best Start tax credit)를 물가에 연동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동 물가지수의 누적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이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실제 명목금액 인상폭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결정하고 있으므로 자동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08년 4월 1일부터 소득세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으며, 소득세 최하위 세율 인하 및 세율 적용 구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만이 시행되었음
 - 2022년 8월 현재 제1야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이 소득세율 적용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225) 독일 정부, “Fragen und Antworten zum Ausgleich der kalten Progressio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FAQ/kalte-progression.html>, 검색일자: 2022. 8. 1.

226) 2022년 상반기에는 기본공제를 비롯하여 근로소득공제,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인상한 바 있음

- (일본) 일본은 1980년대 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도입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인적공제 등의 과세 최저한²²⁷⁾ 제도를 통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있음
 - 1988년 세제조사회는 인적공제 또는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을 검토한 바 있으나 세수 측면이나 조세제도의 자동 경기조절 기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음
 - 1988년 이전에는 물가 상승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조정하였음

- (호주) 호주 정부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브래킷 크래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적용 전체 세율 구간에 대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다가 1976년 정치적인 상황,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1980년 초에 중단하였으며, 이후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최근 브래킷 크리프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감세정책을 시행 중임(〈표 IV-30〉 참조)
 - 또한 의회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은 2021년 브래킷 크리프와 재정적 영향(Bracket creep and its fiscal impact)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2. 요약 및 결론

-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경직된 세율 적용구간 및 공제제도하에서 명목 소득세 부담도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적 증세를 유발함

227) 과세최저한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활비 성격으로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자공제), 급여소득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등이 있음

-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제를 조정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함
-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재량적 방식과 물가연동 방식(indexation)이 있을 수 있음
 - 재량적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 없이 정책당국의 필요에 따라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비주기적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식을 말함
 - 세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적시성, 중립성, 신뢰성, 책임성 차원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음
 -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함
 - 실질 세부담의 변화를 방지하고 중립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세수 규모 축소, 복잡성 증대, 융통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재량적 방식에 의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왔는데, 상당기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현재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증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2022년 9월 기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경우 2008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래로 10여 년 넘게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확대만이 진행되었을 뿐 큰 변동이 없었음
 - 실질 세부담률의 변동에 의한 재정의 비효율성, 세원별 세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의 형평 구조 악화, 납세자의 불만 누적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물가 상승 국면에 대응하는 각 국가들의 소득세제를 살펴보면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세부담의 변동을 중화시키기 위해 상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7월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물가연동 방식의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최소 22개국으로, OECD 회원국의 60% 수준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액 등의 적용 범위, 조정 주기, 연동지수 등은 통일적이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재량적 방식도 혼용하는 등 각각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미국은 1981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물가연동지수를 도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연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는 변화를 보인 바 있음
 -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 항목의 범위는 2010년 약 30개에서 2022년 기준 40여 개로 증가함
 - 영국은 1977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 물가연동지수를 소매가격 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한 바 있고, 2021년에는 소득세 일부 항목에 대하여 2025/26년까지 물가연동을 제한하기로 하는 조치를 시행함
 - 프랑스는 1969년부터 물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최초 세율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다가 1981년부터 이를 폐지하였고, 2012~2013년에는 재정 위기로 인해 물가연동을 잠정 중단하였다가 2014년부터 다시 실시하는 등의 변화를 겪음
 - 캐나다는 1973년에 물가연동제를 실시한 이후로 1983년에는 세수 증대 목적으로 물가연동 3% 초과 기준을 설정하였다가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한 물가연동제를 실시함
 - 1970년대 중후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유발되어 물가연동 폐지를 고려한 바 있으나, 폐지할 경우 실업을 증가시키고 복지수요를 증대시켜 오히려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한 전력이 있음
 - 독일은 근거 법령에 의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6년 이후로는 물가에 연동하여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누진세율 체계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kalte Progression을 추정하는 보고서(Progression Report)를 제출하고 있음
- 결국 물가 상승에 의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방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 및 경제 현실에 보다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정확한 현황 인지와 문제 진단 및 이에 대한 효과적 처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수단으로서의 물가연동 방식 또는 재량적 방식의 선택은 차후 순서임
 - 재량적 방식과 물가연동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 물가 변동에 대응한 조세정책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규모나 면세자 비율 조정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우리나라도 물가연동 방식의 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안과 고려요소에 대하여 심도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조세의 중립성) 실질 세부담의 중립성 달성은 물가연동 방식을 시행하는 가장 큰 유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 등의 물가연동 적용 범위, 연동률 결정 등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세수 효과 및 재정정책) 물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세수 규모의 축소는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함
 - (재량적 방식과의 혼용 가능성) 물가연동 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재량적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빈도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병행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비용 및 복잡성) 물가연동 방식 채택에 대한 입법 논의 과정상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법 후 매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고시 등으로 행정비용 및 복잡성이 증대될 수 있음
 - (경제 환경) 물가연동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서 그 도입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므로 우리나라의 실제 물가 상승의 정도, 즉 물가 상승의 폭과 지속성 예상 등 경제적 상황 분석이 요청됨

참고문헌

〈국문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2022.
-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2021. 8.
- 국세청, 『독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2.
- _____,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2021.
- 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도자료, 2021. 12. 23.
- 기획재정부, 『2020 조세개요』, 2021.
- 김재진,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 박훈, 『미국세법』, 2020.
- 성명재·박상원,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2.
- 안종범·이상돈,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안종석, 『소득세 수입 변동 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2019. 12.
- _____.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2016. 12.
- 안종석·박수진·이서현,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2017.
- 안종석·오종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 전병욱,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1. 11.
- 전승훈,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2007. 1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제도 제1권』, 2019.

〈해외문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Brackets, Standard Deduction, and Personal Exemption: 1988 to 2022*, 2021.
- Dorn, Florian et al., “How Bracket Creep Creates Hidden Tax Increases: Evidence from Germany”, *ifo DICE Report*, ISSN 2511-7823, ifo Institut -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München, München, Vol. 15, Iss. 4, 2017, pp. 34~39.
- Matt Grudnoff, *Bracket Creep: The Imaginary Monster*, The Australia Institute, 2018.
- OECD,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2019.
- Paul Tilley, *1985 reform of the Australian tax system*, 2021.
- Welfare Expert Advisory Group, *A brief history of family support payments in New Zealand*, 2018.
- 藤岡祐治, “為替差損益に対する課税: 貨幣価値の変動と租税法(2)”, *国家学会雑誌* 131卷1号=2号107-162ページ(0023-2793), 2018

〈온라인자료〉

-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
- 뉴질랜드 세무워킹그룹, <https://taxworkinggroup.govt.nz/>
- 뉴질랜드 의회, <https://www.parliament.nz/>
- 뉴질랜드 정부, <https://www.beehive.govt.nz/>
- 뉴질랜드 재무부, <https://www.treasury.govt.nz/>
-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 미국 비영리재단, <https://taxfoundation.org/>

-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영국 세무정보사이트, <https://ifs.org.uk/>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
프랑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세무정보사이트, <https://www.french-property.com/>
프랑스 의안정보시스템,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프랑스 의회, <https://www.senat.fr/>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https://www.service-public.fr/>
프랑스 국세청, <https://bofip.impots.gouv.fr/>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conomie.gouv.fr/>
프랑스 통계청, <https://www.insee.fr/>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국 국세청, <https://www.nts.go.kr/>
한국 통계청, <https://kosis.kr/>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의회, <https://www.aph.gov.au/>
-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
CBO, <https://www.cbo.gov/>
IBFD, <https://research.ibfd.org/>
OECD, <https://data.oecd.org/>
PWC, <https://taxsummaries.pwc.com/>
Reuters, <https://www.reuters.com/>

세법연구 22-03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발 행 2022년 10월 31일
저 자 권성준 · 허윤영 · 이형민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미래기획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BN 979-11-6655-162-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